발 간 등 록 번 호
11-1170000-000579-01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시(市)소관 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연구

2016. 12.

법 제 처　　(사)자치법연구원

법제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 법제처의 정책연구과제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시(市) 소관 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 12.

연구수행기관 : 사단법인 자치법연구원
연구책임자 최 승 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연구원 윤 석 진 (강남대 법학과)
양 승 미 (동양대 경찰행정학과)
배 유 진 (사단법인 자치법연구원)
최 유 경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박 가 림 (사단법인 자치법연구원)
장 선 미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하 민 정 (사단법인 자치법연구원)
성 윤 희 (사단법인 자치법연구원)
장 나 리 (사단법인 자치법연구원)

요 약 문

지방자치단체는 최일선의 행정작용을 집행함으로써, 기업과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하여 국가차원의 규제개혁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노력이 필수적인 부분이며, 세계적 추세로서 지방화시대의 도래, 지방자치제도의 지속 발전, 주민과 지역사회의 주인의식 제고, 지방으로의 행·재정권한의 이양 확대 등에 따라, 지역사회의 법으로서 지방행정을 근거지우고 뒷받침하는 자치법규의 역할이 증대됨

규제개선 등을 위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서, 발굴된 사례에 대해 내용적인 측면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획일적 규제나 과도한 규제를 완화 내지 폐지하거나 필요적절한 규제대안을 제시함으로써 量에서 質 중심으로 규제에 대한 품질제고를 강조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규제제도에 지역적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러한 규제제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벤치마킹 및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규제개혁은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임.

14개 '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군'에 비하여, 대부분 도시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규모의 시의 경우 어업, 농업 등 기초산업이 발달한 특징을 보이는 지역도 있으며, 14개 '시'의 평균 조례 수는 300개 이며, 각 지자체별로 평균 376.4개를 발굴하였고, 지자체별로 최근 2012 ~ 2015년 사이에 정비가 잘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1960년대 - 70년대의 조례를 한번도 정비하지 않은 곳도 발견되어 지방차원의 규제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정비가 중요함을 확인함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의 처음 제정 이후에는 개정 및 상위법령과의 조응성 및 행정현실과 지방자치현실의 반영에 한계를 보여 왔으며, 그 운영과 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으며, 법무분야 전문성이 특화되지 못하는 한계로, 상위법령에의 제개정과 행정현실의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주기적이고 상시적인 전면적인 법률적합성에의 검토가 필요함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 필요한 자치법규를 적시에 적절히 정비하거나 완비할 수 있는 자치입법능력을 갖추게 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적인 자치입법시스템과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자치법규지원체제가 구축·운영되도록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치법규의 생애주기적 제도적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규제권한의 지방이양 등 자치입법이 확대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에 대응하여야 하는 등, 중앙과 지방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치법규의 법체계적인 관점에서의 적합성이 점검되어야 할 것임

지방자치는 궁극적으로 지역유지발전 및 이를 통한 주민(및 국민)의 실질적 권익보장을 위한 제도임을 유념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복리구현이 가능하도록 규범조화적 법체계 형성을 마련하는데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함

지방규제 개선 기준의 타당성・유용성을 검증보완하기 위하여 분야별 개별 조례를 지방자치단체간 비교검토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상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체 지방규제 수준을 측정・비교하고 개선시켜 가기 위하여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분야별, 유형별 등 기준을 마련하여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가야 함

개조식 요약서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특징

1. 연구의 목적

○ 국가시책(제도)의 적시 반영의 필요성

- 규제개혁에 있어서 규제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정비·해석·운용은 일반적으로 기존법규를 검토하여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규제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함.
- 정부의 규제개선노력이 신속하게 일선 지방행정의 수준까지 확산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중앙정부의 규제개선 및 제도개선 활동이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지방자치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자치법규 정비

- 지방자치단체는 최일선의 행정작용을 집행함으로써, 기업과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하여 국가차원의 규제개혁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노력이 필수적인 부분임
- 지방자치가 20여년이 지나면서 분권과 자치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시책, 법령 개선 등과 자치법규의 연동·유기적 체계성 증진, 자치법규의 체계·내용구성·법규의 질적 수준의 제고 등이 정비될 시점이라 할 것임

○ 규제개선의 국가 전체적 확산도 제고

- 규제권한의 지방이양 등 자치입법이 확대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에 대응하여야 하는 등, 중앙과 지방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치법규의 법체계적인 관점에서의 적합성이 점검되어야 할 것임
- 제도개선의 지방확산의 방사효과를 확대시켜 급변하는 지방자치의 환경에 대한 자치법규의 대응력을 제고하는 것이 긴요하며,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 제·개정을 반영하는 시차가 발생하여 규제개선의 체감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함

○ 국민 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다수 포함

- 세계적 추세로서 지방화시대의 도래, 지방자치제도의 지속 발전, 주민과 지역사회의 주인의식 제고, 지방으로의 행·재정권한의 이양 확대 등에 따라, 지역사회의 법으로서 지방행정을 근거지우고 뒷받침하는 자치법규의 역할이 증대됨
- 자치법규로서 갖추어야 하는 적법요건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주민과의 관계에서도 적실성 있는 규범력을 확보하도록 자치법규의 전주조사의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음

○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 및 체계적 자치법규지원체계의 구축 필요성

- 자치법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자치권을 신장시키고 주민의 기본권을 다양한 방법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중요한 법작용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관한 연구와 시도를 통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 필요한 자치법규를 적시에 적절히 정비하거나 완비할 수 있는 자치입법능력을 갖추게 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적인 자치입법시스템과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자치법규지원체제가 구축·운영되도록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접근하여야 할 것임

2. 연구의 특징 및 장점

○ 자치법규에 근거한 지방규제의 품질제고

- 존치 필요성이 낮은 규제는 폐지하고, 필요한 규제라도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규제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경제의 위험관리 등에 관한 제도는 보완, 강화되어야 함도 아울러 고려함
- 규제개선 등을 위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서, 발굴된 사례에 대해 내용적인 측면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획일적 규제나 과도한 규제를 완화 내지 폐지하거나 필요적절한 규제대안을 제시함으로써 量에서 質 중심으로 규제에 대한 품질제고를 강조함

○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 규제의 다양성· 세분화의 필요는 규제권한의 지방분권 논의로 연결되며, 특히 보다 거시적 안목에서 새로운 중앙과 지방간 역할분담체계의 구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
-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규제제도에 지역적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러한 규제제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벤치마킹 및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규제개혁은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임.

○ 자치법규의 규범평가와 관련한 연구 수행 경험 반영

□ 2007년 행정자치부 『자치입법 분권화 지표개발 및 법령 실태분석 연구』

- 자치입법권의 실제적 분권현황에 보다 중점을 두어 현해 개별 법령에서 조례제정권을 제약하고 있는 실태를 개별적으로 점검하여 자치입법권의 확대도모를 위한 구체적인 논증자료 확보

□ 2012년 법제처 :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을 위한 개선도 측정 등과 정부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연구』

- 개선도 측정 등과 정부지원체계에 대한 연구의 주요 목표

▷ 자치법규 선진화의 필요성,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등 제도개선 체감도 향상과의 관련성 연구

▷ 자치법규 선진화 측정 지수와 기준을 마련하고 세부적 활용방안 마련

▷ 자치법규 지원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도출

□ 2015년 법제처 :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군(郡) 소관 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연구』

▶ 국가시책(제도)의 적시 반영의 필요성에 따라,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

▶ 조례 전수조사 및 검토 결과 문제점 발굴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는 폐지하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굴 사례별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시

제 2 장 지방규제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규제의 현황

	유형①	②	③	④	⑤	소계
1) A 시	6	22	36	92	354	510
2) B 시	5	47	12	27	411	502
3) C 시	4	58	6	23	318	409
4) D 시	6	46	13	15	336	416
5) E 시	9	45	11	32	292	389

6) F 시	12	36	16	10	269	343
7) G 시	9	41	13	24	347	434
8) H 시	12	33	15	35	233	328
9) I 시	10	32	19	24	208	293
10) J 시	8	36	16	31	196	287
11) K 시	9	38	14	36	195	292
12) L 시	9	38	14	31	203	295
13) M 시	10	35	18	44	253	360
14) N 시	30	71	21	68	222	412

- A시의 경우 각 유형별 분포를 보면 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6건), ② 상위법령에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22건),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36건), ④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92건), ⑤ 기타(354건)으로 총 510건이 발굴되었음

- B시의 경우 각 유형별 분포를 보면 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5건), ② 상위법령에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47건),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12건), ④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27건), ⑤ 기타(441건)으로 총 502건이 발굴되었음
- C시의 경우 각 유형별 분포를 보면 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4건), ② 상위법령에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58건),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6건), ④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23건), ⑤ 기타(318건)으로 총 409건이 발굴되었음

- D시의 경우 각 유형별 분포를 보면 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6건), ② 상위법령에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46건),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13건), ④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15건), ⑤ 기타(336건)으로 총 416건이 발굴되었음

- E시의 경우 각 유형별 분포를 보면 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9건), ② 상위법령에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45건),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

리,의무) 사항 신설(11건), ④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32건), ⑤ 기타(292건)으로 총 389건이 발굴되었음

- F시의 경우 각 유형별 분포를 보면 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12건), ② 상위법령에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36건),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16건), ④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10건), ⑤ 기타(269건)으로 총 343건이 발굴되었음

- G시의 경우 각 유형별 분포를 보면 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9건), ② 상위법령에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41건),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13건), ④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24건), ⑤ 기타(347건)으로 총 434건이 발굴되었음

- H시의 경우 각 유형별 분포를 보면 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12건), ② 상위법령에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33건),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15건), ④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35건), ⑤ 기타(233건)으로 총 328건이 발굴되었음

- I시의 경우 각 유형별 분포를 보면 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10건), ② 상위법령에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32건),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19건), ④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24건), ⑤ 기타(208건)으로 총 293건이 발굴되었음

- J시의 경우 각 유형별 분포를 보면 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8건), ② 상위법령에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36건),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16건), ④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31건), ⑤ 기타(196건)으로 총 287건이 발굴되었음

- K시의 경우 각 유형별 분포를 보면 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9건), ② 상위법령에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38건),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

리,의무) 사항 신설(14건), ④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36건), ⑤ 기타(195건)으로 총 292건이 발굴되었음

- L시의 경우 각 유형별 분포를 보면 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9건), ② 상위법령에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38건),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14건), ④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31건), ⑤ 기타(203건)으로 총 295건이 발굴되었음

- M시의 경우 각 유형별 분포를 보면 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10건), ② 상위법령에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35건),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18건), ④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44건), ⑤ 기타(253건)으로 총 360건이 발굴되었음

- N시의 경우 각 유형별 분포를 보면 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30건), ② 상위법령에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71건),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21건), ④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68건), ⑤ 기타(222건)으로 총 412건이 발굴되었음

2. 지방규제의 문제점

□ 문제유형별 원인 및 개선책 개괄

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유형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볼 수 있음.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등 포함) 유형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에 따른 결과로 상위법령을 위반한 사례, 상위법령

에서 구비하도록 요구한 요소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 상위법령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혹은 대상의 범위를 초과한 사례 등이 주로 발굴되었음.

③ 법령상(위임)근거 없는 규제 유형

- 동 유형의 경우 발굴된 조례의 수에 관계없이 가장 문제의 소지가 많은 유형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판단됨.

④ 그 밖에 조례입안원칙에 위배되는 유형

- 주로 형식적인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음.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담당자에 대한 충실한 법제교육으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제 3 장 지방규제 자치법규 문제점 및 정비방안 실태조사

-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4개시에 대해서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시 소관 조례 정비과제 발굴하고 그 정비방안을 검토함

- 14개 '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군'에 비하여, 대부분 도시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규모의 시의 경우 어업, 농업 등 기초산업이 발달한 특징을 보이는 지역도 있음

- 각 지자체별로 평균 376.4개를 발굴하였고, 지자체별로 최근 2012 ~ 2015년 사이에 정비가 잘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J시의 경우 287개) 1960년대 - 70년대의 조례를 한번도 정비하지 않은 곳도 발견되어 지방차원의 규제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정비가 중요함을 확인함

- A시는 수도권 인근에 위치하여 비교적 정비가 최근까지 이루어졌으나, 자치법규 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제개정법령의 조문 반영하지 못한 것이 다수 발견되었고,

관계법령의 제개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항이 많아 5유형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함

- B시는 해안에 위치하고 관광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는 조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역시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다수 발견되었음. 관계법령의 제개정 관련 인용조문 오류등 기타에 해당하는 5유형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함

- C시는 역시 해안에 포함하고 있는 곳으로 관광지 시설에 대한 조례가 발견되었으며, 2유형이 47개가 발굴되어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등 포함) 유형이 다른 시에 비해서 비교적 수치가 높은 편에 속함

- D, E시는 최근 도심지가 활성화되는 지역으로서 조례 갯수가 비교적 많고(320여개, 평균300개) 개발과 관련된 조례에서 규제개선 사항이 발굴되는 경향임

- F, I시는 수도권 인근으로 군부대 배치등의 영향으로 개발이 늦은 편이고, 자연환경에 대한 자원으로서 활용이 기대되는 지역임. 이와 관련한 관광 등에 대한 조례가 다수 발견됨

- G시는 최근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서 대규모 아파트단지, 쇼핑센터 건립 등 교통의 요지로 자리매김 하는 지역으로 조례의 수가 많고, (317개, 평균300개) 최근까지 조례개정이 있었으나,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다수 발견되었음

- H시는 전통적인 행정도시로서 비교적 정비가 잘되어 있었으며, 발굴사항도 평균적 수치를 보임

- J시는 전통적인 해양도시로 발달한 곳으로 관광 및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조례가 존재하였으며, 비교적 최신까지 법령의 규정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K시는 바다와 접하고 있으며 대규모 산업시설이 들어선 지역으로 소득수준이 높고 최근까지 비교적 정비가 잘되어 있음(292건 발굴, 평균 376건)

- L, N시는 전통적인 농업도시로서 도시의 면적은 넓은 편이나, 연령층이 높고 인구유입에 대한 촉진기제가 비교적 낮은 편으로 생각되며, 조례의 총 수도 적고 발굴사항도 특이점이 다소 적은 편임

- M 시는 전통문화유산으로 유명한 지역으로 문화재, 관광, 자연환경보존 관련 다양한 종류의 조례가 발견되고 최근까지 활발한 제개정을 한 것으로 보이나, 과거 제정했던 일부 조례에 대한 지속적 점검이 미흡하여, 폐기 또는 전면개정 되어야 하는 조례가 상당수 발견되어, 지자체의 조례에 대한 전수적 정비가 매우 시의적 절했음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음

제4장 결론

□ 지방규제 개선과정에서의 품질제고를 위하여, 세부적으로 규범적 측면, 절차적 측면, 내용적 측면의 관점에서 적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 조례안의 입안, 심의, 의결, 공포를 넘어서서 자치법규 제정이후의 집행, 집행결과의 환류 차원까지 포괄하는 자치법규의 생애주기적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음
- 각 부처간의 기능적 역할분담이 강조되어야 하며, 지방 차원의 전문 법제인력의 충원, 법제·법무전담조직의 구조 개편과 기능 활성화, 법제담당 직원·정책담당자·지방의원 등의 법 전문성 함양방안 등도 선제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지방자치와 국가경쟁력에 대한 필수적 요소임

□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법치주의의 강화와 지방차원의 전체법질서에의 타당성 제고를 도모함

- 상위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규범형식과

체계에도 흠결이 없고 내용적으로도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규율요소들을 모두 갖추며, 시간적으로도 필요 적시에 입법되어 시행되어야 함

▢ 특히 지방규제의 개선의 관점에서는 행정의 상대방인 기업이나 주민의 입장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편익 및 기업활동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국획일적인 규제를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

▢ 전체 국가법체계와의 규범정합성 확보와 자치법규의 위법 리스크 감소를 위해서도 자치입법능력 향상을 위한 상시 지원시스템이 필요함

- 간섭·통제수단일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전문가그룹과의 협업도 중요함
-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 필요한 자치법규를 적시에 적절히 정비하거나 완비할 수 있는 자치입법능력을 갖추게 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적인 자치입법시스템과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자치법규지원체제가 구축·운영되도록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치법규의 생애주기적 제도적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좋은 정책과 제도를 실현하려면 좋은 입법이 있어야 하며 그 중 조례는 풀뿌리 입법으로서 매우 중요함

- 지방규제 개선 기준의 타당성·유용성을 검증보완하기 위하여 분야별 개별 조례를 지방자치단체간 비교검토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상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한 조례의 개선기준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는 과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추출된 DATA를 SoXJI을 통한 검색방법 등의 개발 및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목 차

요약문

개조식 요약서

제 1 장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 ····· 2

2. 연구의 특징 및 장점 ····· 4

제 2 장 지방규제 현황 및 문제점 ····· 9

1. 지방규제의 현황 ····· 9

2. 지방규제의 문제점 ····· 25

제 3 장 지방규제 자치법규 문제점 및 정비방안 실태조사 ····· 27

1. A 시 ····· 27

2. B 시 ····· 92

3. C 시 ····· 157

4. D 시 ····· 214

5. E 시 ····· 268

6. F 시 ····· 322

7. G 시 ····· 371

8. H 시 ····· 425

9. I 시 ····· 477

10. J 시 ····· 533

11. K 시 ····· 587

12. L 시 ····· 644

13. M 시 ····· 701

14. N 시 ····· 757

제4장 결론 ····· 814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 국가시책(제도)의 적시 반영의 필요성

-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행정혁신, 경쟁력 제고, 법령 제·개폐 등의 법제 개선의 추진 취지나 성과가, 주민에 근접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적시에 그것도 제대로 반영되어야 함
- 적시에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제도나 정책 자체의 기능 부전, 실효성 저하, 주민체감도의 미흡 등의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큼
- 규제개혁에 있어서 규제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정비·해석·운용은 일반적으로 기존법규를 검토하여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규제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함.
- 정부의 규제개선노력이 신속하게 일선 지방행정의 수준까지 확산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중앙정부의 규제개선 및 제도개선 활동이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지방자치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자치법규 정비

- 지방자치단체는 최일선의 행정작용을 집행함으로써, 기업과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하여 국가차원의 규제개혁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노력이 필수적인 부분임
- 지방자치가 20여년이 지나면서 분권과 자치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시책, 법령 개선 등과 자치법규의 연동·유기적 체계성 증진, 자치법규의 체계·내용구성·법규의 질적 수준의 제고 등이 정비될 시점이라 할 것임

- 이에 국가차원에서 자치법규 입안·정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자치법규의 역량 강화를 돕는 것은 실질적 지방자치의 구현에도 기여함.

○ 규제개선의 국가 전체적 확산도 제고

-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한 규제개선에 대한 정책이 국가전체에 확산되어 시기에 어긋나지 않게 집행되어야 보다 국가경쟁력에 확고하게 기여할 수 있음
- 규제권한의 지방이양 등 자치입법이 확대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에 대응하여야 하는 등, 중앙과 지방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자치법규의 법체계적인 관점에서의 적합성이 점검되어야 할 것임
- 제도개선의 지방확산의 방사효과를 확대시켜 급변하는 지방자치의 환경에 대한 자치법규의 대응력을 제고하는 것이 긴요하며,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 제·개정을 반영하는 시차가 발생하여 규제개선의 체감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함

○ 국민 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다수 포함

- 세계적 추세로서 지방화시대의 도래, 지방자치제도의 지속 발전, 주민과 지역사회의 주인의식 제고, 지방으로의 행·재정권한의 이양 확대 등에 따라,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주체성 및 지방자율성이 강조됨
- 이에 따라 지방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 축소 내지 조정, 중앙집권식의 과도한 국가법령 선점의 완화 등이 요구되고, 그에 비례하여 지역사회의 법으로서 지방행정을 근거지우고 뒷받침하는 자치법규의 역할이 증대됨
- 자치법규로서 갖추어야 하는 적법요건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주민과의 관계에서도 적실성 있는 규범력을 확보하도록 자치법규의 전주조사의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음

○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 및 체계적 자치법규지원체계의 구축 필요성

- 자치법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자치권을 신장시키고 주민의 기본권을 다양한 방법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중요한 법 작용이라고 할 수 있음
- 무엇보다도 지방행정의 규범적 근거 내지 틀이 되고 지역의 독자적 정책의 핵심 실현수단이 되는 자치법규를 그 체계, 내용, 입안절차 등에 있어서 완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미흡하거나 만족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
- 따라서 이번 시범적인 조례 전수조사를 통해 군 단위에서 자치법규가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커짐
- 이에 관한 연구와 시도를 통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 필요한 자치법규를 적시에 적절히 정비하거나 완비할 수 있는 자치입법능력을 갖추게 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적인 자치입법시스템과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자치법규지원체제가 구축·운영되도록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접근하여야 할 것임

2. 연구의 특징 및 장점

○ 자치법규에 근거한 지방규제의 품질제고

- 존치 필요성이 낮은 규제는 폐지하고, 필요한 규제라도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규제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경제의 위험관리 등에 관한 제도는 보완, 강화되어야 함도 아울러 고려함
- 품질이 좋은 규제는 투명성, 비례성, 책임성, 일관성 목표성 등의 원칙을 충족하고, 폭넓은 주민의 지지, 집행가능성, 쉬운 이해도, 비의도적 부작용의 최소화, 규제비용과 효과 사이의 균형성 등을 갖추는 것을 의미
- 이러한 자치법규의 내용적 측면을 접근하는 것은 종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권 촉진의 수단을 양적인 사무배분에 집중하였던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임

- 규제개선 등을 위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서 상위법령에의 위반등 문제점을 도출할 뿐만 아니라, 발굴된 사례에 대해 내용적인 측면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획일적 규제나 과도한 규제를 완화 내지 폐지하거나 필요적절한 규제대안을 제시함으로써 量에서 質 중심으로 규제에 대한 품질제고를 강조함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정비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전반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임,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는 정부가 제정, 개정하는 법령의 구체화, 세부화, 지역화를 가능하게 하여 일선행정의 만족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침,

○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 규제의 편의상 획일적이고 단순한 규제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다양한 현상을 규율할 수 없으며, 입법목적과 무관하게 불필요한 규제를 야기하여 자유를 제한하고 시장의 창의와 혁신을 방해하는 요인이 됨.
- 규제의 다양성· 세분화의 필요는 규제권한의 지방분권 논의로 연결되며, 특히 보다 거시적 안목에서 새로운 중앙과 지방간 역할분담체계의 구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
-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규제제도에 지역적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러한 규제제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벤치마킹 및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규제개혁은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므로 다양한 상황에 부합하는 세분화된 규제기준을 설정하여 불필요한 제한을 제거하여야 함.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지방의 특수성 및 지역경제의 다양성에 근거하는 규제방식 및 규제수단의 유연성임.

○ 자치법규의 규범평가와 관련한 연구 수행 경험 반영

□ 2007년 행정자치부 『자치입법 분권화 지표개발 및 법령 실태분석 연구』

- 자치입법권의 실제적 분권현황에 보다 중점을 두어 현해 개별 법령에서 조례제정권을 제약하고 있는 실태를 개별적으로 점검하여 자치입법권의 확대도모를 위한 구체적인 논증자료 확보

  ▷ 현재의 자치입법권 보장수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파악하고 법령의 실제적인 자치입법권 보장 상황을 점검하여 지방 내지 주민 입장에서 문제를 인식하는데 필요한 기본자료 확보

  ▷ 국가행정과 지방자치행정이 매우 긴밀히 조응하면서 자치입법권의 분권에 그 중요성이 특히 인정되는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4개부처의 소관 법령을 분석과 연구의 대상으로 함

  ▷ 법령의 조항 중 “조례”라는 문구가 나오는 조항, 즉 법령상 조례 제정의 근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하여, 조례 제정 근거 법령의 규정 유형의 분석과 개별 유형별 조례 입법의 가능성 내지 범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자치입법권 분권 정도 또는 확대 가능성 검토

- 분권지표연구의 주요 목표

  ▷ 주요 중앙 부처의 조례 근거법령의 규정유형별 전체 현황 파악

  ▷ 자치입법(조례)을 가능하게 하는 법령 제·개정 방식의 지침제공

  ▷ 개별 법령조항의 구체적 검토를 통한 자치입법권 확대방안 제시

  ▷ 향후 사무유형별 자치입법 대상과 범위 구체화를 통한 실질적 분권화 입법 추진.

□ 2012년 법제처 :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을 위한 개선도 측정 등과 정부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연구』

- 개선도 측정 등과 정부지원체계에 대한 연구의 주요 목표

▷ 자치법규 선진화의 필요성,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등 제도개선 체감도 향상과의 관련성 연구

▷ 자치법규의 현황 및 자치법규 자체 개선을 위한 입법시스템 문제 분석

▷ 자치법규 선진화 측정 지수와 기준을 마련하고 세부적 활용방안 마련

▷ 자치법규 지원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도출

▷ 상위법령과의 관계에서 자치법규에 대한 개정 등에 대한 준수사항 규정 등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규정마련

□ 2015년 법제처 :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군(郡) 소관 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연구』

- 조례 전수조사 및 검토 결과 문제점 발굴

▶ 국가시책(제도)의 적시 반영의 필요성에 따라,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 및 체계적 자치법규지원체계의 구축 필요

▶ 국민 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치법규에 근거한 지방규제의 품질제고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제고를 도모함

▶ 조례 전수조사 및 검토 결과 문제점 발굴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는 폐지하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굴 사례별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시

제 2 장 지방규제 현황 및 문제점

1. 지방규제의 현황

□ 전수 조사하여 문제유형별로 개선방안(정비방안) 제시

- 시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문제유형별로 각 문제되는 조례에 대하여 개선방안(정비방안)을 제시함.

- 문제되는 각 조례 조항별로 별도의 표를 작성하였는데, 표에서는 조례 제명 및 조항, 조항의 내용, 상위법령 및 문제유형을 기재하고, 문제점 및 검토의견을 적시하였으며, 개선방안(정비방안)을 제시함.

<table>
<tr><th>문제유형</th><th>정비방안(개선방안)</th></tr>
<tr><td>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td><td rowspan="5">○ 제·개정사항 반영한 개정안 제시
○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개정안 제시
○ 폐지 또는 개정안 제시</td></tr>
<tr><td>② 상위법령에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td></tr>
<tr><td>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td></tr>
<tr><td>④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td></tr>
<tr><td>⑤ 기타</td></tr>
</table>

□ 문제유형별 건수 및 비중

	유형①	②	③	④	⑤	소계
1) A 시	6	22	36	92	354	510
2) B 시	5	47	12	27	411	502
3) C 시	4	58	6	23	318	409
4) D 시	6	46	13	15	336	416
5) E 시	9	45	11	32	292	389
6) F 시	12	36	16	10	269	343
7) G 시	9	41	13	24	347	434
8) H 시	12	33	15	35	233	328
9) I 시	10	32	19	24	208	293
10) J 시	8	36	16	31	196	287
11) K 시	9	38	14	36	195	292
12) L 시	9	38	14	31	203	295
13) M 시	10	35	18	44	253	360
14) N 시	30	71	21	68	222	412

1) A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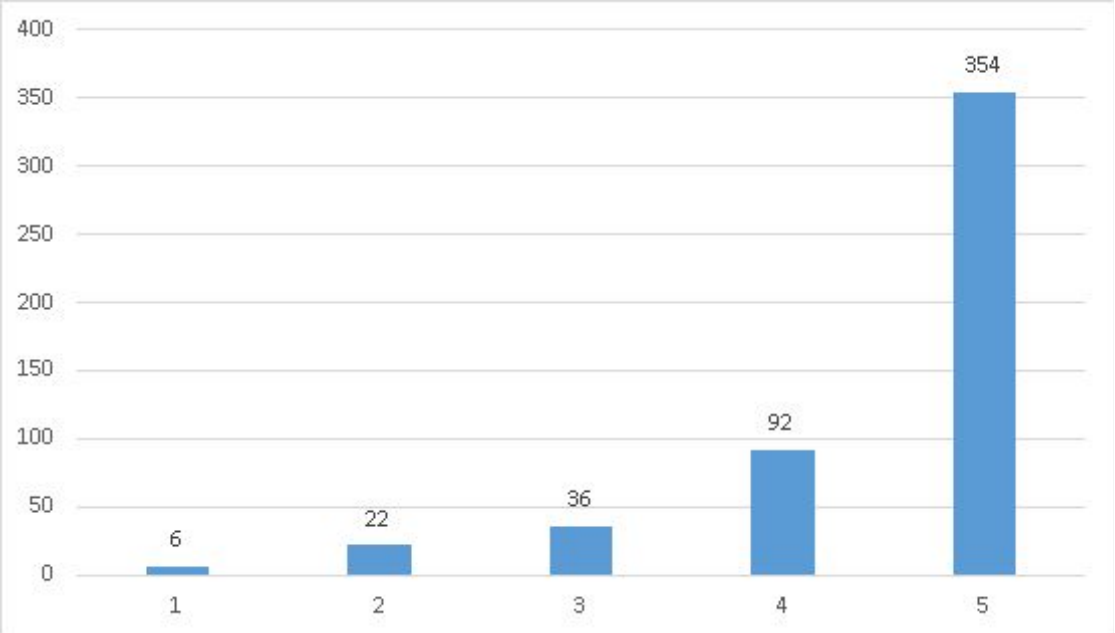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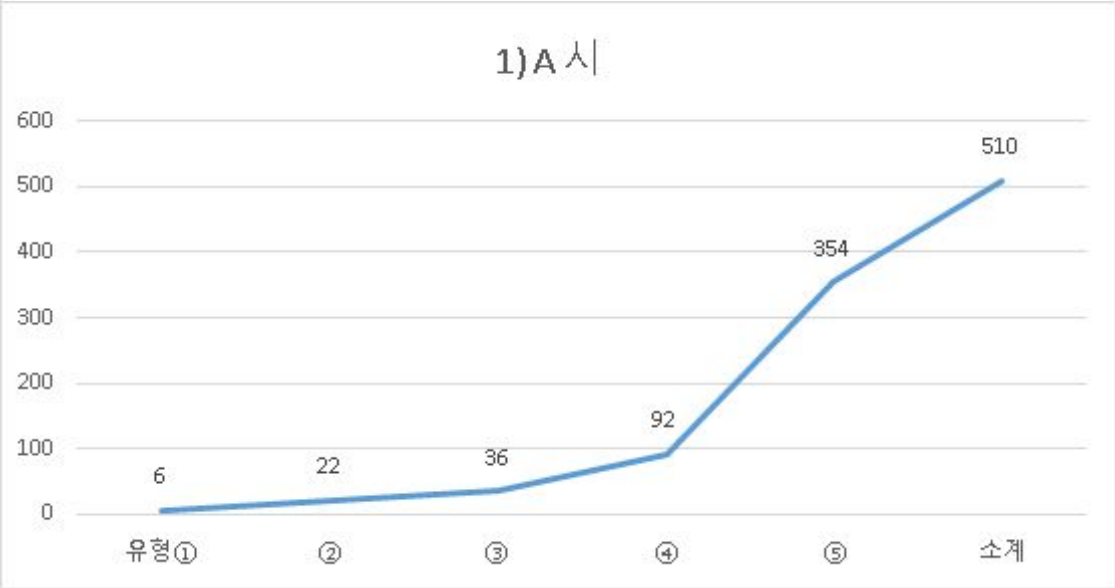

- A시의 경우 각 유형별 분포를 보면 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6건), ② 상위법령에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22건),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36건), ④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92건), ⑤ 기타(354건)으로 총 510건이 발굴되었음
- 1 유형 1%, 2 유형 4%, 3유형 7%, 4유형 18%, 5유형 69% 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규제 주요개선사항의 1 - 3 유형은 약 12%의 분포를 보였음

2) B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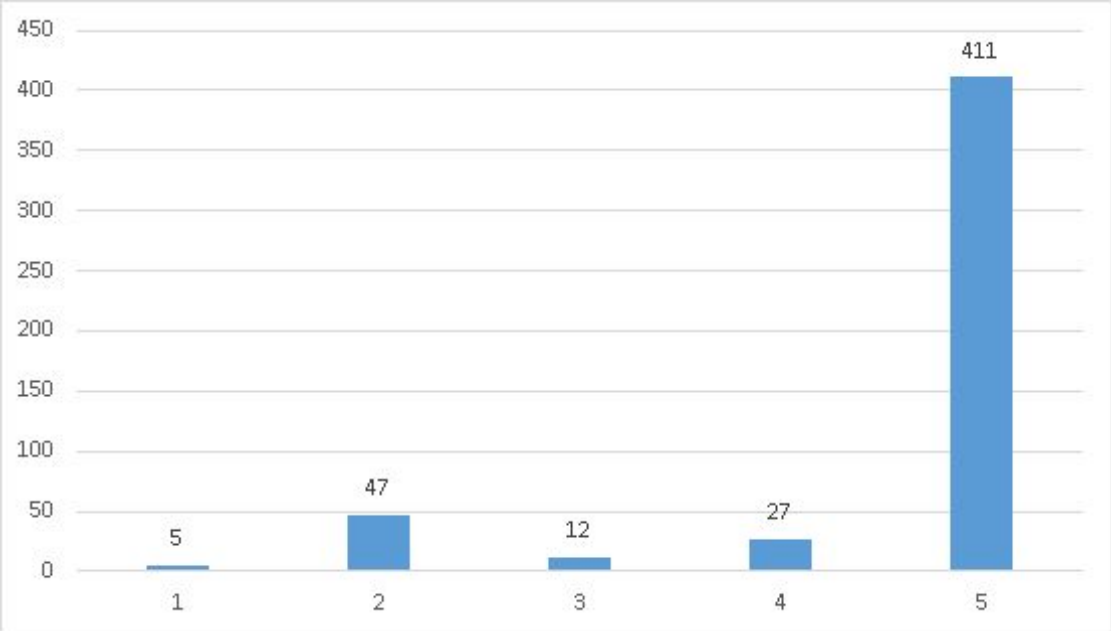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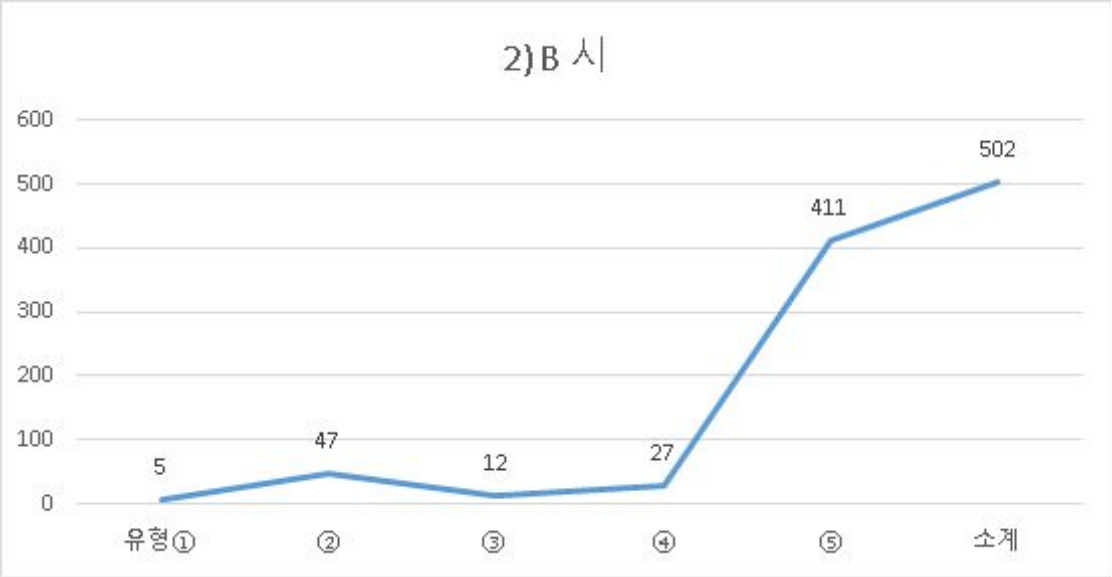

- B시의 경우 각 유형별 분포를 보면 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5건), ② 상위법령에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47건),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12건), ④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27건), ⑤ 기타(441건)으로 총 502건이 발굴되었음
- 1 유형 1%, 2 유형 9%, 3유형2%, 4유형 5%, 5유형 82% 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규제 주요개선사항의 1 - 3 유형은 약 12%의 분포를 보였음

3) C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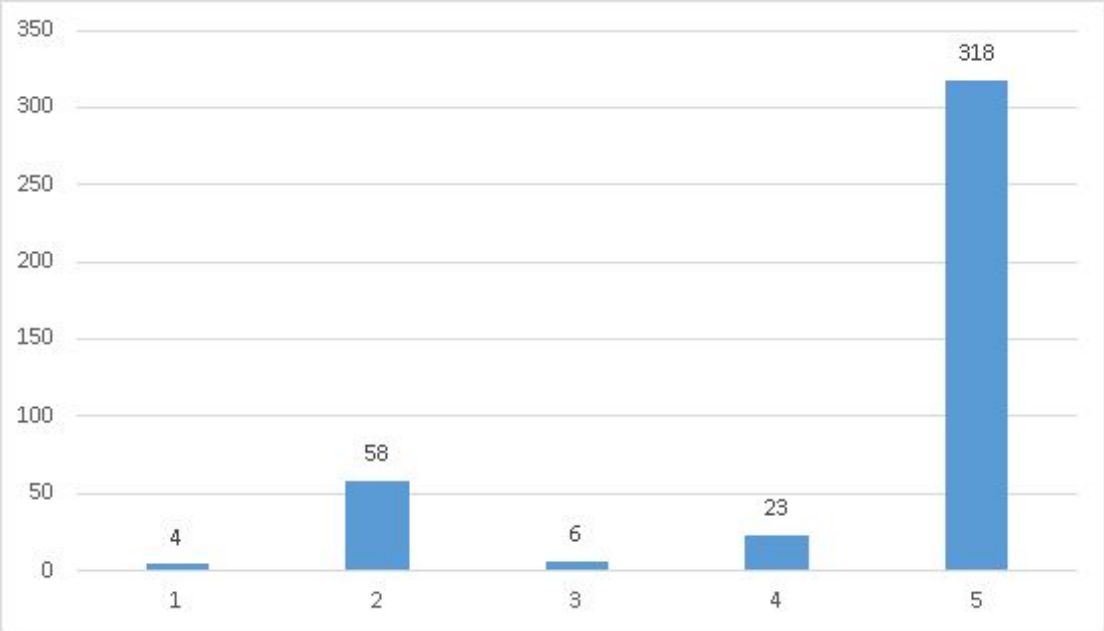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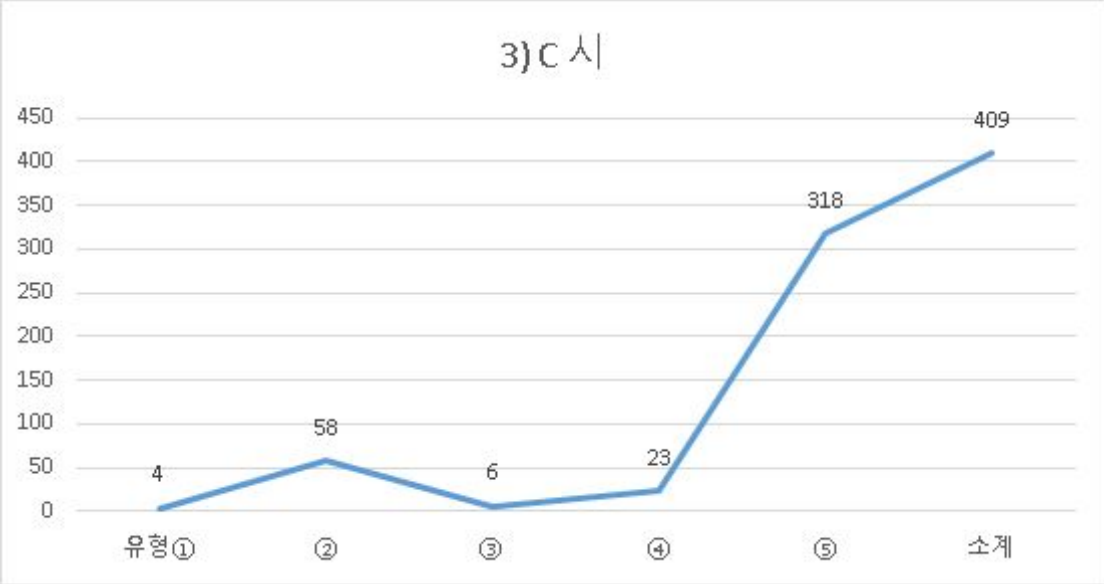

- C시의 경우 각 유형별 분포를 보면 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4건), ② 상위법령에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58건),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6건), ④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23건), ⑤ 기타(318건)으로 총 409건이 발굴되었음
- 1 유형 1%, 2 유형 14%, 3유형 1%, 4유형 6%, 5유형 78% 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규제 주요개선사항의 1 - 3 유형은 약 16%의 분포를 보였음

4) D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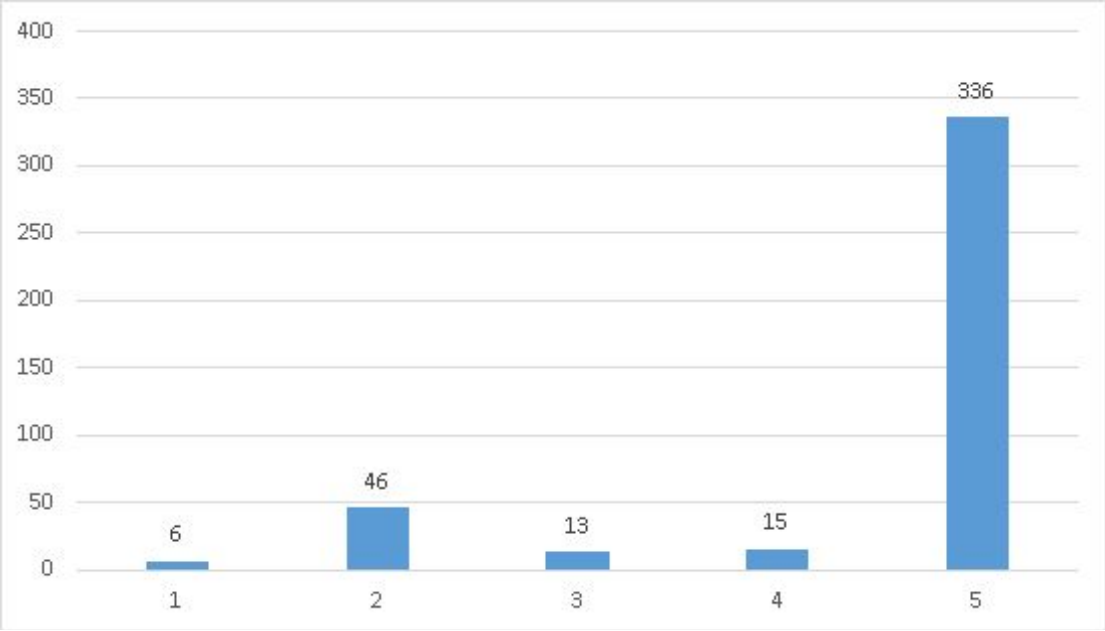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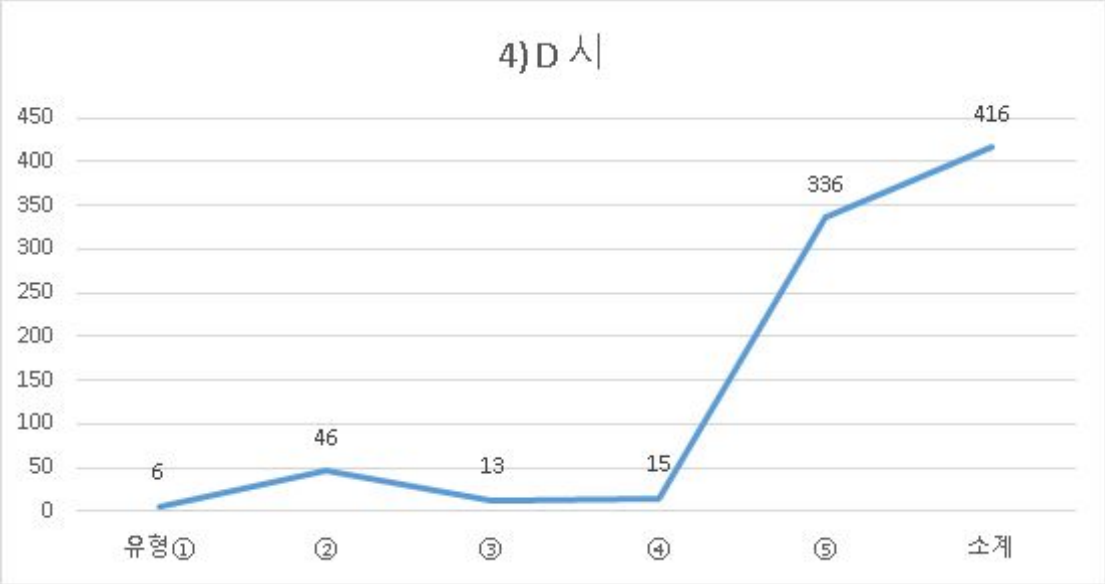

- D시의 경우 각 유형별 분포를 보면 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6건), ② 상위법령에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46건),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13건), ④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15건), ⑤ 기타(336건)으로 총 416건이 발굴되었음
- 1 유형 1%, 2 유형 11%, 3유형 3%, 4유형 4%, 5유형81% 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규제 주요개선사항의 1 - 3 유형은 약 15%의 분포를 보였음

5) E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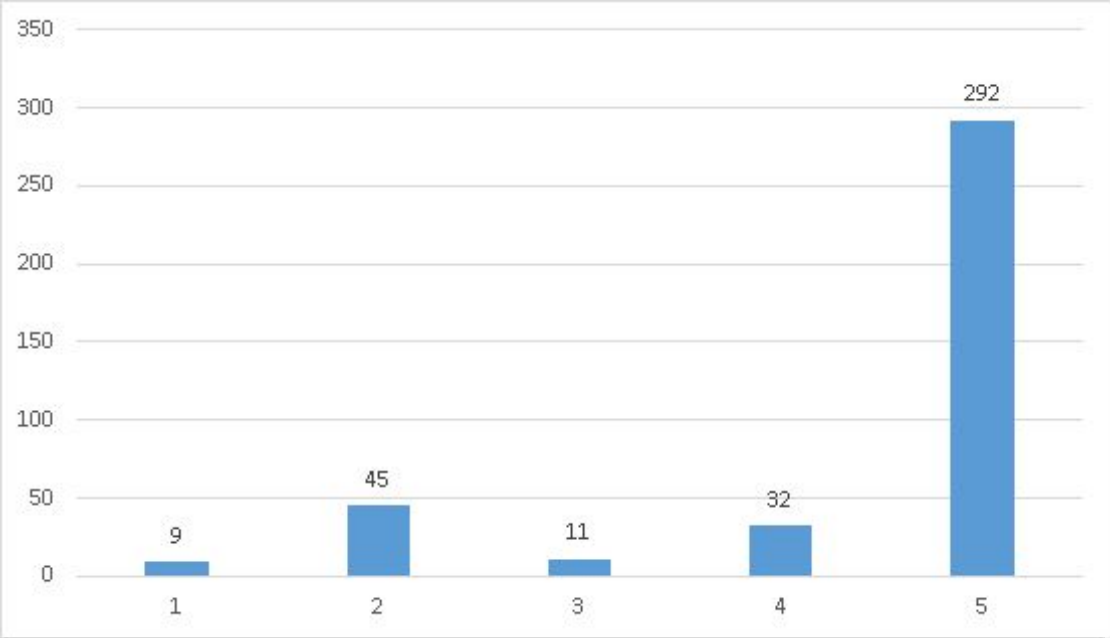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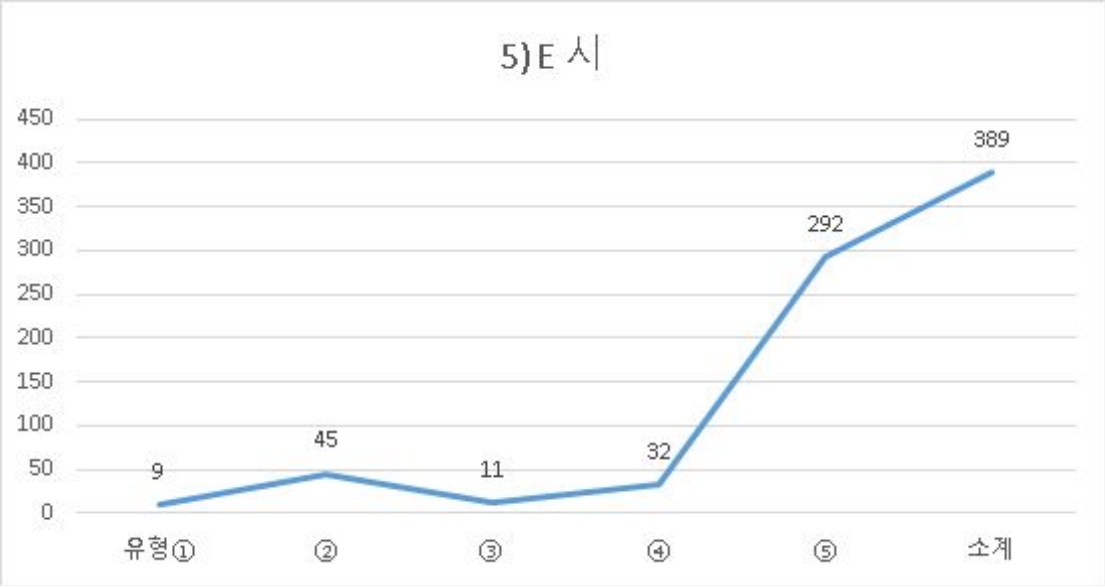

- E시의 경우 각 유형별 분포를 보면 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9건), ② 상위법령에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45건),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11건), ④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32건), ⑤ 기타(292건)으로 총 389건이 발굴되었음
- 1 유형 2%, 2 유형 12%, 3유형 3%, 4유형 8%, 5유형 75% 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규제 주요개선사항의 1 - 3 유형은 약 17%의 분포를 보였음

6) F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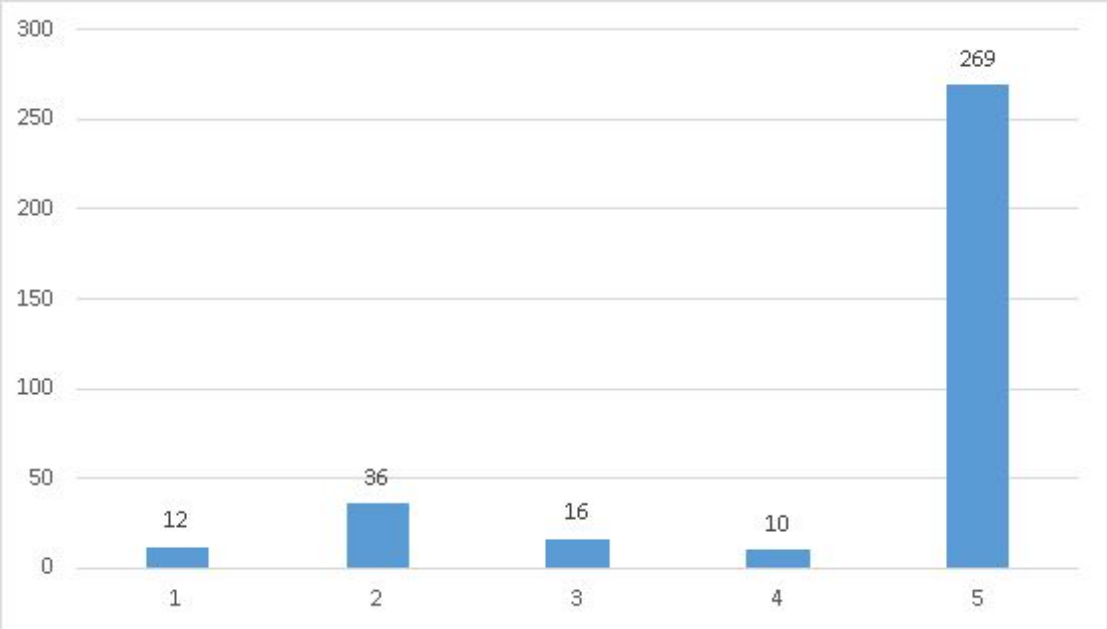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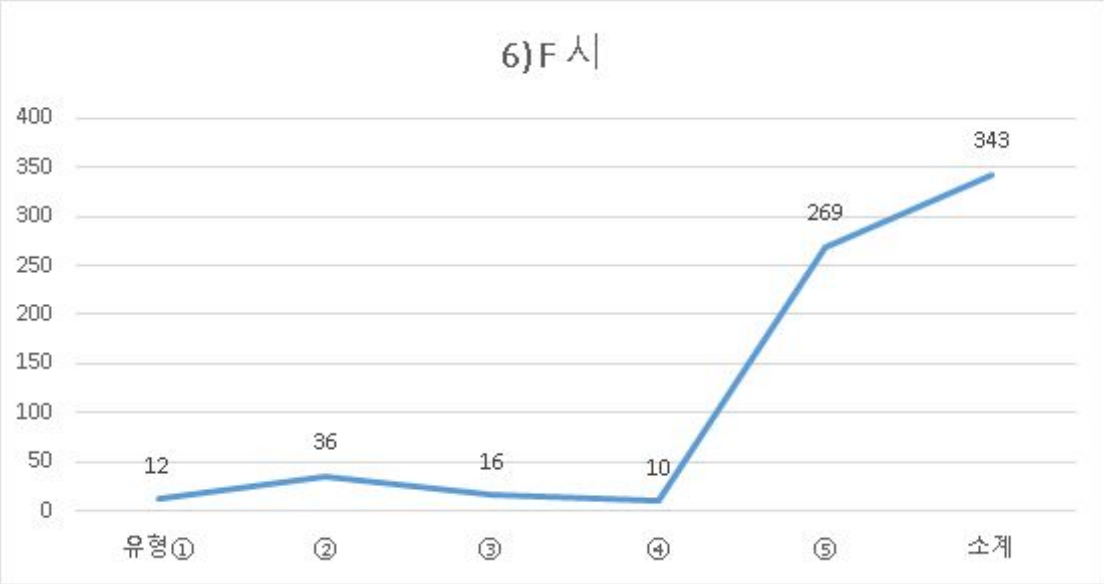

- F시의 경우 각 유형별 분포를 보면 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12건), ② 상위법령에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36건),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16건), ④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10건), ⑤ 기타(269건)으로 총 343건이 발굴되었음
- 1 유형 3%, 2 유형 10%, 3유형 5%, 4유형 3%, 5유형 78% 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규제 주요개선사항의 1 - 3 유형은 약 18%의 분포를 보였음

7) G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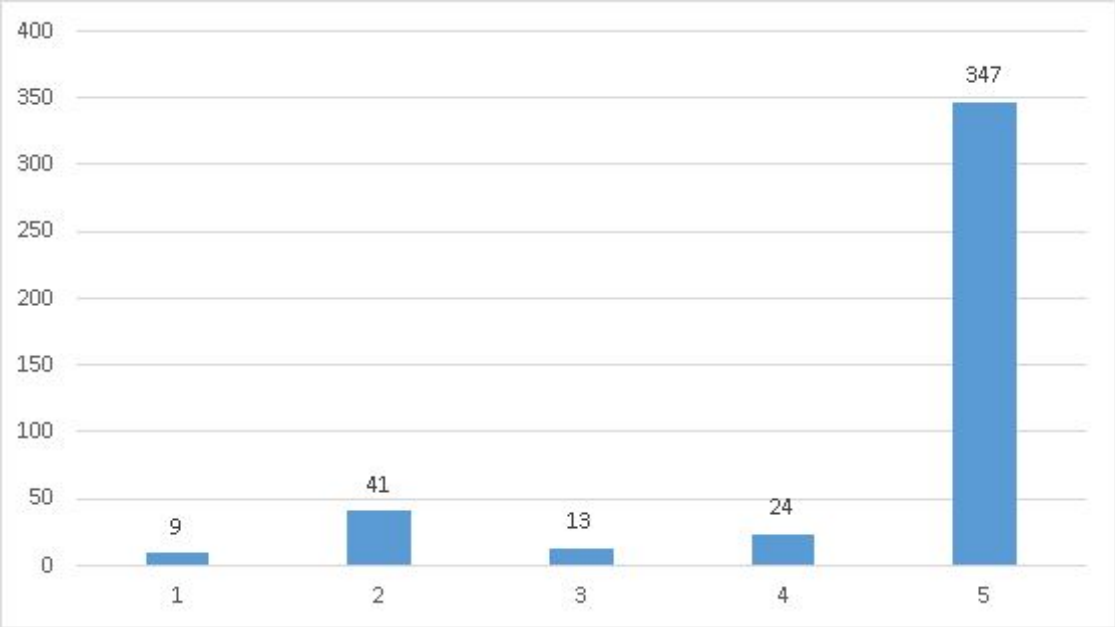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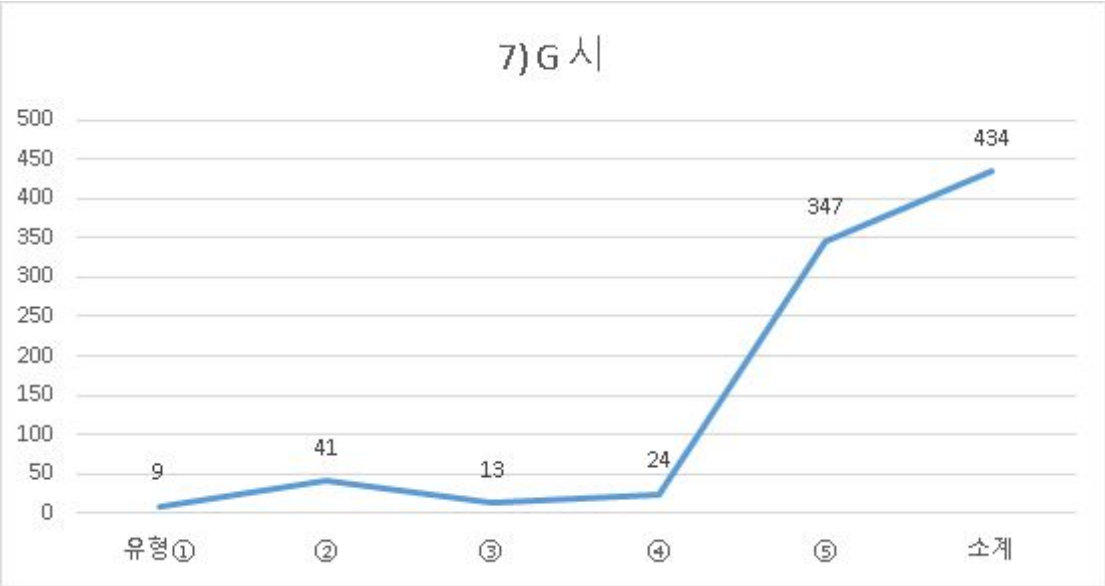

- G시의 경우 각 유형별 분포를 보면 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9건), ② 상위법령에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41건),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13건), ④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24건), ⑤ 기타(347건)으로 총 434건이 발굴되었음
- 1 유형 2%, 2 유형 9%, 3유형 3%, 4유형 6%, 5유형 80% 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규제 주요개선사항의 1 - 3 유형은 약 14%의 분포를 보였음

8) H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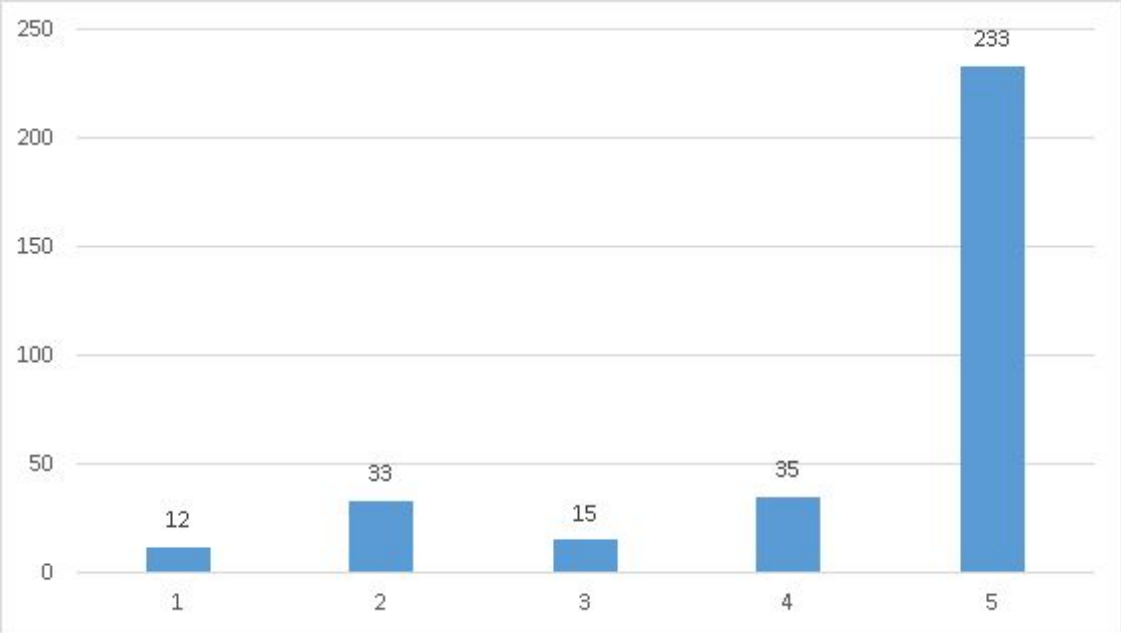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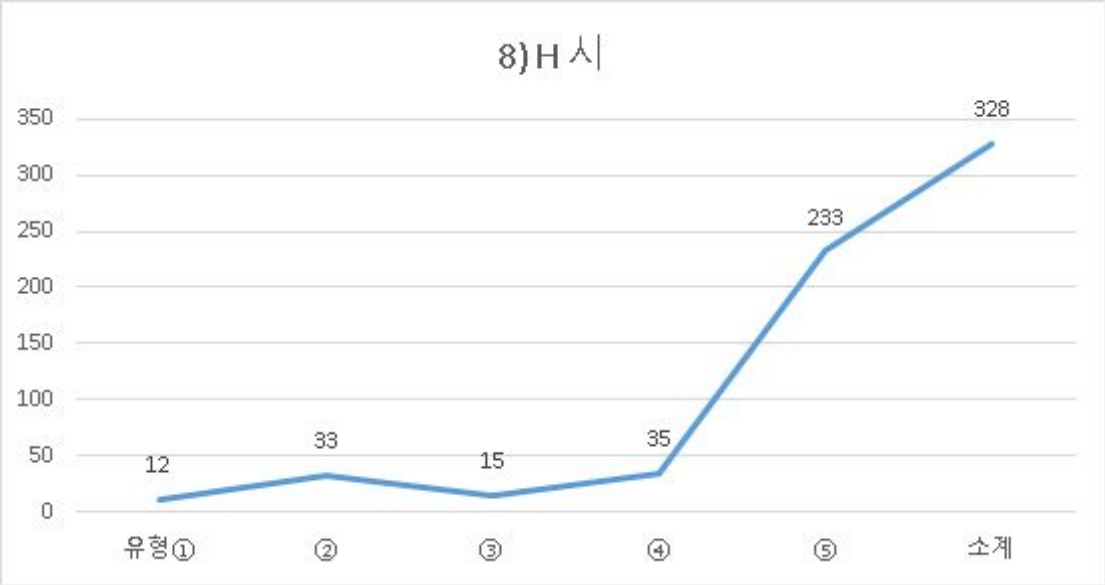

- H시의 경우 각 유형별 분포를 보면 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12건), ② 상위법령에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33건),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15건), ④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35건), ⑤ 기타(233건)으로 총 328건이 발굴되었음
- 1 유형 4%, 2 유형 10%, 3유형 5%, 4유형 11%, 5유형 71% 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규제 주요개선사항의 1 - 3 유형은 약 19%의 분포를 보였음

9) I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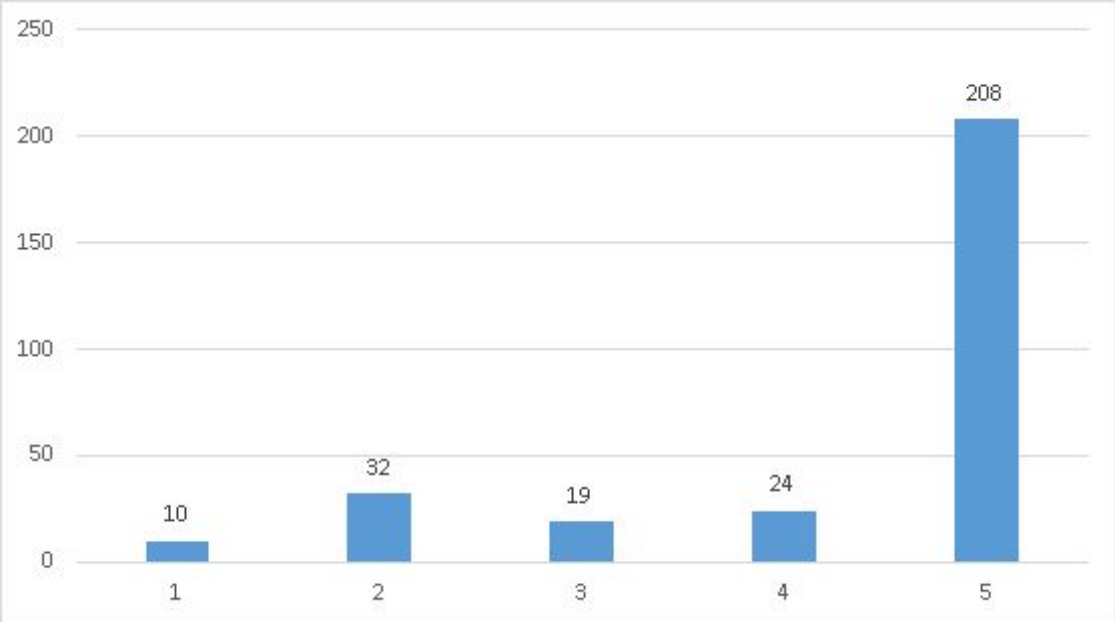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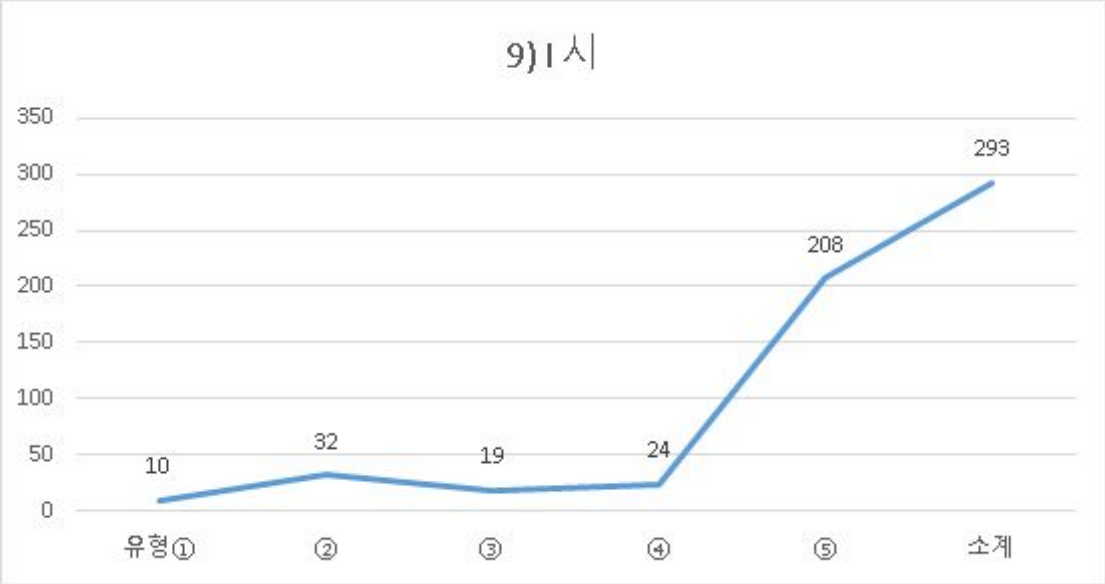

- I시의 경우 각 유형별 분포를 보면 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10건), ② 상위법령에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32건),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19건), ④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24건), ⑤ 기타(208건)으로 총 293건이 발굴되었음
- 1 유형 2%, 2 유형 11%, 3유형 6%, 4유형 8%, 5유형 71% 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규제 주요개선사항의 1 - 3 유형은 약 19%의 분포를 보였음

10) J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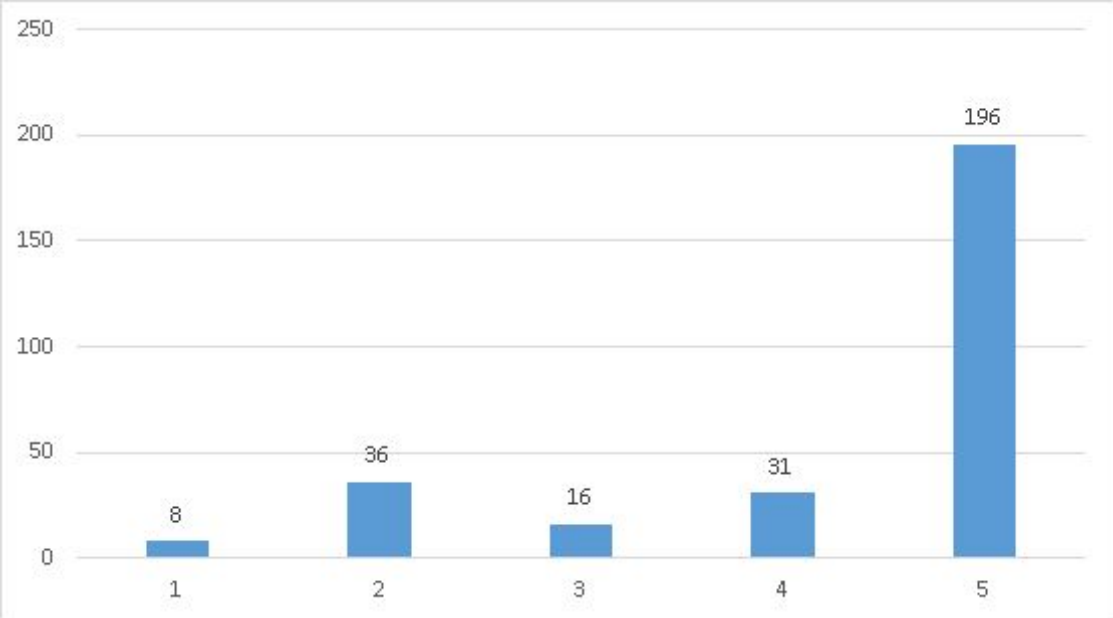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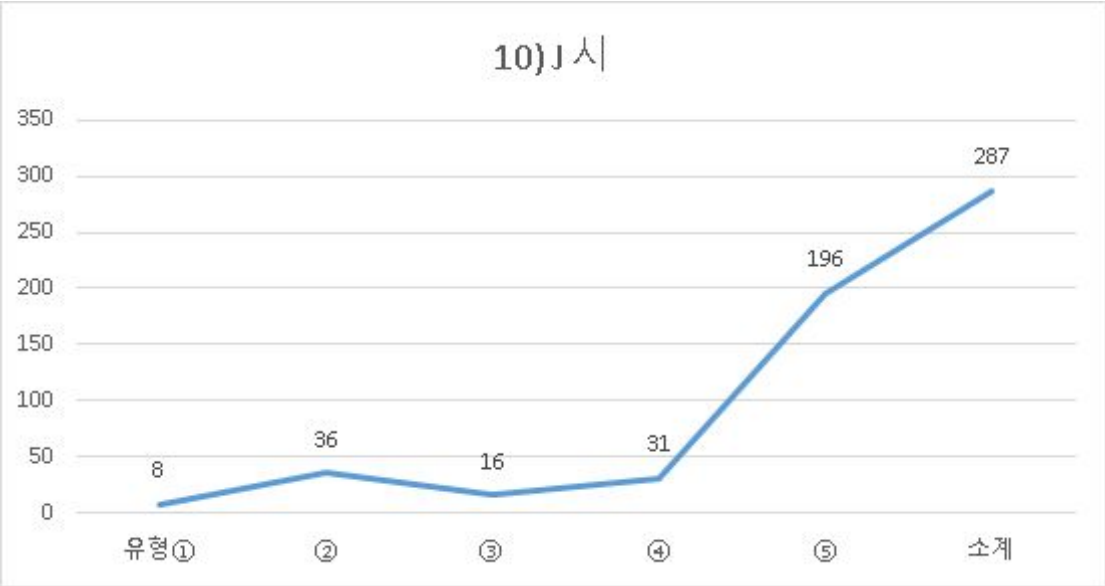

- J시의 경우 각 유형별 분포를 보면 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8건), ② 상위법령에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36건),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리, 의무) 사항 신설(16건), ④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31건), ⑤ 기타(196건)으로 총 287건이 발굴되었음
- 1 유형 3%, 2 유형 13%, 3유형 6%, 4유형 11%, 5유형 68% 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규제 주요개선사항의 1 - 3 유형은 약 22%의 분포를 보였음

11) K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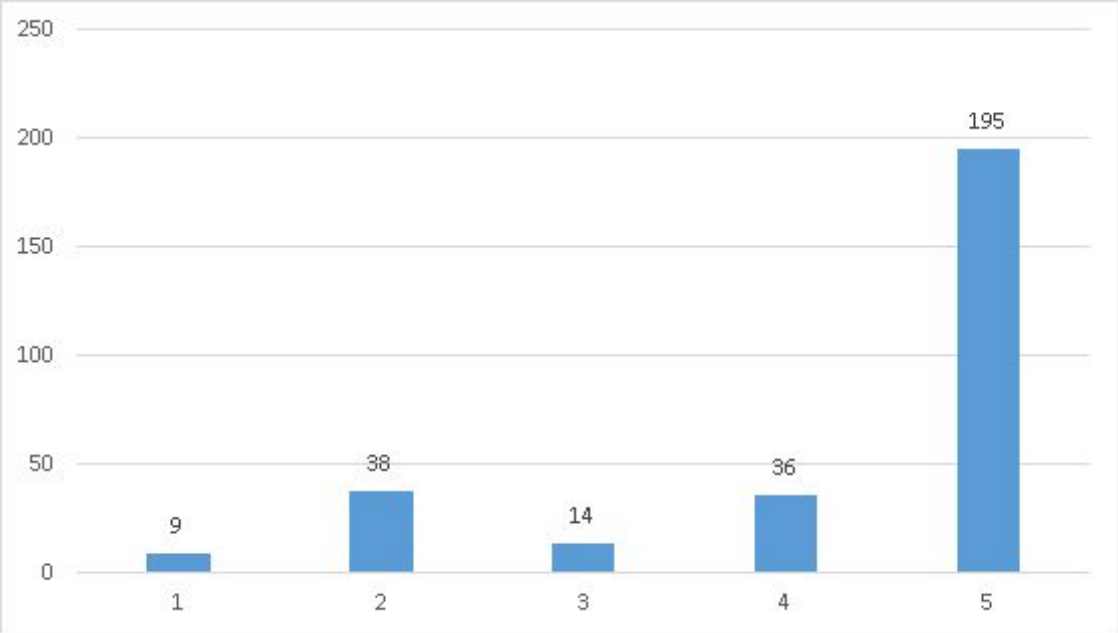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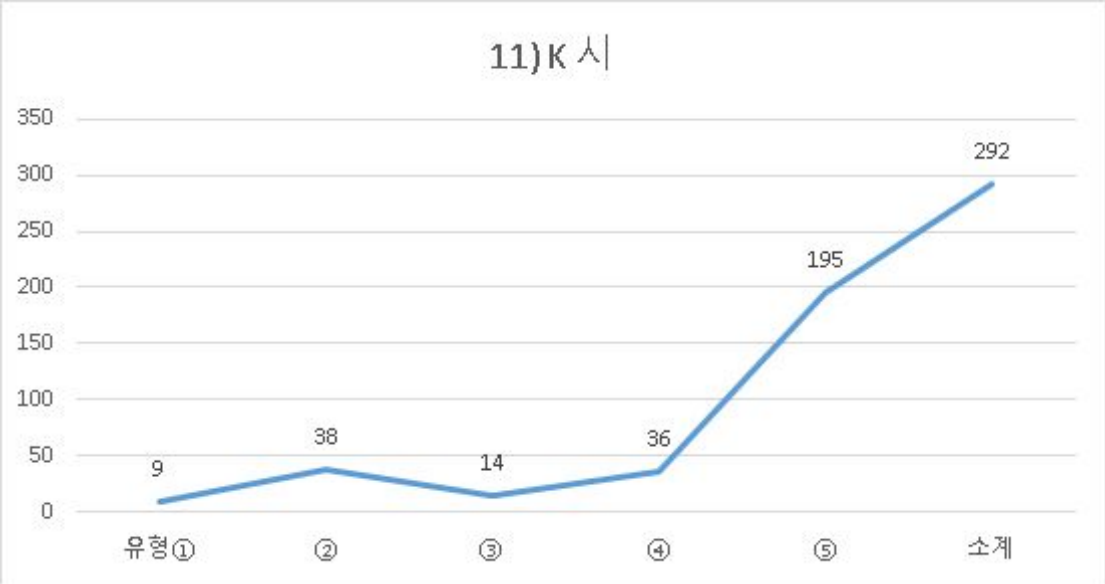

- K시의 경우 각 유형별 분포를 보면 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9건), ② 상위법령에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38건),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14건), ④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36건), ⑤ 기타(195건)으로 총 292건이 발굴되었음
- 1 유형 3%, 2 유형 13%, 3유형 5%, 4유형 12%, 5유형 67% 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규제 주요개선사항의 1 - 3 유형은 약 21%의 분포를 보였음

12) L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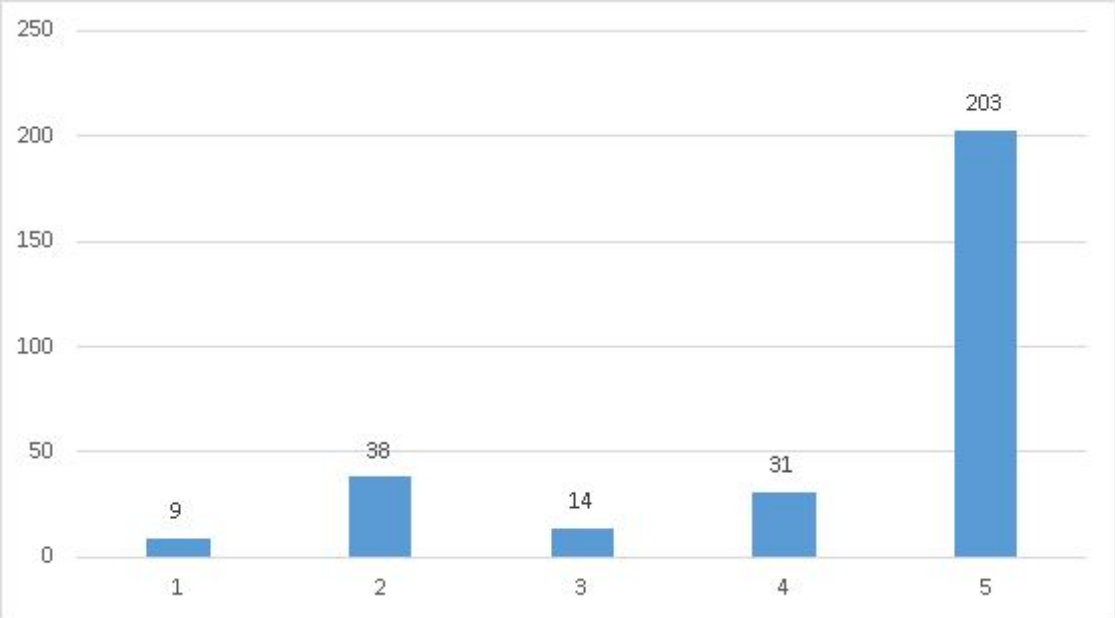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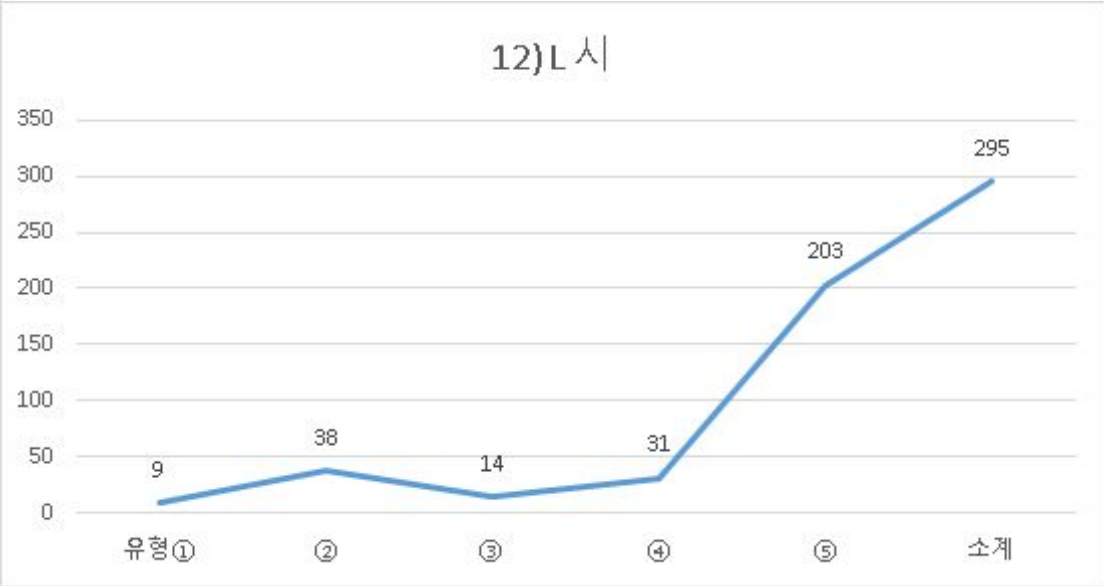

- L시의 경우 각 유형별 분포를 보면 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9건), ② 상위법령에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38건),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14건), ④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31건), ⑤ 기타(203건)으로 총 295건이 발굴되었음
- 1 유형 3%, 2 유형 13%, 3유형 5%, 4유형 11%, 5유형 69% 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규제 주요개선사항의 1 - 3 유형은 약 21%의 분포를 보였음

13) M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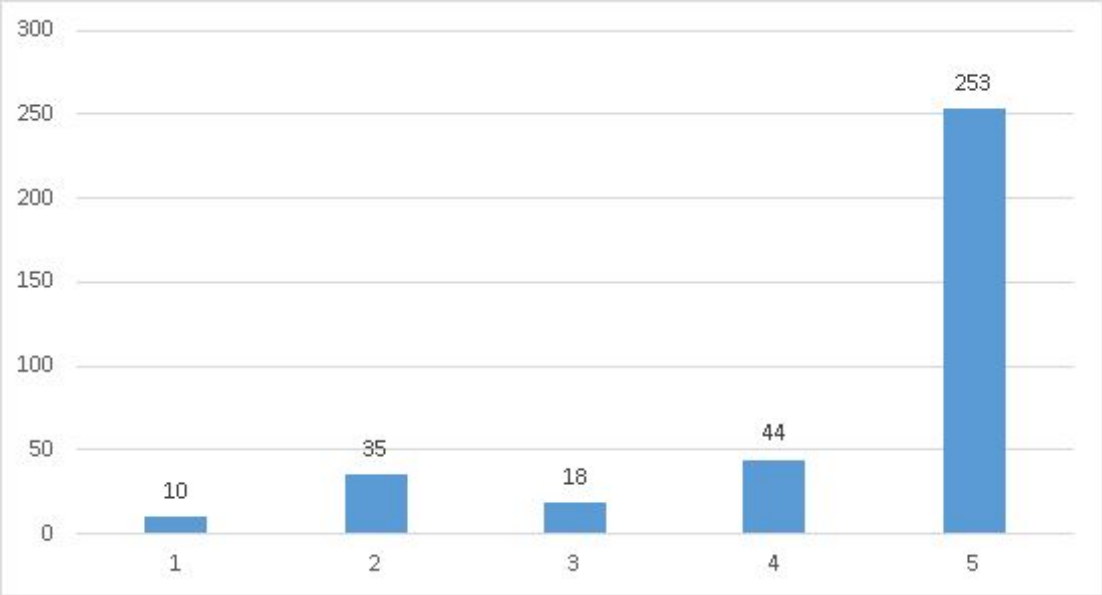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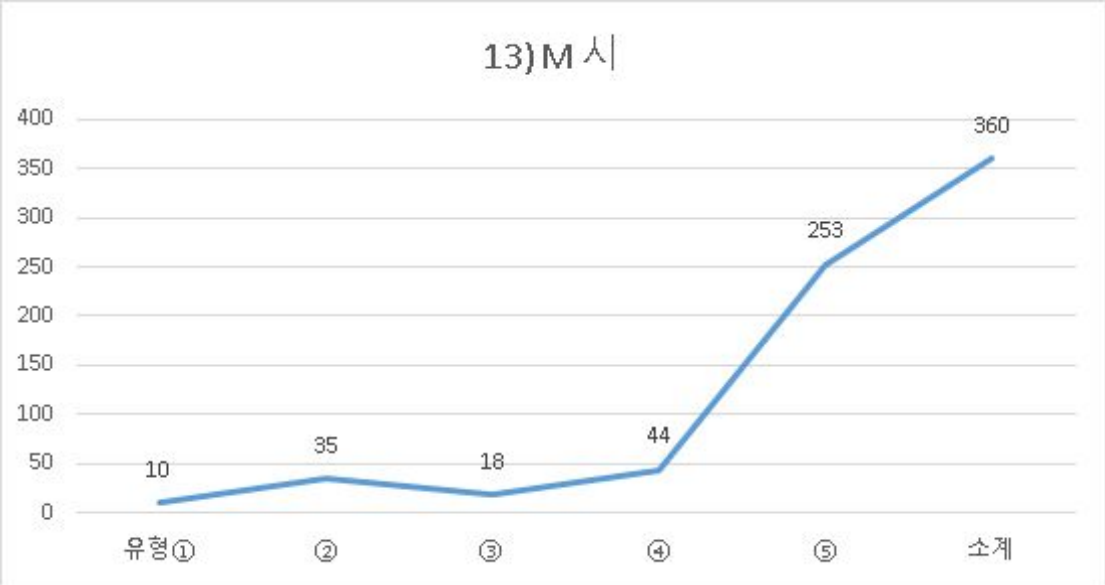

- M시의 경우 각 유형별 분포를 보면 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10건), ② 상위법령에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35건),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18건), ④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44건), ⑤ 기타(253건)으로 총 360건이 발굴되었음
- 1 유형 3%, 2 유형 10%, 3유형 5%, 4유형 12%, 5유형 70% 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규제 주요개선사항의 1 - 3 유형은 약 18%의 분포를 보였음

14) N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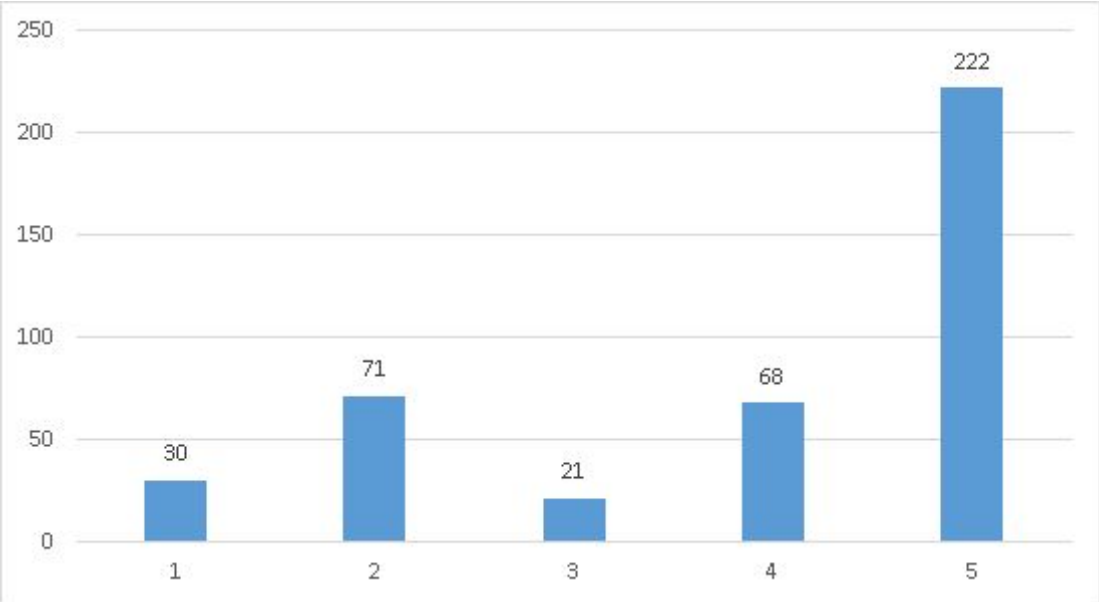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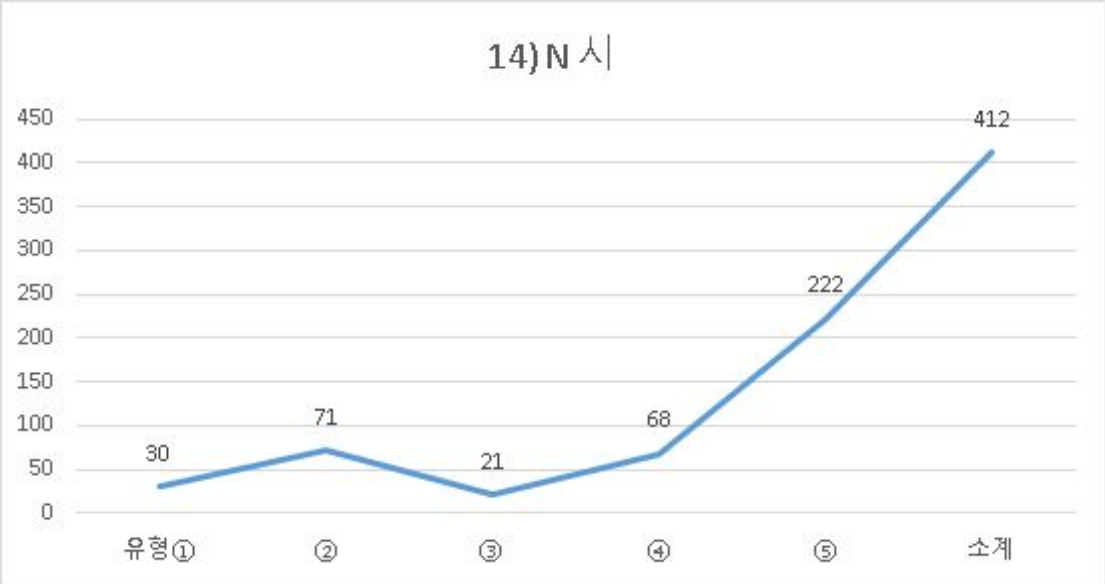

- N시의 경우 각 유형별 분포를 보면 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30건), ② 상위법령에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71건),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21건), ④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68건), ⑤ 기타(222건)으로 총 412건이 발굴되었음
- 1 유형 7%, 2 유형 17%, 3유형 5%, 4유형 17%, 5유형 54% 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규제 주요개선사항의 1 - 3 유형은 약 29%의 분포를 보였음

2. 지방규제의 문제점

□ 문제유형별 원인 및 개선책 개괄

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유형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볼 수 있음.
- “특별한 노력”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 또는 모니터링”을 통하여 개선이 가능함.
- 대다수 조례의 개정이 2012년~2015년에 이루어져 있어 비교적 관리가 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나,
- 일부의 시의 경우 그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이 수차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조례도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등 포함) 유형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에 따른 결과로 상위법령을 위반한 사례, 상위법령에서 구비하도록 요구한 요소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 상위법령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혹은 대상의 범위를 초과한 사례 등이 주로 발굴되었음.
- 동 유형의 경우 조례가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주로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사전적인 문제로서의 성격이 더 강한 바, 조례 제·개정단계에서 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가 있어야 원천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③ 법령상(위임)근거 없는 규제 유형

- 규제등록 등을 통해 규제의 요소를 가진 부분에 대한 나름의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 온 것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판단됨.
- 동 유형의 경우 발굴된 조례의 수에 관계없이 가장 문제의 소지가 많

은 유형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판단됨.

④ 그 밖에 조례입안원칙에 위배되는 유형

- 주로 형식적인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음.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담당자에 대한 충실한 법제교육으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세부적인 검토

-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4개시에 대해서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시 소관 조례 정비과제 발굴하고 그 정비방안을 검토함

- 14개 '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군'에 비하여, 대부분 도시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규모의 시의 경우 어업, 농업 등 기초산업이 발달한 특징을 보이는 지역도 있음

- 각 지자체별로 평균 376.4개를 발굴하였고, 지자체별로 최근 2012 ~ 2015년 사이에 정비가 잘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J시의 경우 287개) 1960년대 - 70년대의 조례를 한번도 정비하지 않은 곳도 발견되어 지방차원의 규제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정비가 중요함을 확인함

- A시는 수도권 인근에 위치하여 비교적 정비가 최근까지 이루어졌으나, 자치법규 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제개정법령의 조문 반영하지 못한 것이 다수 발견되었고, 관계법령의 제개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항이 많아 5유형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함

- B시는 해안에 위치하고 관광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는 조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역시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다수 발견되었음. 관계법령의 제개정 관련 인용조문 오류등 기타에 해당하

는 5유형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함

- C시는 역시 해안에 포함하고 있는 곳으로 관광지 시설에 대한 조례가 발견되었으며, 2유형이 47개가 발굴되어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등 포함) 유형이 다른 시에 비해서 비교적 수치가 높은 편에 속함

- D, E시는 최근 도심지가 활성화되는 지역으로서 조례 갯수가 비교적 많고(320여개, 평균300개) 개발과 관련된 조례에서 규제개선 사항이 발굴되는 경향임

- F, I시는 수도권 인근으로 군부대 배치등의 영향으로 개발이 늦은 편이고, 자연환경에 대한 자원으로서 활용이 기대되는 지역임. 이와 관련한 관광 등에 대한 조례가 다수 발견됨

- G시는 최근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서 대규모 아파트단지, 쇼핑센터 건립 등 교통의 요지로 자리매김 하는 지역으로 조례의 수가 많고, (317개, 평균300개) 최근까지 조례개정이 있었으나,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다수 발견되었음

- H시는 전통적인 행정도시로서 비교적 정비가 잘되어 있었으며, 발굴사항도 평균적 수치를 보임

- J시는 전통적인 해양도시로 발달한 곳으로 관광 및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조례가 존재하였으며, 비교적 최신까지 법령의 규정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K시는 바다와 접하고 있으며 대규모 산업시설이 들어선 지역으로 소득수준이 높고 최근까지 비교적 정비가 잘되어 있음(292건 발굴, 평균 376건)

- L, N시는 전통적인 농업도시로서 도시의 면적은 넓은 편이나, 연령층이 높고 인구유입에 대한 촉진기제가 비교적 낮은 편으로 생각되며, 조례의 총 수도 적고 발굴사항도 특이점이 다소 적은 편임

- M 시는 전통문화유산으로 유명한 지역으로 문화재, 관광, 자연환경보존 관련 다양한 종류의 조례가 발견되고 최근까지 활발한 제개정을 한 것으로 보이나, 과거 제정했던 일부 조례에 대한 지속적 점검이 미흡하여, 폐기 또는 전면개정 되어야 하는 조례가 상당수 발견되어, 지자체의 조례에 대한 전수적 정비가 매우 시의적절했음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음

제 3 장 지방규제 자치법규 문제점 및 정비방안 실태조사

1. A 시

1) A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A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조항	제17조
조례내용	제17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상위법령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삭제검토
개선방안 (정비방안)	대표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법률로 규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을 받아 조례로 규정해야 하나,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 □ 조례개정(안) 제17조(삭제)

2) A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A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16조 제1항
조례내용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

	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별도의 법인격 구체인 공사의 재산을 시장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공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
개선방안 (정비방안)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사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 □ 조례개정(안) 제16조①(삭제)

3) A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A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16조 제2항
조례내용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②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삭제검토

개선방안 (정비방안)	재단은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서 재단이 시의 출연금으로 설립되었다고 해서 재단의 재산이 바로 공유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재단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음 □ 조례개정(안) 제16조②(삭제)

4) A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1)

조례제명	「A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조항	제11조 제2항
조례내용	제11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②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7조 규정의 가산금산정을 준용한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삭제검토
개선방안 (정비방안)	가산금은 연체금과 달리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데,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가산금을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위반함 □ 조례개정(안) 제11조② (삭제)

5) A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2)

조례제명	「A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조항	제11조 제3항
조례내용	제11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③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삭제검토
개선방안 (정비방안)	지방세 체납처분은 반환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력적이고 강제적인 징수절차로서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함 **□ 조례개정(안)** **제11조③(삭제)**

6) A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A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조항	제2조 제1호
조례내용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가축”이란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및개를말한다.
상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에 맞게,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야 함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로 개정하거나,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써 소·돼지·말·닭·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로 개정
개선방안 (정비방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조례에서는 메추리를 규정하지 않고, 양의 경우에도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 조례개정(안)** 제2조(용어의정의) 1.“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써 소·돼지·말·닭·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7) A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A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4조
조례내용	제4조(결격 사유)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과 시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삭제검토
개선방안 (정비방안)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 제

	한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임 □ 조례개정(안) 제4조(삭제)

8) A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A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7조제2항
조례내용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이를 갈음한다.
상위법령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 직영기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도록 하는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반된 조례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대한 예외를 하위법인 조례가 인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음.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검사위원의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에 결산검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7조② (삭제)

9) A시 공설시장설치조례 (1)

조례제명	「A시공설시장설치조례」
조항	제3조제3항
조례내용	제3조 (대행관리) ③전항의 대행계약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위탁(갱신)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정비
개선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정비방안)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를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조례개정(안) 제3조(대행관리) ③전항의 대행계약기간은 5<u>년이내로</u>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u>평가를 통해</u>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10) A시 공설시장설치조례 (2)

조례제명	「A시 공설시장설치조례」
조항	제3조
조례내용	제3조 (대행관리)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년간 사용료징수액의 6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징수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삭제검토
개선방안 (정비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관리위탁할 때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법률의 근거 없이 부담을 주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됨 □ 조례개정(안) 제3조 (대행관리) ④ (삭제)

11) A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A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3조제1항
조례내용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상위법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u>30명 이내의 위원으로</u> 구성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맞게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개정
개선방안 (정비방안)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과 맞지 아니함 □ 조례개정(안)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3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2) A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A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조항	제5조제1항
조례내용	제5조 (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에 맞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어 수정
개선방안 (정비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2011. 4. 14. 개정되어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어가 변경됨 □ 조례개정(안) 제5조 (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3) A시 도시계획 조례

조례제명	「A시 도시계획 조례」

조 항	제29조
조 례 내 용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처리 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의제처리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금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한 예산내역서상 총 공사비의 20%로 산정한다.
상 위 법 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②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 제 유 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 제 점 및 검 토 의 견	이행보증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을 조례로 정해야 함.
개 선 방 안 (정 비 방 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에서는 이행보증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 □ 조례개정(안)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

	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처리 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의제처리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금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한 예산내역서상 총 공사비의 20%로 산정한다. **③(신설) 이행보증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예치방법은 별표와 같다 (별표내용 마련)**

14) A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A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항	제3조제4항제1호
조례내용	제3조(구성)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상위법령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결격사유에서 삭제 필요. 다만, 바뀐제도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규정할 지 정책적으로 판단 필요해 보임. 개정시 부칙에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음 *부칙 경과조치례 : "제0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선방안 (정비방안)	「민법」이 개정되면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를 신설하였으므로 이에 맞추어 조례도 개정해주어야 함 □ 조례개정(안) 제3조(구성)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15) A시 무형문화재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A시 무형문화재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항	제1조
조례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에 묻혀있는 우수기·예능보유자 및 단체를 발굴하여 A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제41조에 규정된 국가무형문화재로 육성하여 우리 지역의 전통을 보전하며 문화유산을 전승·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41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삭제) <2015.3.27.>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할 필요가 있음 무형문화재에 대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전됨. 「문화재보호법」이 전면개정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음.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한민족의 전통생활 방식에 녹아있는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무형문화재 범위의 협소화와 무형문화재 원형유지 원칙으로 인한 창조적 계승·발전 저해, 전통공예품의 사회적 수요 저하로 인한 공예기술의 전승단절 위기 고조,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도제식 전수교육의 효용성 부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무형문화재 분야의 사회적 갈등 발생 등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법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어 「문화재 보호법」을2015.3.27. 일부개정하여

	인용조문인 제41조는 삭제하고, 2015.3.27.「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조례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에 묻혀있는 우수기·예능보유자 및 단체를 발굴하여 A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로 육성하여 우리 지역의 전통을 보전하며 문화유산을 전승·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6) A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제명	「A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항	제7조 제2호
조례내용	제7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법령에 맞게 시장이 승인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은 '다른 자'가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만 가능하나, 조례에서는 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조례개정(안) 제7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다른 자'(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17) A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제명	「A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항	제10조 제2항 제1호
조례내용	제10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②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상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용어 수정 : 전염병→감염병
개선방안 (정비방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염병이라는 용어는 감염병으로 명칭이 변경됨 □ 조례개정(안) 제10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②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18) A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조례제명	「A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조항	제6조
조례내용	제6조 (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
개선방안 (정비방안)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조례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시장에게 일정사항을 보고 하도록 하는 채권자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조례개정(안)** 제6조(보고) (삭제)

19) A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A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4조 제1항
조례내용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복지위원) ②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는 부분 삭제
개선방안 (정비방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는 복지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데, 조례에서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위임범위 일탈임. 또한, 보궐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음. □ 조례개정(안)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u>3년으로 한다</u>

20) A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제명	「A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조항	제2조 제3항
조례내용	제2조 (구성) ③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무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상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③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u>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u>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위원구성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수정(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도 위원이 될 수 있으나, 조례에서는 이를 배제한 나머지 내용만 반영하여 위원 구성 조항을 정하고 있어 상위법령과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2조 (구성) ③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무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1) A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제명	「A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항	제12조제2항
조례내용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을 반환할 사람이 그 기한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법령에서 위로금 미반환시 그 환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했다거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다만, 위로금이 보조금이라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12조 ② 삭제 검토**

22) A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A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13조 제5항
조례내용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⑤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의 투자나 재투자 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투자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기부채납을 강제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3호), 기부자가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 곤란, 불필요 및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도록 요건을 정하고 있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
개선방안 (정비방안)	기부채납은 기부하는 자의 기부의사와 기부받는 자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임에도 이 조례에서는 기부받는 자가 오히려 기부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이며, 이는 법령의 근거 없는 의무부과에 해당할 수 있음 □ 조례개정(안)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⑤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의 투자나 재투자 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투자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부 **채납할 수 있다**

23) A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A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항	제10조 제1항
조례내용	제10조(소음저감 개선명령 등) ① 시장은 사업자가 제8조 각 항을 위반하였거나, 제9조 각 호 어느 하나의 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소음발생 장비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그 소음정도가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해당 조문 삭제 검토
개선방안 (정비방안)	조례 제9조의 지도단속은 단순 사실행위로서 행정지도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방음시설 설치 등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장비사용 중지명령 등은 「소음·진동관리법」 제15조(개선명령), 제16조(조업정지명령) 등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임 □ 조례개정(안) 제10조(소음저감 개선명령 등) ① 시장은 사업자가 제8조 각 항을 위반하였거나, 제9조 각 호 어느 하나의 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소음발생 장비사용을 **중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그 소음정도가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소음·진동관리법」 제15조(개선명령), 제16조(조업정지명령) 등의 요건에 따라 요청 할 수 있다**

24) A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A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항	제10조 제2항
조례내용	제10조(소음저감 개선명령 등) ② 시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소음발생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해당 조문 삭제 검토
개선방안 (정비방안)	조례 제10조에서 사용금지 도는 공사중지를 하는 등 실효성 확보에 대한 부분이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 조례개정(안)** 제10조(소음저감 개선명령 등) ② 시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15조(개선명령), 제16조(조업정지명령) 등의 요건에 따라** 당해 소음발생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25) A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3)

조례제명	「A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조항	제11조 제2항
조례내용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② 시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진동규제법」 등에 의한 보고 검사의 면제,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자금융자,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상위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소음・진동규제법」이 「소음・진동관리법」으로 개정되었으며, 보고 검사의 면제와 관련된 내용 삭제해야 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2009.6.9. 개정되면서 소음・진동이 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규정을 정리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하였으나, 조례에서는 이러한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또한 보고 검사의 면제 등은 「소음·진동관리법」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협약으로서 보고. 검사를 면제할 수는 없을 것임 (「소음·진동관리법」에서도 조례로 보고 또는 검사 면제 사유를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함) □ 조례개정(안)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② 시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진동규제법」 등에 의한 <u>보고 검사의 면제,(삭제)</u>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자금융자,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u>우선하여 (삭제)</u>할 수 있다.

26) A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조례제명	「A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조항	제1조
조례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A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심의 및 설계적격심의로 부실설계·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A시설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u>제6조 (기술자문위원회</u>)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

	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로 수정하고, 설계자문위원회의 명칭도 기술자문위원회로 수정
개선방안 (정비방안)	「건설기술관리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제명은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되고, 설계자문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되었으므로, 개정법률에 맞춰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이 조례의 제명도 「A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조례개정(안) 「A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A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심의 및 설계적격심의로 부실설계·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A시설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7) A시 소비자 기본조례

조례제명	「A시 소비자 기본조례」
조항	제14조 제3항
조례내용	제14조(위해물품의 제공방지) ③ 사업자는 위해물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표하고 그에 따른 해당 상품의 회수, 제조·판매 등의 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해당 조항 삭제 검토

개선방안 (정비방안)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의 위임 없이 사업자에게 위해물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표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반할 소지가 있음 □ 조례개정(안) 제14조 삭제

28) A시 수도급수 조례 (1)

조례제명	「A시 수도급수 조례」
조항	제25조 제2항
조례내용	제25조(소비자피해조정) ②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상위법령	「소비자기본법」 제31조(자율적 분쟁조정) ①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는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율적 분쟁조정(紛爭調停)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紛爭調停機構)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에서 관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설립) ①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을 설립한다. ②한국소비자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한국소비자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정관) 한국소비자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안전센터에 관한 사항 7.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자율적 분쟁조정) ①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합의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소비자와 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협의체(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협의체를 말하며, 이하 "소비자단체협의체"라 한다)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합의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소비자단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를 대리하여 소비자단체협의체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의 반영이 필요하며, 종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에서 담당함, 또한 개정된 법률에서는 '자율적 분쟁조정'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는바, 조례에서도 자율적 분쟁조정에 대한 부분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25조(소비자피해조정) ②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9) A시 수도급수 조례 (2)

조례제명	「A시 수도급수 조례」
조항	제54조 제3항
조례내용	제54조(급수설비의 철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급수설비는 불법으로 설치하였더라도 개인의 사유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법령의 근거없이 시에 귀속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54조 제3항 삭제 검토

30) A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A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조항	제12조 제3항
조례내용	제12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③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 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수도법」 제20조 제20조(수도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삭제 검토
개선방안 (정비방안)	「수도법」 제20조에 따른 수도시설의 변조 또는 손괴에 따른 벌칙 적용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로서 주민의 시설물에 대해 강제 철거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 조례개정(안) 제12조 제3항 삭제 검토

31) A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A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조항	제12조 제4항
조례내용	제12조(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④시장은 강제 철거 및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의 강제 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
상위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할 것이므로 책임이 관리자나 설치자에 있다고 일괄적으로 규정할 수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12조 제4항 삭제 검토

32) A시 시세 조례

조례제명	「A시 시세 조례」
조항	제6조
조례내용	제6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지방세법」 제59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세법」 제59조에서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서는 법 제59조에 따라 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세법」 제59조에서는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보존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지도 않았고, 이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한 바도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 조례개정(안)** 제6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5년간(삭제)** 보존하여야 한다.

33) A시 시장사용조례

조례제명	「A시 시장사용조례」
조항	제7조
조례내용	제7조 (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 기타 시설물을 훼손 혹은 파괴한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배상액은 시장이 이를 정한다.
상위법령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 기타 시설물을 훼손 혹은 파괴한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배상액은 시장이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시장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배상액 또한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민법」 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를 조례로 규정한 것에 해당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7조 (손해배상책임) ① (삭제)

34) A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A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항	제5조
조례내용	제5조(위해방지)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시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상위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액화석유가스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허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그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하도록 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그 외의 요건을 들어 허가를 제한할 수 없을 것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5조 삭제 검토

35) A시 어항 관리 조례 (1)

조례제명	「A시 어항 관리 조례」
조항	제9조
조례내용	제9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이용자단체등”은 점·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손괴·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손괴·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손괴변형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손괴자 2. 손괴·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손괴·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상위법령	「어촌어항법」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⑦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어항의 기능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의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어촌.어항법」 제38조제7항에 따르면 어항시설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용자단체등에게 어항시설사용허가를 발령하면서 시설의 손괴 등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능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상위법령에서는 이용자단체등에게 어항시설의 손괴변형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의 근거나 위임 없이 이용자단체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삭제하거나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다음과 같이 개정 검토 □ 조례개정(안) 제9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고지의무) 시장은 어항시설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 "이용자단체등"이 점·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손괴·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손괴·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손괴변형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고지한다는 내용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신고자 및 손괴자 2. 손괴·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손괴·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36) A시 어항 관리 조례 (2)

조례제명	「A시 어항 관리 조례」
조항	제12조제1항
조례내용	제12조(어항시설의 재난예방) ① “이용자단체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점·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어촌어항법」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⑦ 어항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 어항의 기능보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에서는 이용자단체등에게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어항시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의 근거나 위임 없이 이용자단체 등에게 피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이용자단체 등에게 피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의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어촌・어항법」 제38조제7항에 따르면 어항시설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용자단체등에게 어항시설사용허가를 발령하면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 □ 조례개정(안) 제12조(어항시설의 재난예방조치 의무) ① “시장은 어항시설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 “이용자단체등”이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점·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7) A시 어항 관리 조례 (3)

조례제명	「A시 어항 관리 조례 」
조항	제29조
조례내용	제29조(가산금의 징수) 어항시설을 점·사용한 자가 시장이 발부한 납입고지서에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상위법령	「어촌어항법」 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가산금을 법률상 근거 없이 조례로 부과할 수 없고, 가산금 관련 지방세법 제27조는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임. 또한, 상위법인 「어촌·어항법」에는 사용료 미납 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조례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어촌·어항법」 제42조 및 제43조에서 사용료, 점용료 또는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한 것은 체납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준용 대상에

	「지방세기본법」 상 가산금 징수 등과 같이 실체적인 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음(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372 판결례 취지,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12-0271) □ 조례개정(안) 제29조 삭제

38) A시 어항 관리 조례 (4)

조례제명	「A시 어항 관리 조례」
조항	제31조제2항
조례내용	제31조(변상금의 징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입고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상위법령	「어촌어항법」 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가산금을 법률상 근거 없이 조례로 부과할 수 없고, 또한, 상위법인

검토의견	「어촌·어항법」에는 변상금 미납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조례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31조제2항 삭제

39) A시 어항 관리 조례 (5)

조례제명	「A시 어항 관리 조례」
조항	제38조
조례내용	제38조(출입검사)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조례에서 정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점·사용 허가한 어항시설 및 관련 사업장을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이른바 출입검사·질문 규정은 상대방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그 근거규정은 '법률'에 두어야 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해당 조문 삭제하거나 다른 표현으로 수정 □ 조례개정(안) 1안 : 제38조(출입검사) (삭제) 2안 : 제38조(출입검사<u>의 의무</u>) “<u>시장은 어항시설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u> 관계 공무원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점·사용 허가한 어항시설 및 관련 사업장을 출입하여 점검하는 것에 협<u>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u>

40) A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1)

조례제명	「A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조항	제8조 제2항 제3호
조례내용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상위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례에서는 주민협의회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위원장을 시행령에 따라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위원들(조례에 따르면 위원에는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한 자 이외의 자도 포함됨)이 호선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여 자율관리협정 체결자들이 주민협의회 대표를 선임할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을 선출할 때에는 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는 것으로 개정 □ 조례개정(안)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한다.

41) A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2)

조례제명	「A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조항	제22조제7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교육대상자가 각 호(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과태료)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는 법 제20조제2항에서는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과태료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에서는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후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에서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과태료 면제사유를 정할 수는 없을 것임 □ 조례개정(안) 제22조제7항 삭제

42) A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A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11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 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보조금,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및 후원금을 센터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⑦ 수탁자는 센터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사무의 지연·불공정한 처리 및 비용 등을 부당징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수탁자는 업무처리 보고서 등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등은 위탁계약으로 정할 것이며 수탁자도 주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로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11조 삭제 검토

43) A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제명	「A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항	제9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름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은 의무부과와 강제처분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러한 규정을 둘 수 있음. * 참고로, '지방보조금'인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나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부조리신고'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 없이' 지급되는 '지방보조금'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환수방법과 관련된 부분 삭제 검토 □ 조례개정(안) 제9조 삭제

44) A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1)

조례제명	「A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조항	제3조제7호라목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에 대해서 규정함 [상위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제48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은 「환경영향 평가법」으로 변경되었으며, 종래 제33조의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사항은 신법에서 폐지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3조제7호라목 삭제

45) A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2)

조례제명	「A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조항	제18조제2호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협의기준 초과부담금(「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3조)을 규정하면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협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규정함 [상위법령]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은 「환경영향 평가법」으

	로 변경되었고, **「환경영향 평가법」에서는 초과부담금 규정이 없음**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은 「환경영향 평가법」으로 변경되었으며, 종래 제33조의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사항은 신법에서 폐지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18조제2호 삭제

46) A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제명	「A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조항	제5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함 [상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③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그런데, 조례에서 대강이라도 정하지 않고, 시장이 정하도록 포괄 위임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어긋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환기간과 이율의 범위를 정함

47) A시 장애인 복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A시 장애인 복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항	제3조제3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원은 장애인 관련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한다고 규정함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3. 장애인 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상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u>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u>**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조례의 제1호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제4호 "자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은 삭제검토 필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 제2항 제3호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반영될 필요 그리고 '의장'이 아니라 '의회'추천하는 의원이라고 해야 보다 타당하지만 상위법령에서 의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1호 삭제 검토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위원은 장애인 관련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고 규정함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48) A시 장애인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제명	「A시 장애인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조항	제10조 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갱신에 의하여 계속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 법령에 맞게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3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조례개정(안) 제10조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49) A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

조례제명	「A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
조항	제13조 제5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A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상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등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하므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등록 제한 및 조건의 세부 사항"인데, 이 조례 제13조제5항에서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 (더불어, 등록제한은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으면 가능한 것이지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은 아님)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13조 제5항 삭제

50) A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A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항	제9조에서 제12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이 조례에서는시장이 판매소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서, 판매대행과 관련하여 판매대행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 그 대행의 취소사유, 대행 취소시 일정기간 대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조치 등을 규정함 [상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8조제2항제12호에 따르면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서 종량제봉투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시장이 판매소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음 상위법령에서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 자

	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을 뿐, 판매대행과 관련하여 판매대행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 그 대행의 취소사유, 대행 취소시 일정기간 대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이 조례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게 종량제 봉투 판매에 관하여 "대행"으로 수정하고, 그 밖에 의무사항, 지정취소, 지정취소 후 제재에 관한 규정은 삭제 검토

51) A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A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17조제3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읍·면·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여성 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성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례에 개정하는 것이 타당

52) A시 주차장 조례 (1)

조례제명	「A시 주차장 조례」
조항	제5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2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1. 제10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 초과시간에 대한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추가하여 부과한다. 3.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4. 법 제8조의2 규정에 위반한 경우 [상위법령] 「주차장법」 제9조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u>을 받을 수 있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주차장법」 제9조제3항에 따르면,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음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서는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

	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조례제5조제1항제2호는 「주차장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가산금 부과사유이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제3호는 제4호와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주차장법」 제9조제3항의 가산금 부과사유에 맞게 조례 수정 □ 조례개정(안)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 초과시간에 대한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추가하여 부과한다.(삭제)**

53) A시 주차장 조례 (2)

조례제명	「A시 주차장 조례」
조항	제6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상위법령]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주차장법에 따른 3가지 주차장(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중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근거)가 법률에 규정된 것은 노외주차장(의 관리자) 뿐이고,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용을 거절할 수 있을 뿐임(「주차장법」 제17조제2항). 조례 제5조는 법률상 근거나 위임 없이 주차장 거절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노외주차장 외의 주차장에 대하여도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노외주차장관리자만 주차거부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고, 법률에 없는 거부사유를 규정한 각 호의 사유는 삭제 □ 조례개정(안) 제6조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54) A시 주차장 조례 (3)

조례제명	「A시 주차장 조례 」
조항	제8조제3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될 수 없음 1.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중도 해약된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 2. 주차장 운영 중 중도 포기한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 3.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주차장 수탁자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소극적 자격인 결격사유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명시적인 법률의 근거가 필요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8조제3항 삭제검토

55) A시 주차장 조례 (4)

조례제명	「A시 주차장 조례」
조항	제22조제4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 [상위법령]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로 가산금을 신설할 수 없음. 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그 절차를 따른 다는 의미이지 가산금과 같은 실체적 규정까지 따르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22조제4항 □ 조례개정(안)

56) A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

조례제명	「A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조항	제7조제1항 제2호, 6호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 조례 제7

	조제1항제2, 6호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조례 제2, 6호 삭제 □ 조례개정(안)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삭제

57) A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조례제명	「A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조항	제21조제4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음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①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수 있다. 다만,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르면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수 있고,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이 조례 제26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미제출"은 동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에 반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21조제4항 삭제

58) A시 하수도 사용 조례 (3)

조례제명	「A시 하수도 사용 조례 」
조항	제3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상위법령]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 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설치 및 공공하수도의 사용만으로 신고의무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지는 아니함)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하수도법」 제27조에서는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배수설비의 설치 및 공공하수도의 사용만으로 신고의무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법령에 없는 의무사항을 신설하였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3조 삭제 검토

59) A시 하수도 사용 조례 (4)

조례제명	「A시 하수도 사용 조례」
조항	제6조 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함 [상위법령] 「하수도법」 제24조(점용허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

	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인데, 조례에서는 법령의 위임 없이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6조 제1항 삭제

60) A시 하수도 사용 조례 (5)

조례제명	「A시 하수도 사용 조례」
조항	제29조 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징수함을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금전납부 의무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이 가산금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소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29조 제1항 삭제

61) A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A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항	제11조 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	[조례의 내용]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0조의 보고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지원금을

령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음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등의 경우에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상 보조금 반환 사유와 다른 사유를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11조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0조의 보고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삭제)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62) A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A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조항	제9조 제3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국장,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함 1. 교육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업무 담당과장

	2. A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3. 학생생활 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4.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5.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6.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7.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8.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한 사람 9. 그 밖에 시장이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상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시·군·구는 과장을 말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2. 해당 시·군·구의회 의원 3.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검사·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르

검토의견	면, 협의회 위원은 시 장이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당연직 위원과 시장이 단독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시장이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개정함 □ 조례개정(안) 제9조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국장,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교육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업무 담당과장 0. (신설) 해당 시·군·구의회 의원 2. A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3. 학생생활 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0. (신설) 판사·검사·변호사 0. (신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5. (삭제)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6. (삭제)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7.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63) A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A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조항	제9조 제4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상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르면,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없는데, 이 조례에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9조 제4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삭제)**

64) A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A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7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상위법령]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데, 이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수탁자에게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검토(보험가입이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의무(보험가

	입 등)를 위탁 계약서 또는 협약서에 기재하는 것은 가능)

65) A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A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6조 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도 관련부서에 제출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정관) ② 출자·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서는 정관 기재사항 변경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법률의 근거 없이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개선방안(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시장과 협의를 거쳐** 관련부서에 제출한다

66) A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조례제명	「A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조항	제3조 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5년마다 가로수 조성·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②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림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상위법령의 내용과 동일하게 계획의 수립·시행 기간을 변경 □ 조례개정(안) 시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10년마다 가로수 조성·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67) A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제명	「A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항	전체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이 조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신고 또는 신청을 게을리한 때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제121조 및 제12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읍·면의 장(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신고의무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에 따르면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읍·면의 장이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2]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주민혼란 및 불편초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대해서도 조례도 이를 준용하여서 규정함이 바람직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조례 폐지 검토

68) A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A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항	제3조, 제5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3조에서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제5조에서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함 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상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2015. 12. 31부터 개정 시행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는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에 대해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법률의 규정에 맞추어 제3조, 제5조에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에 대한 내용을 추가

69) A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A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2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원장은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7.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2조제2항 위원장은 <u>A시 재무관(또는 분임재무관)이 되고</u>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70) A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례제명	「A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5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

	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대강의 사항도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에 위배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공유재산 대장의 서식에 대한 대강의 사항은 조례에서 정해야 함

2. B 시

1) B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B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조항	제20조 제1항
조례내용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상위법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고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언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인지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고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맞게 개정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고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일부터 20일 이내**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B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조례제명	「B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조항	전체
조례내용	조례 제명을 "B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상위법령	「수도법」 제3조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간이상수도는 더 이상 법상 용어가 아님,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같은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현행 법령에 따라 개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B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

3) B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조례제명	「B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조항	제6조 제1항
조례내용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법 제29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제25조(원수의 수질검사) ①법 제29조제1항, 제53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수의 수질을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을 검사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수질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① 「수도법」 제29조제1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1. 조례 제6조제1항에서 상위 법령으로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시장이 원수 및 정수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이었으나, 환경부령인 상수원관리규칙에는 제23조와 제24조가 법 제19조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2. 또한 동 규칙 제24조제2항에서는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을 검사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수질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법 제29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u>제23조,</u>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u>5년간</u> 보존하여야 한다.

4) B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B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조항	제2조 4호
조례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상위법령	「도로법」 제10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도로법」 제10조에서 도로의 종류는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

	닌" 부분을 "「도로법」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지방도 및 시도가 아닌" 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 조례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 · 시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B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B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조항	제3조 및 제5조
조례내용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①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①항에서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2014.12.30에 개정하였으나(시행일은 2015.12.31) 조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법률의 규정에 맞추어 제3조 및 제5조를 개정함 □ 조례개정(안)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6) B시 건축조례

조례제명	「B시 건축조례」
조항	제3조 제2항
조례내용	제3조(적용의 완화)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B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위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② 영 제6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구조 안전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재심의) 신청서에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제2항에서는 심의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3조(적용의 완화)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B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B시 건축조례

조례제명	「B시 건축조례」
조항	제6조 제2항
조례내용	제6조(구성 등)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하로 한다.

상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5항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5항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례로 이와 다르게 규정하면 법령에서 시장에게 부여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명권한 또는 위촉권한을 침해할 소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 검토

8) B시 건축조례

조례제명	「B시 건축조례」
조항	제22조 제3항
조례내용	제22조(건축지도원) ③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 및 보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령	「건축법 시행령」 재24조제4항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보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건축조례'로 정한다</u>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건축법 시행령」 재24조제4항에 따르면,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보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 이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모두 규칙으로 위임한바,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보수 기준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하거나, 또는 그 대강을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규정 □ 조례개정(안) 제22조(건축지도원) ③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 및 보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건축조례'로 정한다</u>

9) B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조례제명	「B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조항	제2조 제2호
조례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리주체”이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나. 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법 제5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상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해당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관리주체"의 범위를 좁혀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에서 정의한 사항의 범위를 좁혀서 조례에서 정의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음. 또한 인용 근거조항이 개정되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조례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10) B시 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1)

조례제명	「B시 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조항	제3조 제1항
조례내용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B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B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5. B시 소속 공무원
상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해당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

	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조례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위원은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과 내용을 달리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B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B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해당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11) B시 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2)

조례제명	「B시 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조항	제3조 제3항
조례내용	제3조(구성 및 임기) ③ 위원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의 위원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상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 의하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일부 위원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축소시킬 수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3조(구성 및 임기)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2) B시 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3)

조례제명	「B시 공동주택등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조항	제8조 제2항 제1호
조례내용	제8조(분쟁의 조정신청)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동의 의사를 명시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상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①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구 「주택법」 제52조제1항에서는 (현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

	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에서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일정한 제한 또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한바도 없는데, 이 조례에서는 "**신청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동의 의사를 명시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 분쟁조정 신청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반할 소지가 있**음(**법제처 의견제시 15-0154 참고)**
개선방안 (정비방안)	신청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동의 의사를 명시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얻도록 하는 조항 삭제 **□ 조례개정(안)** 제8조(분쟁의 조정신청)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13) B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례제명	「B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8조 제2항
조례내용	제8조(실태조사)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轉貸)나 권리처분 여부 4. 허가나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③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영 제49조제3항에서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다음 각 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와 상이한 측면이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상위법령의 재기재에 해당하므로 삭제하거나,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규정 □ 조례개정(안) 제8조(실태조사) ② <u>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u> <u>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u> <u>2. 주위 환경</u> <u>3. 이용 현황</u> <u>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u>

14) B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B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항	제15조 제2항
조례내용	제15조(환수조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수당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내에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u>제22조(조례)</u>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수당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는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4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것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수정 □ 조례개정(안) 제15조(환수조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수당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내에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u>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u>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5) B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조례제명	「B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조항	제3조 제1항
조례내용	제3조(과태료)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u>1.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u> <u>2.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u> <u>3.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u> <u>4.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u>
상위법령	「도로법」 제117조제2항 도로 무단점유 관련 과태료는 다음의 경우 부과된다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인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도로 무단점유 관련 과태료는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외에는 없는바, 그 외의 행위를 대상으로 조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게 되면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u>「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 있음</u>

	(의견 제시 13-0331)
개선방안 (정비방안)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규정 □ 조례개정(안) 제3조(과태료)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16) B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제명	「B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항	제2조 제1조
조례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와 제8조에서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부속물, 공작물 등 모두를 말한다.
상위법령	「도로법」 제2조제1호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조례의 근거 법률인 「도로법」 제2조제1호 에서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용어정의가 조례에도 당연히 적용되므로 상위 법률의 용어정의와 다른 용어정의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와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17) B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제명	「B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항	제5조
조례내용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42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인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② <삭제 2011.9.5.> 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도로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다.
상위법령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시설의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6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을 필요로 하는 자 등이 그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와 협의하여 직접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③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68조제1호,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68조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나. 법 제6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다. 법 제68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68조제3호, 제4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4. 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도로법」에서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면에 대해서는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정해져 있는바, 상위법령과 달리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맞게 개정검토 □ 조례개정(안)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 <u>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u> 시<u>행령 제73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18) B시 도시계획 조례 (1)

조례제명	「B시 도시계획 조례」
조항	제12조
조례내용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u>제47조제3항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u>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법 제47조제3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대강의 사항도 정하지 않고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에 위배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대강의 내용이라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규칙

	등으로 위임해야 함

19) B시 도시계획 조례 (2)

조례제명	「B시 도시계획 조례」
조항	제25조 제1항
조례내용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공사를 한 자 2. 도시·군계획시설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한 자 3.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 4.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중략)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 제133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사유를 다음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도 취소사유를 법령과 동일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법 제136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도 청문을 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② **법 제133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해야한다.**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 B시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B시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항	제5조 제3항
조례내용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③ 빗물이용시설 설치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아님에도, 조례로 시장의 권장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는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신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주민에게 법률의 근거 없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시장의 권장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그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신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례규정을 삭제 □ 조례개정(안) 제5조 제3항 삭제

21) B시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B시 물의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항	제6조 제4항 및 제5항
조례내용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④ 중수도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중수도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규칙 제5조를 준용 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의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 또는 개발사업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아님에도, 조례로 시장의 권장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그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신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주민에게 법률의 근거 없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신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례규정을 삭제 **□ 조례개정(안)** 제6조 제4항 및 제5항

22) B시 물품관리조례 (1)

조례제명	「B시 물품관리조례」
조항	제17조 제4항 및 제5항
조례내용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중량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제2항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조례 제17조 제4항에서는 일정가격이상인 경우에 감정평가액을 참작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조례 제17조 제4항에서는 일정가격이상인 경우에 감정평가액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규정과 불일치함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인만이 아니라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가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는데, 조례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제2항 규정에 맞게 개정 필요 **□ 조례개정(안)**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⑤(삭제)**

23) B시 물품관리조례 (2)

조례제명	「B시 물품관리조례」
조항	제28조 제2항
조례내용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②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8조제3항 물품 취득 시 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8조제3항에서는 물품 취득 시 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하도록 규정하여, 검수자 지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조례에서 물품출납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②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단서삭제)**

24) B시 보육조례 (1)

조례제명	「B시 보육조례」
조항	제5조 제2항
조례내용	제5조 (구성)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 및 제3호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교사를 대표하는 자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보육시설의 장을 대표하는 자 5. 관계공무원
상위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을 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구성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법령의 내용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원칙적으로 구성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한 바는 없으므로 조례 로 규정할 내용은 아니라 할 것임.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 할 경우, 법령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기재할 필요가 있으므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맞게 위원 구성 및 구성비율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조례개정(안)** 제5조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25) B시 보육조례 (2)

조례제명	「B시 보육조례」
조항	제6조, 제13조 제1항
조례내용	제13조(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른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B시 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 삭제 <2011.8.4.>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법」이 2013. 6. 4. 일부개정되어, 그 명칭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한 반영이 필요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13조(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른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B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6) B시 보육조례 (3)

조례제명	「B시 보육조례」
조항	제6조
조례내용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상위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12.6.29.>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9.15.> 8. 삭제 <2012.6.29.>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과 동일하지 아니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게 기능을 수정하거나 삭제 (법령상 위원회의 기능을 조례에 재기재할 필요 없음)

27) B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조례제명	「B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조항	제15조
조례내용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2. B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안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상위법령	「지방공기업법」 **제27조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공기업법」 제27조 전단에서는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후단에서는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법적 근거 없이 이 조례 제15조에서는 수입금 마련지출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지방공기업법」 제27조에 맞게 수정 □ 조례개정(안)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8) B시 수도 급수조례

조례제명	「B시 수도 급수조례」

조 항	제26조 제2항
조 례 내 용	제26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상 위 법 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 제 유 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 제 점 및 검 토 의 견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나 수도법상 해당 내용 없음
개 선 방 안 (정 비 방 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29) B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 례 제 명	「B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 항	제2조 제3항
조 례 내 용	제2조(구성)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가족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B시의회에서 추천하는 B시의회 의원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6.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상 위 법 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조례 제2조 제2호,3호,4호,8호는 상위법령의 것과 일치하나,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각호와 다르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에 맞게 수정 □ 조례개정(안) 제2조(구성)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30) B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B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항	제4조

조례내용	제4조(위원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상위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연임에 대한 제한은 없는바, 이 조례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 삭제

31) B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B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조항	제3조
조례내용	제3조(피해보상)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밭작물 100㎡ 미만과 수도작 165㎡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시설채소, 화훼, 약용작물, 농작물시설, 묘지 및 인·축 피해 4.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5.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6.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및 지원받은 경우 7.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8. 피해발생 당시 B시 관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 세대주
상위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환경부 고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1조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위임을 받은환경부 고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1조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에서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지원 대상자를 축소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위임을 받은환경부 고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1조에 맞게 수정 또는 삭제

32) B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1)

조례제명	「B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조항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조례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 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 및 신고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다만,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시행령 제7조제1항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 대상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제출을 면제하도록 규정할 수 있지만, "신고" 대상은 조례로 제출서류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 없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례의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광고물은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으로서, 서류나 도서 일부의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는 이를 서류제출이 면제되는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33) B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2)

조례제명	「B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조항	제4조
조례내용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상위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즉, 신고만 하거나 신고도 없이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광고내용"에만 한정하는 것이고, 그 밖의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는 그 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그런데 이 조례 제4조제3호는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바, 굳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음. 더불어, 이 조례 제4조제3호를 규정하게 되면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광고내용을 변경은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왜냐하면 이 조례 제4조에서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신고하여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광고내용의 변경은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바, 그렇다면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삭제)

34) B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3)

조례제명	「B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조항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조례내용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와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시 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상위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례에서는 주민협의회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위원장을 시행령에 따라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위원들(조례에 따르면 위원에는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한 자 이외의 자도 포함됨)이 호선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여 자율관리협정 체결자들이 주민협의회 대표를 선임할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을 선출할 때에는 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는 것으로 개정 □ 조례개정(안)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한다.

35) B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1)

조례제명	「B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조항	제8조제2항
조례내용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②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위탁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②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 계약기간을 평가를 거쳐 연장할수 있다.

36) B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2)

조례제명	「B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조항	제8조제7항
조례내용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⑦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는 자원봉사활동을 등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는 자원봉사활동을 등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바, 조례에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⑦(삭제)

37) B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B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항	제11조제2항
조례내용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10일 이상 동일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대하여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되, 사용이 가능한자전거는 양심자전거로 활용 할 수 있다.
상위법령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방치와 통행방해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데, 조례에서는 통행방해와 무관하게 10일 이상 방치된 경우에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무단방치된 자전거의 처분에 관하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므로 삭제 검토 □ 조례개정(안) 제11조제2항 (삭제)

38) B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제명	「B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항	제12조제2항
조례내용	제12조(위탁의 해지) ②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B시에 귀속된다.
상위법령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함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B시에 소유권이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소유권 침해소지가 있어 보임. 조례로 권리의 침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수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소유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개정 검토

39) B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1)

조례제명	「B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항	제3조제1항
조례내용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상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례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정한 내용과 다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0) B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조례제명	「B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항	제3조제3항
조례내용	제3조(구성)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여성가족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상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은 다음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당연직 위원을 특정하여 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맞게 위원의 구성 규정을 수정 □ 조례개정(안) 제3조(구성)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41) B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조례제명	「B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조항	제6조제4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6조(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5년 이내로 수정 □ 조례개정(안) 제6조(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④ 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하고, 위탁 계약기간을 평가를 거쳐 연장할수 있다.

42) B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조례제명	「B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조항	제20조제4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20조(과징금 처분) ④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로부터 10일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상위법령]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로 가산금을 신설할 수 없음. 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그 절차를 따른 다는 의미이지 가산금과 같은 실체적 규정까지 따르

	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20조 ④ 삭제

43) B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B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3조제3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3조(구성)③ 당연직 위원은 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 균형참여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3. B시(이하 “시” 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상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⑤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5항에서는 이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⑤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개선방안 (정비방안)	삭제하거나「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5항 규정에 맞추어 개정함 □ 조례개정(안) 제3조(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44) B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B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3조제2항후단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3조(적용범위) ② 관할구역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B시 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위험도 평가실시 요청시에 의무적으로 이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함. 법에서는 평가의무자를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하고 있고, 조례로는 자문단 구성에 대한 사항만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두는 법률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후단 규정 삭제

45) B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조례제명	「B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조항	제19조제3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19조(위탁관리)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됨
개선방안	□ 조례개정(안)

(정비방안)	제19조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하고,** 위탁 계약기간을 **평가를 거쳐** 연장할수 있다.

46) B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제명	「B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조항	제11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11조(구매의무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지않을 수 있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상위법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호에서는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가 면제되는바,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규정한 것을 조례로 정한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11조제2항 삭제

47) B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B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조항	제18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18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위탁) ② 위탁관리·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음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맞도록 수정 □ 조례개정(안) 제18조(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위탁) ② 위탁관리·운영 기간은 5년이내로 하고, 위탁 계약기간을 평가를 거쳐 연장할수 있다.

48) B시 하수도 사용조례

조례제명	「B시 하수도 사용조례」
조항	제5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5조(점용허가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하면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위법령] 「하수도법」 제24조(점용허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인데, 조례에서는 법령의 위임 없이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5조제1항 삭제

49) B시 하수도 사용조례

조례제명	「B시 하수도 사용조례」
조항	제10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10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경우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및 그 밖에 상수도 급수가 아닌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경우 [상위법령] 「하수도법」 제27조에서는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배수설비의 설치 및 공공하수도의 사용만으로 신고의무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지는 아니함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하수도법」 제27조에서는 배수설비의 설치 및 공공하수도의 사용만으로 신고의무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법령에 없는 의무사항을 신설하였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10조제1항 삭제 검토

50) B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B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2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내로 한다.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영 제83조제1항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

	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위원 정수에 대해 영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길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수를 정해야 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위원 정수를 조례에 정확히 규정

51) B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B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7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7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상위법령] 지방공기업법」 제2조 H59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대한 특례이므로 법률에 정해야 할 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검사위원의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에 결산 검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7조제2항 삭제 검토

52) B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B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11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원의 해촉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의2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의2에서 규정한 해촉사유와 일치하지 아니함
개선방안(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의 재기재에 해당하므로 삭제하거나,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규정

53) B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B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12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종류를 정하고 있음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9.13.>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16.9.13.>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9호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가 빠져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영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규정하거나 또는 해당 조문을 삭제하거나, 영 제60조제1항제9호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 □ 조례개정(안) 제12조 <u>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u> <u>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u> <u>2. 배수로 설치공사</u> <u>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u> <u>4. 보안등(保安燈) 공사</u> <u>5. 보도블록 설치공사</u> <u>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u>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54) B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조례제명	「B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조항	제15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ㅂ.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배당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 취득적립금으로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상위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7조 이익금을 결손보전,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서는 이익금을 결손보전,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

	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삭제)**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배당납부금~~**(삭제)**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 취득적립금으로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삭제)** **3. (신설) 건설개량적립금** **4. (신설) 납부금** **5. (신설) 전출금**

55) B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1)

조례제명	「B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조항	제2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상위법령]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간이화장실"이 누락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 **"간이화장실"**을 말한다.

56) B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2)

조례제명	「B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조항	별지제2호서식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별지 제2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상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57) B시도시공원위원회 운영조례

조례제명	「B시도시공원위원회 운영조례」
조항	제2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원회의 기능을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심의로 규정함 [상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도시공원위원회) ①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법령의 규정과 조례의 규정이 다르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58) B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조례제명	「B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조항	제16조 제2호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ㅂ조례의 내용]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문화체육과장, B시박물관장, B문화원장을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향토문화와 전통문화에 조예가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 ③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박물관·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는 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박물관・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의 위촉권은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행사하여야 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위원을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미술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도록 함

59) B시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 (1)

조례제명	「B시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
조항	제7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탁관리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수 있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맞도록 위탁관리기간을 수정 □ 조례개정(안)

	위탁관리기간은 5년이내로 하고, 위탁 계약기간을 평가를 거쳐 연장할수 있다.

60) B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2)

조례제명	「B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조항	제14조 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관람권, 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사용자란 회관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이므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범위에서 독자적으로 회관을 사용,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바, 관람권의 발행 여부는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야지 시장이 지시할 사항은 아니고, 관람권에 대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검인 부분 삭제 검토 □ 조례개정(안) 제14조제2항 관람권, 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61) B시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3)

조례제명	「B시 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조항	제15조 제1호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회관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자로 "전염병 질환자"를 규정함. [상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전염병예방법」이 전부개정(2009. 12. 29) 되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전염병 질환자"를 "감염병 질환자"로 수정

62) B시보증채무관리조례

조례제명	「B시보증채무관리조례」
조항	제6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에 의하여 매년 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법률에서는 구청장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 일반 사인인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률에 근거없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반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 □ 조례개정(안) 제6조 삭제

63) B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조례제명	「B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조항	제3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구성·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는 국민안전처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최소 40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조례에서는 20인 이상으로 함으로써 법령과 다르게 규정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맞게 수정 □ 조례개정(안) 제3조 제1항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u>40명 이상 80명 이하</u>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64) B시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운영관리조례

조례제명	「B시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운영관리조례」
조항	제4조 제3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신청서 제출시 연장가능하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음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함
개선방안(정비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맞도록 수정 □ 조례개정(안) 제4조 제3항 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하고, 위탁 계약기간을 평가를 거쳐 연장할수 있다.

65) B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B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6조제2항제4호
조례내용	[조례의 내용]

및 상위법령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사항 중 하나로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 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을 규정함 [상위법령]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 및 제28조의2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 및 제28조의2는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규정으로서 주식백지신탁 대상은 공개대상자이므로 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에 해당하지 아니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

66) B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제명	「B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항	제18조 제1항제2호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기초생활보장계정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 중의 하나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정한 자활공동체를 규정함 [상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로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

	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31조는 '자활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개정 □ 조례개정(안) 제18조(융자대상) ① 기초생활보장계정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u>자활기업</u>

67) B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조례제명	「B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조항	제1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및 토지의 점용료와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등, 허가수수료 및 부당이득금(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위법령] 「소하천정비법」 제22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과 수수료의 감면 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소하천정비법」이 2010.3.31. 개정되어 "부담이득금"이란 용어가 "변상금"으로 변경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및 토지의 점용료와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 허가수수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8) B시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운영관리조례

조례제명	「B시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운영관리조례」
조항	제7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7조(위탁관리의 취소 등) ②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상위법령] 민법 제750조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사용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에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칙을 조례로 두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7조제2항 삭제

69) B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제명	「B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항	제6조 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	[조례의 내용]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

령	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도록 규정함 [상위법령] 「의료급여법」 제20조(급여비용의 대지급) ① 제10조에 따라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급여비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한정한다)은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대지급(代支給)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의료급여법」 제20조제1항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급여비용은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대지급(代支給)"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지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혼동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조례 상 용어를 법률의 용어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u>대지급금</u>을 구분 결정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 <u>대지급금</u> 상환의무자에게는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한다

70) B시지명위원회조례

조례제명	「B시지명위원회조례」
조항	제12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상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르면 지명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하도록 규정하는데, 조례에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바로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변경 검토 □ 조례개정(안)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C 시

1) C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조례제명	「C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조항	제2조 제3호
조례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배출시설”이란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 이상 시설로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과 규칙 제2조에 따른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상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u>본 조례의 모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u>에서는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정의규정에 대해 혼란이 야기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상위법령과 불일치여부 검토 필요 □ 조례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u>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u>

2) C시 건축 조례 (1)

조례제명	「C시 건축 조례」

조 항	제7조제1항
조 례 내 용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상 위 법 령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문 제 유 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 제 점 및 검 토 의 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3항에 따르면,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u>25명 이상 150명 이하</u>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동 위원회 위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동 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즉 상위법령에 따르면 지차단체장은 최대 150명의 위원으로 동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조례에서 위원의 상한을 상위법령보다 낮게 규정하여 결국 시장은 동 위원회 위원을 최대 40명으로만 구성할 수 밖에 없는바, 이는 법령에서 부여된 시장의 위원회 구성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임
개 선 방 안 (정 비 방 안)	□ 조례개정(안)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25명 이상 150명 이하</u>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C시 건축 조례 (2)

조 례 제 명	「C시 건축 조례」
조 항	제7조 제2항
조 례 내 용	제7조(구성) ②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상 위 법 령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

	나 위촉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5항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위원장을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반할 뿐 아니라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5항에 맞게 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 □ 조례개정(안) 제7조(구성)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C시 건축 조례 (3)

조례제명	「C시 건축 조례」
조항	제7조 제3항
조례내용	제7조(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소방, 도시계획, 도시설계, 교통, 환경, 에너지, 회화, 조경, 디자인,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상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④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4항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

	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건축, 토목, 소방, 도시계획, 도시설계, 교통, 환경, 에너지, 회화, 조경, 디자인,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위원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하거나,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라면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임. □ 조례개정(안)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C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C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2조
조례내용	제2조(위원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이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하)하고 있을 뿐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검사위원의 구체적인 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검사위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조례개정(안) 제2조(위원수 정수) 위원의 정수는 0인 으로 한다.

6) C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C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7조 제2항
조례내용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C시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대한 특례이므로 법률에 정해야 할 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검사위원의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에 결산 검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검토

7) C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조례제명	「C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조항	제16조 제2항
조례내용	제16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동주택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상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①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해당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위원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 맞게 수정 **□ 조례개정(안)** 제16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8) C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운영 조례 (1)

조례제명	「C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운영 조례」
조항	제13조
조례내용	제1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상위법령	「지방공기업법」 제27조(수입금 마련 지출)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

	고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27조에서는 수입금 마련 지출은 선지출 후 보고로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13조 삭제

9) C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운영 조례 (2)

조례제명	「C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운영 조례」
조항	제20조
조례내용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4조(회계의 총괄) ③ 제2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34조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관리자의 임명권한을 침해할 소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20조 삭제 검토

10) C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1)

조례제명	「C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25조 제1항
조례내용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

	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2.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의적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나 해당 조례에서는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상위법령에 맞게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 □ 조례개정(안)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11) C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조례제명	「C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62조 제2항
조례내용	제6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③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은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례에서는 면적과 관계 없이 먼저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함으로써 상위 법령에 위반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상위 법령에 맞게 신고면적이 다른 경우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단서로 규정하든지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이 조례에서는 삭제 검토 **□ 조례개정(안)** 삭제 검토

12) C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제명	「C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항	제2조
조례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법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상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ㅂ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의 범위에 "간이화장실"도 포함되나 이 조례에는 빠져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13) C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조례제명	「C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조항	제6조 제1호
조례내용	제6조(수급인의 책무) 수급인은 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 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민법상 계약체결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체결 방식 또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상대방에게 표준계약서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이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이상 조례에서 이러한 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6조 제1호 삭제 검토

14) C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C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5조 제1항
조례내용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상위법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위원회의 운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4항 및 시행령 제105조에 따르는데, 법 제107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3년이 아닌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킴. □ 조례개정(안)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u>2년으로 한다</u>

15) C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C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3조 제2항
조례내용	제3조(구성) ②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제1호부터 제5호까지)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예산담당관 2. 지역경제과장

	3. 건설과장 4. 도시재생과장 5. 건축과장 6. C경찰서 경비교통과장 7. C소방서 방호구조과장 8. C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 의원 1명 9.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상위법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 조례개정(안)** 제3조(구성) ②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제1호부터 제5호까지)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건축과장

	6. C경찰서 경비교통과장 7. C소방서 방호구조과장 8. C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 의원 1명 9.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6) C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C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6조 제1항 제1호
조례내용	제6조(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상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염병이라는 용어는 감염병으로 명칭이 변경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6조(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u>감염병</u>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17) C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

조례제명	「C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
조항	제13조제3항
조례내용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시장은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건물번호판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C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징수는 C시 수입증지로 한다.
상위법령	도로명주소 법률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법률의 근거 없이 광고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20조제3항을 삭제하거나 행정 실제에서 시안 작성 후 시장과 협의 확정할 정책적 필요가 있으면 이를 의무화 하기 보다는 권고하는 방향으로 개정 검토

18) C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제명	「C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항	제4조 및 별표 2
조례내용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
상위법령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이 개정되어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고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을 초과한 금액을 점용료로 정하고

	있는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수정하고 별표 2는 삭제하여야 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제4조 수정 검토, 별표 2 삭제 □ 조례개정(안)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19) C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C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11조 제3항
조례내용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 또는 증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C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3호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제7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공

	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3호). 그러나 기부자가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 곤란, 불필요 및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도록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 이처럼 기부채납은 기부하는 자의 기부의사와 기부받는 자의 의사의 합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본 조례는 기부채납을 의무화하고 있어 기부받는 자가 기부채납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하고 있음. 이는 법령의 근거 없는 의무부과에 해당할 수 있음. 사회복지사업법령에서는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부채납을 임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는 수탁자의 시설 신증축의 경우 기부채납을 의무화 하고 있어서 바람직하지 아니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수탁자가 사회복지기관 내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되 기부채납을 강제하지 않도록 기부채납을 임의규정화 함. **□ 조례개정(안)** 제11조 제3항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 또는 증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C시에 **기부 채납 할 수 있다.**

20) C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C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3조 제4항
조례내용	제3조 제4항 당연직 위원은 건설도시국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상위법령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 법령인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제1호에서는 위원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당연직 위원을 특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시장의 위원회 구성권한을 침범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에서 당연직 위원을 특정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할 수 있도록 당연직 위원의 지명 범위를 한정하는 조항의 수정이 필요함 □ 조례개정(안) 제3조 제4항 당연직 위원은 <u>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u>

21) C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C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14조
조례내용	제14조(간사) 제1항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C시 산림재해 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이 된다.
상위법령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6항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 법령인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6항에서는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로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정하는 것은 시장의 임명권한을 침해할 소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14조(간사) 제1항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6항의 규정

	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22) C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조례제명	「C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
조항	규정없음
조례내용	규정없음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음. 해당 조례 제4조에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규정함 **□ 조례개정(안)** **제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C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3) C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제명	「C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 항	제6조
조 례 내 용	제6조 시장은 새마을지도자의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 등 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상 위 법 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 제 유 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 제 점 및 검 토 의 견	법률의 위임이 없이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개 선 방 안 (정 비 방 안)	□ 조례개정(안) 제6조 삭제 검토

24) C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 례 제 명	「C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 항	제4조
조 례 내 용	제4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심의·의결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C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8.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상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시·군·구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호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는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4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심의·의결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C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8.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신설)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5) C시수도사업설치조례 (1)

조례제명	「C시수도사업설치조례」
조항	제4조제2항

조례내용	제4조 제2항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보한다
상위법령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에서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바, 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위반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4조제2항 삭제 검토

26) C시수도사업설치조례 (2)

조례제명	「C시수도사업설치조례」
조항	제14조
조례내용	제14조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상위법령	「지방공기업법」 제27조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공기업법」 제27조 전단에서는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동조 후단에서는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법적 근거 없이 수입금 마련지출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14조 삭제 검토

27) C시수도사업설치조례 (3)

조례제명	「C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3조 제1항, 제2항
조례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상위법령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수돗물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에서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수돗물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부위원장을 구성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3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u>부위원장</u>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8) C시수도사업설치조례 (4)

조례제명	「C시수도사업설치조례」
조항	제3조 제3항
조례내용	위원은 수돗물관련 수질전문가·소비자·시의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규정함

상위법령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항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항에서는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규정된 내용 또한 상위법령과 다르게 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항의 삭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9) C시수산물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조례제명	「C시수산물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조항	제14조 제1항
조례내용	제14조 ① 장은 유통센터의 사용자에게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법률의 근거가 없음 위탁조건으로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조례로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을 것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14조 제1항 삭제

30) C시 시민대상 조례

조례제명	「C시 시민대상 조례」
조항	별지 서식 1
조례내용	C시민대상 추천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상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법적 근거를 확인하여 근거가 없음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31) C시 시세 기본 조례 (1)

조례제명	「C시 시세 기본 조례」
조항	제17조
조례내용	제17조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변경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시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2.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제2호에서는 "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와는 달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함
개선방안	법에 있는 내용이므로 조례에 따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

(정비방안)	거나, 존치한다면 "압류한다"로 수정 □ 조례개정(안) 제17조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변경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시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u>압류한다.</u>

32) C시 시세 조례 (2)

조례제명	「C시 시세 조례 」
조항	제16조
조례내용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상위법령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는 84조에서는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는 84조에서는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는 재량을 준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조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도 않은데,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반드시 한꺼번에 징수하도록 의무규정을 둔 것은 상위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한 것은 재량권 박탈이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과 같이 재량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조례개정(안)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u>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u>

33) C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제명	「C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항	제3조 제3호
조례내용	제3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상위법령	「식품위생법」 제89조제2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식품위생법」 제89조제2항제4호에서는 기금의 재원으로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으로 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에서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규정할 수는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3조 제3호 삭제 검토

34) C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조례제명	「C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조항	제7조 제7항
조례내용	제7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⑦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에게 등록 신청을 받아 자원봉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상위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는 자원봉사활동을 등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는 자원봉사활동을 등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바, 조례에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수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7조 제7항 삭제 검토

35) C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C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항	제5조 제2항
조례내용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활성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바, 이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던가, 해당 규정 삭제 검토

36) C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C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조항	제4조
조례내용	제4조(입법예고 대상) C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법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 또는 조례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에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경우
상위법령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입법예고는 법상 의무사항이고, 그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이와 달리 규정할 수는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4조(입법예고 대상) C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법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7) C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C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5조
조례내용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C시 도시계획 조례」로 따로 정한다
상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C시 도시계획 조례」 제10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서 상환기간은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 채권의 이율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여 조례로 이율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그런데, 조례에서 대강이라도 정하지 않고, 시장이 정하도록 포괄 위임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어긋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이율의 범위를 정함

38) C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C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항	제7조
조례내용	제7조(구성)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2분의 1 이상은 여성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하거나, 의료관련 전문가, 기업체 인사담당자 3. C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4. C시청 소속 공무원 중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보건소장을 포함한 장애인 및 의료 담당부서장 <개정 2015.12.15.> 5.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상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제1호),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제2호),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제3호) 중에서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의회 의장은 조직적, 의전적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고, 조례로써 이를 허용할 수도 없으므로, 의장 개인이 심의회 위원 일부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위법할 소지가 있음 **(대법원 1996.5.14.선고, 96추15판결 참조)**
개선방안 (정비방안)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제3호),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제5호)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에서 삭제 **□ 조례개정(안)** 제7조(구성)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

	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2분의 1 이상은 여성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하거나, 의료관련 전문가, 기업체 인사담당자 ~~3. C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삭제) 4. C시청 소속 공무원 중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보건소장을 포함한 장애인 및 의료 담당부서장 <개정 2015.12.15.> 5.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삭제)

39) C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C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항	제16조제4항
조례내용	제16조(위탁운영)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시에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과거 운영 능력을 평가하여 운영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재 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 할 수 있다.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하되,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하되,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바, 이 조례에서는 재위탁이 한차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16조(위탁운영)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시에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과거 운영 능력을 평가하여 운영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재 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 할 수 있다.

40) C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3)

조례제명	「C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항	서식1 장애아동복지증진지원(변경)신청서
조례내용	지원대상자의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상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

41) C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례제명	「C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항	제11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은 이 조례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제2호도 심의사항으로 규정함 □ 조례개정(안)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2) C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1)

조례제명	「C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조항	제2조제4호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인적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상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인적재난의 개념이 없음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인적재난의 개념이 없고, 사회재난의 개념만 있으므로 이를 법령에 맞게 수정할 필요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추어 수정

43) C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2)

조례제명	「C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조항	제2조제7호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기반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상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기반재난의 개념이 없음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2013. 8. 6. 개정되어 재난의 종류를 종전의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구분하여 정의하던 것을 자연재난(제3조제1호가목) 및 사회재난(제3조제1호나목: 종전의 나목 및 다목을 통합하여 규정)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조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근거하여 만들어 조례이므로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존중하여 같은 용어는 가능한 한 정의가 같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령 상호간의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법규정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법령의 집행과정에서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바, 원칙적으로 재난에 대한 정의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정의 및 분류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재난의 정의 및 구분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인용조문 정비

44) C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3)

조례제명	「C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조항	제2조제8호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기반재난”이란 법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상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염병이라는 용어는 감염병으로 명칭이 변경됨
개선방안(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기반재난”이란 법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기반체계의 마비와 <u>감염병</u>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45) C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4)

조례제명	「C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조항	제3조제4호,제4조제2항,제7조.제8조,제9조,제12조,제14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기반재난을 규정하고 있음

	[상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기반재난의 개념이 없음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2013. 8. 6. 개정으로 재난을 자연재난(제3조제1호가목) 및 사회재난(제3조제1호나목: 종전의 나목 및 다목을 통합하여 규정)으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으므로 재난에 대한 정의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정의 및 분류와 일치시키고 전 조문에서 이러한 정의와 분류를 따르는 것이 타당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기반재난을 사회재난으로 변경하거나 삭제

46) C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조례제명	「C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조항	제2조제4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2조(구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명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따른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같은 법 제32조의3제5항에서는 민간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상위법령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2조(구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47) C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C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명 및 제2조 제3항, 제3조 제1항, 제10조 제4호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상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정기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던 「도·소매업진흥법」은 1997. 7. 1. 폐지되었고, 현행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서는 "임시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조례 전체의 "정기시장"을 "임시시장"으로 수정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 구성

48) C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C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16조 제2항 후단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음 [상위법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한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두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 단서의 규정만 보면 마치 제한없이 갱신할 수 있는것 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
개선방안 (정비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맞추어 수정 □ 조례개정(안)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하고, 5년이내로 하고, 위탁 계약기간을 평가를 거쳐 연장할수 있다.

49) C시 종합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C시 종합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4조 후단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C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

	서는 상위 법령과 다르게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정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맞게 위탁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수정 □ 조례개정(안) C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되, 위탁기간은 <u>5년이내로 한</u>다.

50) C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C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18조제3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위원의 참여는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함 [상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바, 여성위원의 참여를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상위법률과 부합하지 아니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 조례개정(안) 제18조제3항 <u>주민자치위원회 여성위원의 참여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u>

51) C시 주민투표 조례

조례제명	「C시 주민투표 조례」
조항	제4조제4호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상위법령]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됨
개선방안(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4조제4호 삭제검토

52) C시 주차장 조례 (1)

조례제명	「C시 주차장 조례」
조항	제3조제2항제1호내지제4호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법 제8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 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기본 30분에 10분 초과시마다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미납하였을때에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4.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와 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상위법령] 「주차장법」 제8조의2제1항각호의 사유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주차장법」 제9조제3항 및 제8조의2제1항각호에 따라 조례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동 조례 제3조제2항 각호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8조의2제1항각호의 사유에 부합하지 아니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에 맞게 수정

53) C시 주차장 조례 (2)

조례제명	「C시 주차장 조례」
조항	제21조제3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상위법령]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로 가산금을 신설할 수 없음. 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그 절차를 따른 다는 의미이지 가산금과 같은 실체적 규정까지 따르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21조제3항 삭제

54) C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제명	「C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항	제14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상위법령] 「지방공기업법」 제27조(수입금 마련 지출)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공기업법」 제27조 전단에서는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 상위법령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였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

55) C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

조례제명	「C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항	제6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6조(위원회 설치)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상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바, 단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충분하지 아니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위촉직 위원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수정

56) C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조례제명	「C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항	제21조제4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C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는 그 외에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상위법령에 위배
개선방안 (정비방안)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 □ 조례개정(안)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57) C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3)

조례제명	「C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항	제29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시장이 의무적으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1.「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에서는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시장이 의무적으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상위법령이 인정한 시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음 2. 조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결정취소의 사유 외에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 교부결정이 취소된 사유도 보조금 교부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서, 상위법령보다 주민의 권리를 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1. 상위법령에 맞게 보조금 교부 제한 결정에 시장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2.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례의 보조금 교부 제한 사유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

58) C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C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4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단장은 단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함 [상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례 제4조제2항은 상위법령과 달리 단장의 선출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함
개선방안(정비방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맞게 단장은 단원이 호선하도록 규정 □ 조례개정(안) 단장은 <u>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한다</u>

59) C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C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조항	제23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1. 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상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이의신청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함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이의신청 거부에 관한 사항을 직접 정하거나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한바, 법적 근거 없이 조례에서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법률상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23조 삭제 검토

60) C시 지하수 조례 (1)

조례제명	「C시 지하수 조례」
조항	제14조 제1호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정부의 보조금을 규정함 [상위법령] 「지하수법」 제30조의2제2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하수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은 세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정부 보조금 삭제

61) C시 지하수 조례 (2)

조례제명	「C시 지하수 조례」
조항	제27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함 [상위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라야 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수정하거나 동 조항이 없어도 과태료의 부과·징수에는 당연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므로 해당 조항 삭제

62) C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C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5조 제3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청소년문화의집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재 위탁 할 수 있음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5년 이내로 한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두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의 규정만 보면 마치 제한없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것 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위탁의 형식이 수의계약이라면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하도록 하고, 일반입찰이라면 1회에 한하여서만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거나 해당 조항 삭제 검토

63) C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C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4조 제3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항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갱신할 때마다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야 갱신

	가능한데, 조례는 아무런 제한없이 필요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맞게 수정 □ 조례개정(안)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내로 하고, 위탁 계약기간을 평가를 거쳐 연장할수 있다.

64) C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C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13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상위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제3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바, 1)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니고, 2) 설령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할지라도 수탁받은 자는 보험가입의무가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보험가입대상에서 수탁자는 제외하여야 함

65) C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조례제명	「C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조항	제6조 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

	을 수립하고, 12월말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시보 등에 공표하여 함 [상위법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공공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표시기가 상위법령과 맞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66) C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C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2조 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자로 함 1. C시의회의장 2. 당해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3. 당해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4. 국가정보원관계자 5. C경찰서장 6. C해양경비안전센터장 <개정 2015.04.20.> 7. 홍성보훈지청장 <신설 2015.04.20.> 8. C교육지원청교육장 9. C소방서장 10. C시재향군인회장 11. 그 밖의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상위법령]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지역통합방위협의회는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관서의 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지방소방관서의 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조례는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와 그 내용이 상이하여 상위법령을 위배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 내용에 맞도록 수정함 □ **조례개정(안)**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자로 함 1. C시의회의장 2. 당해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3. 당해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4. 국가정보원관계자 5. C경찰서장 6. C해양경비안전센터장 <개정 2015.04.20.> 7. 홍성보훈지청장 <신설 2015.04.20.>

	8. C교육지원청교육장 9. C소방서장 10. C시재향군인회장 11.(신설)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12.(신설)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13.(신설) 지방병무관서의 장 14. 그 밖의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67) C시 하수도 사용 조례

조례제명	「C시 하수도 사용 조례」
조항	제10조 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상위법령] 하수도법 제24조(점용허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법령에 따라 사전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는 있으나 사후적으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법령의 위임없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개선방안(정비방안)	삭제 검토

68) C시 행복목욕탕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조례제명	「C시 행복목욕탕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조항	제17조 제3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위탁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는 조례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아보임.
개선방안(정비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맞게 수정 □ 조례개정(안)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하고, 위탁 계약기간을 평가를 거쳐 갱신할수 있다.

69) C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조례제명	「C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조항	제20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7.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전산정보"라는 용어를 상위법령에서 사용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7호 를 고려하여 변경

70) HS호 C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HS호 C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항	제4조 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C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 관련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수산 및 비수산분야 등 각종 주민대책위원회장의 연합하는 대표기구로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상위법령] 「HS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1항 피해를 입은 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HS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를 입은 주민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불구하고 조례에서는 신고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HS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례에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C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 관련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수산 및 비수산분야 등 각종 주민대책위원회장의 연합하는 대표기구로서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4. D 시

1) D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D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16조 제2항
조례내용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를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D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제명	「D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항	제15조
조례내용	제15조(훼손자 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징수 하는 것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할 수 없을 것인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하는 제15조 제2항 삭제 검토

3) D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D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조항	없음
조례내용	없음
상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

	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본문에 따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는 가축사육제한 구역 지정의 변경·해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후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이나 해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근거 조례가 없어 변경이나 해제를 할 수 없게 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가축사육 제한지역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규정 신설 검토

4) D시 건축 조례 (1)

조례제명	「D시 건축 조례」
조항	제5조
조례내용	제5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은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영, 법 시행규칙 또는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만 해당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할 수 있다.
상위법령	「건축법」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건축법」 제6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음. 즉 상위법령에서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로 일정한 경우 '건축허가'를 할 수 있을 뿐인데, 조례에서는 '건축허가' 뿐만아니라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바, 이는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 부분 삭제

5) D시 건축 조례 (2)

조례제명	「D시 건축 조례」
조항	제6조제1항
조례내용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상위법령	**「건축법」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3항에 따르면,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동 위원회 위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동 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즉 상위법령에 따르면 지차단체장은 최대 150명의 위원으로 동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조례에서 위원의 상한을 상위법령보다 낮게 규정하여 결국 D시장은 동 위원회 위원을 최대 35명으로만 구성할 수 밖에 없는바, 이는 법령에서 부여된 시장의 위원회 구성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의 상한선을 150명으로 수정

6) D시 건축 조례 (3)

조례제명	「D시 건축 조례」
조항	제6조제2항
조례내용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담당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된다
상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5항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여 시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로 이를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6조제2항 삭제검토

7) D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D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항	제3조제5조
조례내용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부분까지의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부분까지의 구간 ② 제설·제빙 작업범위에 대한 다툼이 없게 하기 위하여 예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상위법령	「자연재해대책법」(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

	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2015. 12. 31부터 개정 시행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는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이 추가되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8) D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D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2조
조례내용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 이내로 하되 시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1일 초과할 수 없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영 제83조제1항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위원 정수에 대해 영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길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수를 정해야 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위원 정수를 조례에 정확히 규정 □ 조례개정(안)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0인 이내로 하되 시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1일 초과할 수 없다.

9) D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D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7조제2항
조례내용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134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대한 특례이므로 법률에 정해야 할 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검사위원의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에 결산 검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 있음.
개선방안	□ 조례개정(안)

(정비방안)	제7조제2항 삭제 검토

10) D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D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11조
조례내용	제11조(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한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0조 제2항에서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있는데,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상위법령에 맞게 상한금액을 정함. □ 조례개정(안) 제11조(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0천만원 이하의** 공사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한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1) D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례제명	「D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63조제2항
조례내용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은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조례에서는 면적과 관계 없이 먼저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함으로써 상위 법령에 위반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상위 법령에 맞게 신고면적이 다른 경우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단서로 규정하든지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이 조례에서는 삭제 검토 **□ 조례개정(안)** 제63조제2항

12) D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조례제명	「D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조항	제31조제1항
조례내용	시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약으로 체결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업실적이 우수할 때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하되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하되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과 다르게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시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약으로 체결하고, 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실적이 우수할 때에는 평가를 거쳐 다시 위탁할 수 있다

13) D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D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조항	제6조 제2항
조례내용	제6조 제2항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상위법령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1항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1.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지점번호 검증자) 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 조례에서는 위탁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및.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만을 규정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에는 위탁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조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영 제17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로 수정 검토

14) D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D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조항	제12조 제1항
조례내용	제12조 제1항 시장은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광고사업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는 이와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도록 광고업자를 선정한 날로부터"10일" 이내를 "20일"이내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15) D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조례제명	「D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

조 항	제4조제2항 및 별표 2
조 례 내 용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 위 법 령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문 제 유 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 제 점 및 검 토 의 견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이 개정되어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고 정액으로 규정함 "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의 개정 전 규정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이며 개정에 따라 별표 4가 삭제되었으므로 개정 전 규정에 맞추어 규정한 조례 제5조를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수정하고 별표 2는 삭제하여야 함
개 선 방 안 (정 비 방 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내용 수정하고 별표 2 삭제

16) D시 도시계획 조례

조 례 제 명	「D시 도시계획 조례」
조 항	제76조
조 례 내 용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 위 법 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므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에 따르도록 한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며, 개별 조례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규정을 두는 것은 불필요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76조 삭제

17) D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D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7조 제6호
조례내용	수탁자가 센터의 수탁기간 동안 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집기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D시에 소유권이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소유권 침해소지가 있어 보임. 조례로 권리의 침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수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소유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개정 검토

18) D시 물품관리 조례 (1)

조례제명	「D시 물품관리 조례」
조항	제27조 제1항

조례내용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관서포함)이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법 제90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법 제90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공무원은 시장이 지정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조례에서 물품관리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물품관리관으로 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시장이 지명하도록 수정 □ 조례개정(안)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시장이 정한 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19) D시 물품관리 조례 (2)

조례제명	「D시 물품관리 조례」
조항	제17조 제4항
조례내용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1천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제2항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조례 제17조 제4항에서는 일정가격이상인 경우에 감정평가액을 참작한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따르면,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되,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불용품 매각가격은 시가 참작을 원칙으로 하되, 취득가격이 1천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만 법인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상위법령의 규정과 불일치함. 2. 또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개정<2015. 2. 16>으로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을 포함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으므로, 상위법령의 규정과 불일치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1.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거나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재기재에 해당하게 되므로 삭제 검토 2. "법인 감정평가액"을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변경 □ 조례개정(안) □ 조례개정(안)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20) D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제명	「D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조항	제5조 제2항

조례내용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상위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제9항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힌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은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례에서 직무대행자로서 부위원장을 지명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거나 삭제 검토

21) D시 보육 조례

조례제명	「D시 보육 조례」
조항	제4조 제4항
조례내용	위원회의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상위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9조제3항 각 보육정책위원회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르면, 각 보육정책위원회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는바, 동 위원회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해야지 조례로 특정인을 간사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위반하지 않도록 삭제하거나 개정함.

22) D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조례제명	「D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
조항	제2조 제3항
조례내용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세무서평가담당 공무원, 재산세 과표 및 토지거래 허가신고 업무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업자, 농협직원등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상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4조제3항에서는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3항과 달리, 조례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추가하는 식으로 개정 검토

23) D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제명	「D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조항	제2조 제1항
조례내용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상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최소 40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조례에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법령과 다르게 규정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2조 제1항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24) D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D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5조 제2항
조례내용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관의 운영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에서는 사회복지관 운영 규정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이 없음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사회복지사업법령에서는 사회복지관 운영 규정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지방재정법령 및 D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도 운영 규정 승인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법령의 근거 없이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5조 제2항 삭제 검토

25) D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D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11조제2항
조례내용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시설의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규정하고있는데, 조례에서는 위원장 뿐만 아니라 시설의 장도 포함시키고 있으며, 5~10인으로 그 구성원의 수를 제한시키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시설의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6) D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제명	「D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항	제4조 제2항
조례내용	사회복지관의 운영 등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가 기간연장을 신청한 경우 사회복지관의 운영실적 및 계획 등을 검토하여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조례로 위탁계약기간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은데, 이 조례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확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사회복지관의 운영 등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수정하거나 상위법령의 재기재 이므로 해당 조문 삭제

	□ 조례개정(안) 5년이내로 하고, 위탁 계약기간을 평가를 거쳐 연장할수 있다

27) D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D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4조제3항제1호
조례내용	위원회의 위원은 D시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해당하는 사람 등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상위법령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근거 법령인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3항 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이 보다 범위를 좁혀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위원회의 위원은 D시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해당하는 사람 등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28) D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D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4조제4항
조례내용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이 된다
상위법령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6항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근거 법령인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6항에서는 간사는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로 특정 담당자를 정하는 것은 시장의 임명권한을 침해할 소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29) D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조례제명	「D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6조제2항
조례내용	제6조(위원의 의무)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는 이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관련 내용이 없음.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조례에서 창설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6조제2항 삭제 검토

30) D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D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 16조 제 1항 및 제 2항
조례내용	제16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심의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당해 심의대상에 대하여 평가 또는 하도급 용역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3. 당해 심의대상의 추진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심의기피를 신청하거나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를 배제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조,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

	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위원의 제척사유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 중 일부 사유만 규정하여 상위법령과 달리 이해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원칙적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은 조례에 다시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할 경우에는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야 함 □ 조례개정(안) 제16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심의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1) D시 수도급수 조례 (1)

조례제명	「D시 수도급수 조례」
조항	제20조

조례내용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등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삭제 5. 삭제 6. 그 밖에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인 「수도법」에 수도사용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로 법률의 위임없는 신고의무를 규정할 수는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20조 삭제검토

32) D시 수도급수 조례 (2)

조례제명	「D시 수도급수 조례」
조항	제36조
조례내용	제36조(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 마감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연체금과 달리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함 법률의위임없이조례로가산금을정하는것은「지방자치법」제22조단서에어긋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36조 삭제 검토

33) D시 수도급수 조례 (3)

조례제명	「D시 수도급수 조례」
조항	제46조제3항
조례내용	제46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급수설비는 불법으로 설치하였더라도 개인의 사유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법령의 근거없이 시에 귀속시키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46조제3항 삭제 검토

34) D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

조례제명	「D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2조
조례내용	제2조(기능) 군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수돗물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검토 4. 그 밖에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상위법령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업무는「수도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와 다른 기능을 규정하여 상위법령과 달리 이해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원칙적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은 조례에 다시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할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내용이 이루어 져야 함. □ 조례개정(안) 제2조(기능) 군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35) D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조례제명	「D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 항	제 3조 제 1항
조 례 내 용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상 위 법 령	제49조의2(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수돗물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문 제 유 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 제 점 및 검 토 의 견	「수도법 시행령」 제 49조의2 제 1항은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규정하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 선 방 안 (정 비 방 안)	□ 조례개정(안)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6) D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

조 례 제 명	「D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 항	제3조 제3항
조 례 내 용	제3조(구성) ③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시장이위촉또는임명한다. 1.수질관계전문가 2.시의회의원 3.소비자 4.관계공무원
상 위 법 령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②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문 제 유 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 제 점 및 검 토 의 견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항에서는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규정된 내용 또한 상위법령과 다르게 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3조 제3항 삭제

37) D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D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항	제28조제2항
조례내용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잉여금을 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상위법령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공기업법」 제67조제1항에서는 이익금의 처리 순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단에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지, 법령과 달리 조례에서 처리방법을 정하는 것은 위법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28조제2항 삭제 검토

38) D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

조례제명	「D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항	제3조제4호
조례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

	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상위법령	「식품위생법」 제89조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식품위생법」 제89조제2항에 따르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조성하는바, 「식품위생법」 제89조제2항제4호에서는 기금의 재원으로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으로 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에서 '기타 수익금'을 재원으로 규정할 수는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조례의 제4호를 삭제하거나,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라고 수정하는 것이 타당 □ 조례개정(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39) D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조례제명	「D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항	제5조
조례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 3.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4. 식품위생과 시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5.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6.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7.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8.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9.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서 정한 사업 10.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상위법령	「식품위생법」 제89조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식품진흥기금의 용도 및 사업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조례에서 추가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용도를 벗어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는데 이 조례에서는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부분이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거나, 상위법령에 있는 규정으로 삭제 검토

40) D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제명	「D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항	제3조
조례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 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그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상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에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상위법에 없는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음(더불어 이 조례 제3조제5호는 상위법령 규정을 그대로 조례로 이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및 조례"는 불필요한 문구로 보여짐)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1) D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1)

조례제명	「D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조항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한 허가 신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함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상위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시행령 제7조제1항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 대상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제출을 면제하도록 규정할 수 있

	지만, "신고" 대상은 조례로 제출서류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 없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례의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광고물은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으로서, 서류나 도서 일부의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는 이를 서류제출이 면제되는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삭제

42) D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2)

조례제명	「D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조항	제4조제3호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한 후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함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상위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신고만 하거나 신고도 없이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광고내용"에만 한정하는 것이고, 그 밖의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는 그 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그런데 이 조례 제4조제3호는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바, 굳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음. 더불어, 이 조례 제4조제3호를 규정하게 되면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광고내용을 변경은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왜냐하면 이 조례 제4조에서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신고하여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광고내용의 변경은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바, 그렇다면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3호 삭제

43) D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D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4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5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5항에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한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4조 삭제

44) D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제명	「D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항	제16조제7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는 자원봉사활동을 등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바, 조례에서는 법률의 근거 없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16조 제7항 삭제 검토

45) D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D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항	별지 제12호, 제3호서식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서식의 기재사항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함 [상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서식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고 할 것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46) D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D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3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단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례 제3조제2항은 상위법령과 달리 단장의 선출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맞게 단장은 단원이 호선하도록 규정

47) D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제명	「D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항	제26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D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D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6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6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르면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인데, 이 조례에서는 상인회에게 시장에 대한 보고의무 및 시장의 자료요청에 대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반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26조 삭제

48) D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D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5조제4항
조례내용	[조례의 내용]

및 상위법령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위탁기간은 <u>5년이내로 하고,</u> 위탁 계약기간을 <u>평가를 거쳐</u> 연장할수 있다.

49) D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제명	「D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항	제11조제5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로 선정 되었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 또는 관리능력 등의 부족으로 계약기간 중 해약된 개인이나 법인은 3년간 관리수탁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주차장법」 제8조제2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주차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주차장 수탁자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주차장 위탁관리 입찰 참여 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은바, 이 조례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반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검토

50) D시 주택 조례

조례제명	「D시 주택 조례」
조항	제22조 3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 1. D시의회 의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3. 분쟁이 발생한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6. D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상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①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해당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D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자를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 맞게 수정 **□ 조례개정(안)** 제16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51) D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1)

조례제명	「D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항	제11조 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	[조례의 내용]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여야 하며, 센터 종사자의 1/2 이상을 장애인으

령	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제1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센터의 장이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나, 이 조례 제9조제1항에서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직원의 일정비율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의 규정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2제1항제2호의 규정 취지를 파악하여 수정

52) D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2)

조례제명	「D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항	제11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센터의 동료 상담가는 반드시 장애인이여야 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별다른 자격요건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이 조례에서는 장애 동료상담 직원의 자격요건을 "동료상담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으로 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없는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장애동료상담 전문가의 자격요건 삭제

53) D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제명	「D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항	제23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이 개정(2014. 6. 30.)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 출산휴가 연장에 관한 부분을 반영할 필요 있음

54) D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

조례제명	「D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항	제 4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함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의 사유와 조례의 사유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상위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맞게 수정

55) D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조례제명	「D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항	제 24조 제 4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tl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례에서는 그 외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

56) D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D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14조 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상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바, 단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충분하지 아니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를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수정

57) D시 하수도 사용 조례 (1)

조례제명	「D시 하수도 사용 조례」
조항	제3조 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D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상수도 급수가 아닌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상위법령] 「하수도법」 제27조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하수도법」 제27조에서는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배수설비의 설치 및 공공하수도의 사용만으로 신고의무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법령에 없는 의무사항을 신설하였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검토

58) D시 하수도 사용 조례 (2)

조례제명	「D시 하수도 사용 조례」
조항	제6조 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설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상위법령] 「하수도법」 제24조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인데**, 조례에서는 법령의 위임 없이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59) D시 하수도 사용 조례 (3)

조례제명	「D시 하수도 사용 조례」
조항	제25조 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함 [상위법령] 「하수도법」 제73조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하수도법」 제73조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이는 체납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보아야지 「지방세기본법」 상 실체적인 사항을 준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대판 82누120, 법제처 의견제시 제12-0271 등), 가산금은 금전납무의무를 지체한 경우에 이를 강제징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하수도법」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검토

60) D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조례제명	「D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조항	제9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분묘의 설치 기간은 15년으로 하고(제1항), 설치기간이 경과된 분묘의 연고자가 시장에게 당해 분묘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 15년, 2회 10년, 3회 10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제2항) [상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근거 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개정되어, 분묘의 설치기간이 30년으로 연장되었고,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은 5년 이상 30년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2항에 맞게 수정 필요

61) D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조례제명	「D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조항	제2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함 [상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18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등"의 범위에 "간이화장실"도 포함되나 이 조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기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62) D시보증채무관리조례

조례제명	「D시보증채무관리조례」
조항	제6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 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조례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시장에게 일정사항을 보고 하도록 하는 채권자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

63) D시수도사업설치조례 (1)

조례제명	「D시수도사업설치조례」
조항	제15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출 마련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 당해 지출비목의 예산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을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없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상위법령] 「지방공기업법」 제27조 전단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공기업법」 제27조 전단에서는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수입금지출 마련 요건을 상위 법령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

64) D시수도사업설치조례 (2)

조례제명	「D시수도사업설치조례」
조항	제16조
조례내용	[조례의 내용]

및 상위법령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함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잠재 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액이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 는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상위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7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서는 이익금을 결손보전,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추어 수정

65) D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조례제명	「D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조항	제5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함 [상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그런데, 조례에서 대강이라도 정하지 않고, 시장이 정하도록 포괄 위임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어긋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게 이 조례나 「D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상환기간의 이율에 대해서 규정하도록 함

66) D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조례제명	「D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조항	조례 전체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대해서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1. <u>D시의정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u>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되고, 사단법인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면 될 것이므로 조례로 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근거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가 있고, 법인에 대한 지원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해당 조례의 경우 지원에 대한 규정은 없고, 단지 사단법인의 구성 및 운영 규정, 사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한 조례는 규정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 2. <u>판례(대판 2012추176)에서는</u> 서울시의회 전·현직의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시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서울시 의정회는 전·현직 서울시의회 의원이라는 공직 근무 경력만으로 당연히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단체로서 근본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조례

	안이 정한 사업이 서울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으므로 본 조례 또한 같은 이유로 위법성이 있다고 보임. 따라서 본 조례에서 보조금 관련 조항이 삭제될 경우 본 조례의 존치 등 실효성이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례 폐지 검토

67) D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조례제명	「D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제2조 제2호」
조항	제2조 제2호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에 관한 규정으로, 제2호에서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는 별표 2의 지급 구분표에 따름을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에는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가 아닌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를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를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로 수정

68) D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조례제명	「D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조항	제5조 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	[조례의 내용] 심의회는 D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함

령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는 기금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지, 기금 관련 심의위원회가 아닌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 소지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하거나 다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

69) D시향토유적보호조례

조례제명	「D시향토유적보호조례」
조항	제3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D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D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최소한 구성에 관한 규정은 두고, 기능을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해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3조에 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70) D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조례제명	「D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조항	제7조 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함 [상위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음. 따라서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는 구상할 수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초과액을 징수하도록 함

5. E 시

1) E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E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항	제16조 제1항
조례내용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사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재단은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서 재단이 시의 출연금으로 설립되었다고 해서 재단의 재산이 바로 공유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장이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재단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음.

2) E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E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항	규정없음
조례내용	규정없음
상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이와 같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해제에 관한 사항은 필수조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향후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이나 해제를 위해서는 이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이나 해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E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조례제명	「E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조항	제18조 전단
조례내용	제18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평가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기준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18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하고, 위탁 계약기간을 평가를 거쳐 연장할수 있다. 다만,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4) E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제명	「E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항	제 9조 3항 후단
조례내용	제9조 (구성)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도시국장, 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위법령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바 ,단지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9조 (구성)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도시국장, 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E시 건축 조례

조례제명	「E시 건축 조례」
조항	제7조 제3항

조례내용	제7조(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축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된다.
상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5항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5항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례로 이와 다르게 규정하면 법령에서 시장에게 부여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명권한 또는 위촉권한을 침해할 소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

6) E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E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항	제3조 제1항
조례내용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건축물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22조의8(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

	상으로 지정된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는 시설물의 지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시장은 건축물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7) E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E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2조
조례내용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한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영 제83조제1항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위원 정수에 대해 영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길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수를 정해야 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위원 정수를 조례에 정확히 규정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0인 으로 한다.

8) E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E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7조제2항
조례내용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결산검사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134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대한 특례이므로 법률에 정해야 할 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검사위원의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에 결산 검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 검토

9) E시 경관 조례

조례제명	「E시 경관 조례」
조항	제12조 제7항
조례내용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
상위법령	「경관법 시행령」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⑥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영 제26조 제6항에서는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정하는것은 자칫 임명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게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수정

10) E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E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13조
조례내용	제13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영 제60조제2항에 의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다만, 감리자가 선정된 공사는 제외한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신설 2008. 3. 17〉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영 제60조제2항에서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상한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13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영 제60조제2항에 의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0천만원 이하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1) E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E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2조 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조례내용	제2조(위촉 및 해촉)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면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

	는 경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상위 법령의 근거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12) E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1)

조례제명	「E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31조제1항
조례내용	제31조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4. 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중략)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감액의 요건이 변경되었는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대부료의 감면 사유 및 감면율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13) E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조례제명	「E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34조제2항
조례내용	제34조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다음과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이자의 계산방법이 변경되었으므로 조례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34조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u>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u> 대부료를 다음과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14) E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3)

조례제명	「E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37조제1항
조례내용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법인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와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상위법령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u> <u>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사유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매각대금 분납에 따른 이자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 7.12.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사유 및 이자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5) E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4)

조례제명	「E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 항	제61조
조례내용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다음과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려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변상금의 분할납부 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이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이도록 이자계산 방법이 변경됨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상위 법령의 내용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다음과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E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5)

조례제명	「E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61조의2
조례내용	제61조의2(과오납급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3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말한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의 반환시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붙이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이도록 이자계산 방법이 변경됨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상위 법령의 내용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61조의2(과오납급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가산하여 반환한다.

17) E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6)

조례제명	「E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62조제2항
조례내용	보상금은 숨겨진 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단서로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조례에서는 면적과 관계 없이 먼저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함으로써 상위 법령에 위반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에 맞게 면적이 다른 경우에 대하여 단서로 규정하거나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 삭제

18) E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례제명	「E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6조
조례내용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地目)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표(사진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영 제49조제1항에서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대강의 사항도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에 위배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공유재산 대장의 서식을 조례에서 정해야 함

19) E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E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항	제6조 제3항
조례내용	제6조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담당부서장, 교육지원업무 총괄담당부서장, 시와 대응·협력하는 교육경비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 H.E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이상 직위의 공무원 2명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 중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2. 민간교육 전문가 3. 그 밖에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상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이 조례에 따르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마치 권고적, 훈시적 규정인 것처럼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하거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내용과 같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수정 검토

20) E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E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6조
조례내용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상위법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 ②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된다.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위촉직 위원: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삭제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근거 법령인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는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4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4항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궐위원의 임기

	도 3년인데 조례에서는 이와 다르게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수정하고, 보궐위원의 임기 부분 삭제

21) E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E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10조 제2항
조례내용	제10조(위탁관리)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상위법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의 경우 3년이내로 정하고 있어 그 상한에 있어 상위법령에서 정한 내용보다 범위를 축소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10조(위탁관리)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5년이내로 하고, 위탁 계약기간을 평가를 거쳐 연장할수 있다.

22) E시 노인복지 조례

조례제명	「E시 노인복지 조례」
조항	제27조
조례내용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②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3) E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 E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조항	제17조
조례내용	제17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법에 따라 설치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상위법령	「도로명주소법」 제13조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1.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지점번호 검증자) 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 조례에서는 위탁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및.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만을 규정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에는 위탁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조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영 제17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로 수정 검토

24) E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E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조항	제21조제1항
조례내용	제21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15조제7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고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고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개선방안	□ 조례개정(안)

(정비방안)	제21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5) E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3)

조례제명	「E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조항	제21조제3항
조례내용	제21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시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법률의 근거 없이 광고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21조제3항을 삭제하거나 행정 실제에서 시안 작성 후 시장과 협의 확정할 정책적 필요가 있으면 이를 의무화 하기 보다는 권고하는 방향으로 개정 검토

26) E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제명	「E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항	제3조제1항
조례내용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영 별표 3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며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상위법령	「도로법」 제117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인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도로 무단점유 관련 과태료는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외에는 없는바, 그 외의 행위를 대상으로 조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게 되면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규정

27) E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1)

조례제명	「E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조항	별표1제4호
조례내용	주유소 등의 진입로 점용료를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함
상위법령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서는 "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에서는 주유소 등의 진입로·출입로의 점용료는 토지가격에 0.02를 곱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조례에서도 이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 별표 1 제4호에서는 이 범위를 벗어난 금액을 정하고 있음 그 외에도 이 조례 별표 1에서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의 구분기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전반적인 검토 후 수정 필요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의 구분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점용료 규정

28) E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2)

조례제명	「E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조항	제5조제2항
조례내용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상위법령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②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29) E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3)

조례제명	「E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조항	제7조,별표2
조례내용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상위법령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③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서는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 조례에서 이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면서 점용료 조정산식을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제7조를 수정하고, 별표 2 삭제

30) E시 도시개발조례 (1)

조례제명	「E시 도시개발조례」
조항	제11조
조례내용	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호로 구성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잔액 4. 법 제85조에 따른 부과·징수된 과태료 5.「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7.「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주차장법」 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 차입금 9.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상위법령	「도시개발법」 제60조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된다. 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2. 정부의 보조금 3.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5. 제85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9.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10. 차입금 11.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도시개발법」 제60조제2항에서는 특별회계의 재원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 중 법 제60조제2항제3호・제6호・제9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원칙적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은 조례에 다시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례에서 취소사유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할 경우에는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야 함

31) E시 도시개발조례 (2)

조례제명	「E시 도시개발조례」
조항	제12조
조례내용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8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를 운용·관리한다. ①특별회계의용도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사업비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5.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상위법령	「도시개발법」 제61조제1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도시개발법」 제61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사용 용도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제1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제2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제3호),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제4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제5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제6호),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제7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8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상위법령과 다르게 특별회계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의 규정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용도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수정

32) E시 도시계획 조례 (1)

조례제명	「E시 도시계획 조례」
조항	제63조제1항
조례내용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에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상위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2조제5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영 제112조제5항에서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3) E시 도시계획 조례 (2)

조례제명	「E시 도시계획 조례」
조항	제63조 제2항
조례내용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상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①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30인까지로 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에서는 위원장과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였는데, 조례에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규정한 것은 시장의 임명·위촉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34) E시 도시계획 조례 (3)

조례제명	「E시 도시계획 조례」
조항	제63조 제4항

조례내용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상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③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당해 시·군·구 지방의회의 의원 2. 당해 시·군·구 및 도시·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등 도시·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정보통신등도시·군계획관련분야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있는자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영 제112조제3항에서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3분의 2이상 위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원칙적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은 조례에 다시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할 경우에는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야 함.

35) E시 도시계획 조례 (4)

조례제명	「E시 도시계획 조례」
조항	제63조 제5항
조례내용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상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④제111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시행령 제112조제4항에서는 제111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시·

검토의견	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1조제4항에서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연임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연임제한 부분 삭제 □ 조례개정(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6) E시 도시계획 조례 (5)

조례제명	「E시 도시계획 조례」
조항	제67조
조례내용	간사는 도시계획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상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⑦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영 제111조제7항에서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직위를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하거나,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규정

37) E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E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E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7조제5호
조례내용	수탁자가 센터의 수탁기간 동안 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집기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E시에 소유권이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소유권 침해소지가 있어 보임. 조례로 권리의 침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수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소유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개정 검토

38) E시 물품관리 조례 (1)

조례제명	「E시 물품관리 조례」
조항	제17조제4항
조례내용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되,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2015. 2. 16)으로 매각·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법인을 포함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

	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39) E시 물품관리 조례 (2)

조례제명	「E시 물품관리 조례」
조항	제27조제1항
조례내용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법 제90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여, 검사자 지명을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조례에서 물품관리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한다.**

40) E시 물품관리 조례

조례제명	「E시 물품관리 조례」
조항	제28조제2항
조례내용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8조 ③ 물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檢受)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8조제3항에서는 물품 취득 시 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하도록 규정하여, 검수자 지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조례에서 물품출납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8조제3항에 맞게 수정 □ 조례개정(안)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u>시장이</u> 검사 또는 검수자를 <u>지정하여 실시 한다.</u>

41) E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E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조항	제4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허가기간 연장 사유를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

42) E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1)

조례제명	「E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조항	제2조제3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당연직 위원은 토지 및 주택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등 당해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③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해당 조례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누락하는 등 위원의 자격에 대해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규정한 부분이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원칙적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은 조례에 다시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할 경우에는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야 함

43) E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2)

조례제명	「E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조항	규정없음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규정없음 [상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④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제73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

	피하지 아니한 경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의해 준용되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에 대해서 조례에 규정해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관련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

44) E시 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제명	「E시 성평등 기본 조례」
조항	제10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경우에 는 전체 위원 중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바, 단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 조례개정(안)

(정비방안)	시장(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경우에 는 전체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5) E시 수도 급수 조례 (1)

조례제명	「E시 수도 급수 조례」
조항	제20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1호에서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경우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경우 3. 제29조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2호에서는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수도법」에 수도사용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인 「수도법」에 수도사용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로 법률의 위임없는 신고의무를 규정할 수는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검토

46) E시 수도 급수 조례 (2)

조례제명	「E시 수도 급수 조례」
조항	제25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나 수도법상 해당 내용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47) E시 시세 기본조례 (1)

조례제명	「E시 시세 기본조례」
조항	제13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미납세(체납세 포함)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64조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세기본법」 제64조제1항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

	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의 규정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미납세를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임차인의 가족에 대하여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단서 조항 삭제

48) E시 시세 기본조례 (2)

조례제명	「E시 시세 기본조례」
조항	제17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변경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시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제2호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제2호에서는 "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와는 달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법에 있는 내용이므로 조례에 따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거나, 존치한다면 "압류한다"로 수정

49) E시 시세 기본조례 (3)

조례제명	「E시 시세 기본조례」
조항	제23조
조례내용	[조례의 내용]

및 상위법령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시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4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세기본법」 제84조에서는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는 재량을 준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조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도 아니함 그런데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반드시 한꺼번에 징수하도록 의무규정을 둔 것은 상위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재량권 박탈이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과 같이 재량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50) E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E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항	제3조 제3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함 1.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4.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5.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상위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이 되며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호는 다음과 같음 1.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러나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이외의 항목을 추가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각 1명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상위법령 재기재의 경우, 법령을 재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나, 재기재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51) E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1)

조례제명	「E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조항	제4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상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신고만 하거나 신고도 없이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광고내용"에만 한정하는 것이고, 그 밖의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는 그 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그런데 이 조례 제4조제3호는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바, 굳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음. 더불어, 이 조례 제4조제3호를 규정하게 되면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광고내용을 변경은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왜냐하면 이 조례 제4조에서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신고하여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광고내용의 변경은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바, 그렇다면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3호 삭제 검토

52) E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2)

조례제명	「E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조항	제8조제2항제3호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상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례에서는 주민협의회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위원장을 시행령과 같이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위원들(조례에 따르면 위원에는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한 자 이외의 자도 포함됨)이 호선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여 자율관리협정 체결자들이 주민협의회 대표를 선임할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을 선출할 때에는 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는 것으로 개정

53) E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제명	「E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조항	제14조제1항제1호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공설 및 공동묘지 내의 분묘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은 10년 단위로 3회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근거법령인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개정되어, 설치기간이 15년에서 30년으로 변경되었고,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도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도록 바뀌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맞게 수정 필요

54) E시 재정운영 조례

조례제명	「E시 재정운영 조례」
조항	제8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무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상위법에 위반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 또는 상위법에 맞추어 '넘지 않아야 한다'라고 수정 검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u>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u>

55) E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조례제명	「E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조항	제14조제2항각호외본문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2월말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근거 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해당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이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출시기가 상위법령과 다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56) E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E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8조 제6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함

	[상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에서는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조례에서는 협의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불일치하므로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에 맞게 "기준"수정 또는 상위법령의 재기재에 해당하므로 삭제 검토

57) E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1)

조례제명	「E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조항	제26조 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市長)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8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8항에서는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인데, 조례에서 상인회의 지위를 박탈하는 등록취소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상 불비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타당하

	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58) E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2)

조례제명	「E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조항	제30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및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함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6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6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상인회 등은 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과 다르게 사전적, 정기적으로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59) E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3)

조례제명	「E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조항	제33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관리자 지정취소에 관하여 규정함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4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4항에서는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인데, 조례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지정취소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상 불비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을 삭제하거나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

60) E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E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17조 제3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특히,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상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바, 단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충분하지 아니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u>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u>

61) E시 주택 조례

조례제명	「E시 주택 조례」
조항	제21조 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함 [상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주택지원 업무 담당국장으로 규정한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과 같이 규정하여야 함

62) E시 하수도 사용 조례 (1)

조례제명	「E시 하수도 사용 조례」
조항	제29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배수설비 공사비용,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상위법령] 「하수도법」 제73조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하수도법」 제73조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체납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보아야지 「지방세기본법」 상 실체적인 사항을 준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대판 82누120, 법제처 의견제시 제12-0271 등), 가산금은 금전납무의무를 지체한 경우에 이를 강제징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하수도법」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제29조제1항 삭제

63) E시 하수도 사용 조례 (2)

조례제명	「E시 하수도 사용 조례」
조항	제4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30일 이내에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 및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 및 해수 등 상수도가 아닌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뚜렷하게 다른 경우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 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상위법령] 「하수도법」 제27조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하수도법」 제27조에서는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배수설비의 설치 및 공공하수도의 사용만으로 신고의무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법령에 없는 의무사항을 신설하였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항 삭제

64) E시 하수도 사용 조례 (3)

조례제명	「E시 하수도 사용 조례」
조항	제7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법령에 따라 사전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는 있으나 사후적으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법령의 위임없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 검토

65) E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조례제명	「E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조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22조 ②시장은 제1항의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가산금 산정에 이를 준용한다. ③시장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상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서는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가산금은 금전납무의무를 지체한 경우에 이를 강제징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령에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함. 또한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징수 하는 것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할 수 없을 것인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삭제

66) E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조례제명	「E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조항	제1조제2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재난의 종류를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으로 구분하여 정의함 [상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3. 8. 6. 개정되어 재난의 종류를 종전의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구분하여 정의하던 것을 자연재난(제3조제1호가목) 및 사회재난(제3조제1호나목: 종전의 나목 및 다목을 통합하여 규정)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조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만들어 조례이므로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존중하여 같은 용어는 가능한 한 정의가 같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령 상호간의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법규정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법령의 집행과정에서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바, 원칙적으로 재난에 대한 정의를 「재난 및 안전관

	리 기본법」상 정의 및 분류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재난의 정의 및 구분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인용조문 정비

67) E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조례제명	「E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조항	제31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규칙 제14조에 따라 시장(市長)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음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4항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르면 시장은 일정한 자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 절차에 대하여 부령에 위임한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관리자를 시장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시장이 시장관리자 직접 지정할 수 있는 내용 삭제

68) E시 주차장 조례

조례제명	「E시 주차장 조례」
조항	제9조 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음

	[상위법령] 「주차장법」 제9조제3항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주차장법」 제9조제3항에서는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영주차장이 노상주차장인 경우에는 조례에서 가산금에 관해 정할 수 있을 것이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인 경우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가산금을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어긋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공영주차장이 노상주차장인 경우라면 가산금이 주차요금의 4배이내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인 경우 법률에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조항 삭제

69) E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E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조항	전체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상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과태료 부과 사유 및 금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 및 별표 8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상위법령에서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

	임한바가 없는바, 시흥시장은 상위법령에 따라 폐기물 관련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지 조례로 폐기물 관련 과태료에 관하여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례 폐지 검토(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규칙 또는 훈령, 예규로 정함. 다만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므로 그마저도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

70) E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E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조례 전체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상위법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2008.3.28. 법률 제6252)되었고,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칙 제2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조례 폐지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1 조례 폐지 검토 2. 아직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라고 특정할 필요)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 설치 검토

6. F 시

1) F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1)

조례제명	「F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항	제17조
조례내용	제17조(훼손자 부담금) ①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훼손자에게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직접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에 상당하는 금액을 2년간 예치토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훼손자 부담금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상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가로수를 옮겨 심기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 그 비용 부담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가로수를 옮겨 심기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비용 부담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인데, 조례에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훼손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훼손자부담금에 대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17조 삭제

2) F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2)

조례제명	「F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조례내용	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고, 시장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상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가산금은 금전납무의무를 지체한 경우에 이를 강제징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함. 또한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징수 하는 것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할 수 없을 것인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삭제

3) F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F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항	규정 없음
조례내용	규정 없음
상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

	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나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F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민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나 방법을 전혀 알 수 없는 불편이 발생하고 관련 업무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저하 우려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나 방법 등을 규정

4) F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F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7조제2항
조례내용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134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

	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대한 특례이므로 법률에 정해야 할 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검사위원의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에 결산 검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 검토

5) F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F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9조제3항
조례내용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경계의 결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확정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이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 안에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경계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결정을 못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뿐 자동폐기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 조례개정(안)

(정비방안)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부분 삭제

6) F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F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12조
조례내용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상위법령	「<u>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u> ① 제16조제6항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통지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이의신청 거부에 관한 사항을 직접 정하거나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한바, 법적 근거 없이 조례에서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법률상 권리구제를 받을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 검토

7) F시 경관 조례 (1)

조례제명	「F시 경관 조례」
조항	제6조

조례내용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수변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2. 공공시설물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3. 주요 산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상위법령	「경관법」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경관법」 제16조에 1항 제6항에서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규정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인용 조문 확인 후 수정

8) F시 경관 조례 (2)

조례제명	「F시 경관 조례」
조항	제8조
조례내용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령	「경관법」 제17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등은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경관법」 제14조가 아니라 제17조에서 경관사업추진체에 대한 규정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인용 조문 확인 후 수정

9) F시 공공디자인 조례 (1)

조례제명	「F시 공공디자인 조례」
조항	규정없음
조례내용	규정없음
상위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조례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함

10) F시 공공디자인 조례 (2)

조례제명	「F시 공공디자인 조례」
조항	규정없음
조례내용	규정없음
상위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3항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조례에서는 이

	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지역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함

11) F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1)

조례제명	「F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조항	제3조제3항
조례내용	대행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조례의 내용에 따르면, 대행계약은 공유재산의 관리위탁계약으로 보이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를 1년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에 이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수정

12) F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2)

조례제명	「F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조항	제3조제4항
조례내용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간 사용료 징수액의 6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관리위탁할 때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관리위탁할 때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바, 법률의 근거 없이 부담을 주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어긋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 검토

13) F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조례제명	「F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조항	제3조제2항
조례내용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상위법령	「지방공기업법」 제7조 ②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에서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부시장을 관리자로 정하는 것은 시장의 임명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 검토

14) F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1)

조례제명	「F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25조제1항
조례내용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 ① 대부계약의 해지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의적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나 해당 조례에서는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게 임의적 해지로 개정 검토

15) F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조례제명	「F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32조제1항 각호외본문
조례내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u>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u>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위법령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u>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감액의 요건이 변경되었는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대부료의 감면 사유 및 감면율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16) F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3)

조례제명	「F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35조제2항
조례내용	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 2.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나누어 납부 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나누어 납부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이자의 계산방법이 변경되었으므로 조례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맞추어 이자율 수정 필요

17) F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4)

조례제명	「F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38조
조례내용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 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사유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매각대금 분납에 따른 이자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사유 및 이자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18) F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5)

조례제명	「F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63조
조례내용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변상금의 분할납부 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이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이도록 이자계산 방법이 변경됨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상위 법령의 내용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9) F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6)

조례제명	「F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63조의2
조례내용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 4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말한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의 반환시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붙이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이도록 이자계산 방법이 변경됨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상위 법령의 내용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 조례개정(안)

(정비방안)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0) F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7)

조례제명	「F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64조제2항
조례내용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② 보상금은 은닉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단서로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은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례에서는 면적과 관계 없이 먼저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함으로써 상위 법령에 위반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에 맞게 신고면적이 다른 경우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단서로 규정하거나,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이 조례에서는 삭제 검토

21) F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8)

조례제명	「F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66조

조례내용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⑥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2015. 2. 16>으로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법인을 포함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으므로,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볼때 불일치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평가 의뢰할 수 있도록 수정 검토

22) F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제명	「F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항	제2조
조례내용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법」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상위법령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간이화장실**"이 누락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법」 제2조에 의한 공중화

	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3) F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F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항	제2조
조례내용	각급 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특수목적을 가진 학교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업 7.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점시책 사업 8. 그 밖에 F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 사업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보조할 수 있는 사업과 위 각 사업의 범위와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사업의 범위가 달라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하거나 상위법령의 재기재에 해당하므로 해당

	규정 삭제 검토

24) F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F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항	제3조제3항본문
조례내용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상위법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 ②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된다.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위촉직 위원: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삭제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근거 법령인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4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4항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과 다르게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

25) F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F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3조제1항
조례내용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노

	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동수로 한다
상위법령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지역노사정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지역노사정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과 맞지 아니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맞게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개정

26) F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1)

조례제명	F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항	제8조 제4항
조례내용	제3항에 따른 위·수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야 갱신가능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맞게 개정

27) F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2)

조례제명	「F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 항	제20조
조 례 내 용	수탁자는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시장을 수익자로 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화재보험 가입 증명서를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체험자의 상해보험에 따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밖에 발생하는 사고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 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문 제 유 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 제 점 및 검 토 의 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보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에 가입한 건물 등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보험료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을 뿐임
개 선 방 안 (정 비 방 안)	□ 조례개정(안) 수탁자가 아니라 시장이 보험에 가입하되, 수탁자에게 보험료 등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

28) F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조 례 제 명	「F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조 항	제12조 제3항
조 례 내 용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시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상 위 법 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법률의 근거 없이 광고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12조제3항을 삭제하거나 행정 실제에서 시안 작성 후 시장과 협의 확정할 정책적 필요가 있으면 이를 의무화 하기 보다는 권고하는 방향으로 개정 검토

29) F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제명	「F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항	제8조제1항 및 별표 2
조례내용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상위법령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의 개정 전 규정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이며 개정에 따라 별표 4가 삭제되었으므로 개정 전 규정에 맞추어 규정한 조례 제5조를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수정하고 별표 2는 삭제하여야 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제5조 수정 검토, 별표 2 삭제

30) F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F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5조 제2항
조례내용	센터는 전체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하되,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서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하되,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수정

31) F시 문화원사 설치·운영 및 문화원 지원·육성 조례

조례제명	「F시 문화원사 설치·운영 및 문화원 지원·육성 조례」
조항	제5조 제3항
조례내용	문화원사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

	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를 3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제한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거나 삭제 검토

32) F시 물품 관리 조례 (1)

조례제명	「F시 물품 관리 조례」
조항	제18조 제4항 후단
조례내용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기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나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매 물품당 장부상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되,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2015. 2. 16)으로 매각·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법인을 포함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으므로,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볼때 불일치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기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나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매 물품당 장부상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자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33) F시 물품 관리 조례 (2)

조례제명	「F시 물품 관리 조례」
조항	제28조 제1항
조례내용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그 밖의 시본청 국장·담당관·과장,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의 경우는 시본청 국장·단장·과장·담당관,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면·동장이 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법 제90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여, 검사자 지명을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조례에서 물품관리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추어 F시장의 권한으로 규정

34) F시 P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F시 P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5조 제3항
조례내용	아트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되, 2번이상 갱신하려면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마치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거나 삭제 검토

35) F시 O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조례제명	「F시 O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조항	제7조제1항
조례내용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마을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2항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지원을 중단하고, 해당하는 지원금과 그이자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로 개정함

36) F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제명	「F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조항	제3조제1항

조례내용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상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상 8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상 8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최소 40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조례에서는 20인 이상으로 함으로써 법령과 다르게 규정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맞게 수정

37) F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제명	「F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항	제6조
조례내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사항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융자금이나 이자(연체이자)의 감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F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이에 따르면 조례 제6조 제2호, 4호, 5호는 상위 법령에 명시적인 근

검토의견	거가 없는바,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 필요

38) F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1)

조례제명	「F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항	제3조제1항
조례내용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안전건설국장, 산림녹지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상위법령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제3항 1. 위원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 법령인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제3항제1호에서는 위원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특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시장의 위원회 구성권한을 침범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에서 당연직 위원을 특정하지 아니하도록 함

39) F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조례제명	「F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항	제4조제1헝
조례내용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상위법령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제4항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4항에 따르면,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춰 수정

40) F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30

조례제명	「F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항	제14조
조례내용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상위법령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6항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근거 법령인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6항에서는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로 관련업무 팀장을 정하는 것은 시장의 임명권한을 침해할 소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6항에 맞게 수정

41) F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제명	「F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조항	제3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	[조례의 내용]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한다고 규정함

령	[상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상위법령과 달리 부군수가 된다고 규정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42) F시 수도 급수 조례 (1)

조례제명	「F시 수도 급수 조례」
조항	제20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1항에서는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30조 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6.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제2항에서는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업종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수도법」에 수도사용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인 「수도법」에 수도사용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로 법률의 위임없는 신고의무를 규정할 수는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20조 삭제 검토

43) F시 수도 급수 조례 (2)

조례제명	「F시 수도 급수 조례」
조항	제26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법률의 근거 없이 수도사용자 등에게 연대책임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26조제2항 삭제 검토

44) F시 수도 급수 조례 (3)

조례제명	「F시 수도 급수 조례」
조항	제33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금전납부 의무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이 가산금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검토

45) F시 시세 기본 조례 (1)

조례제명	「F시 시세 기본 조례」
조항	제13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미납세(체납세 포함)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세기본법」 제64조제1항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의 규정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미납세를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임차인의 가족에 대하여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단서 삭제

46) F시 시세 기본 조례 (2)

조례제명	「F시 시세 기본 조례」
조항	제17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변경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시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64조제1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제2호에서는 "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와는 달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법에 있는 내용이므로 조례에 따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거나, 존치한다면 "압류한다"로 수정

47) F시 시세 기본 조례 (3)

조례제명	「F시 시세 기본 조례」
조항	제22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시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세기본법」 제84조에서는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는 재량을 준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조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도 아니함 그런데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반드시 한꺼번에 징수하도록 의무규정을 둔 것은 상위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재량권 박탈이므로 "할 수 있다"고 규

	정하는 것과 같이 재량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48) F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조례제명	「F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조항	제15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1.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른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 재배,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5.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6. 시설채소, 화훼, 과수, 약용작물일 경우 7. 해당 연도에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8.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4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금액을 피해보상의 기준으로 하면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야생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31호) 제11조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상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총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을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조례에서 피해보상 지원대상자를 법령보다 축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및 「야생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31호) 제11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농업인 등에 대한 피해 보상 강화

49) F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1)

조례제명	「F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조항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나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2호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3호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상위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다만,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광고물은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으로서, 서류나 도서 일부의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는 이를 서류제출이 면제되는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50) F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2)

조례제명	「F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조항	제4조제3호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함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나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상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신고만 하거나 신고도 없이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광고내용"에만 한정하는 것이고, 그 밖의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는 그 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그런데 이 조례 제4조제3호는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바, 굳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음. 더불어, 이 조례 제4조제3호를 규정하게 되면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광고내용을 변경은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왜냐하면 이 조례 제4조에서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신고하여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광고내용의 변경은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바, 그렇다면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3호 삭제

51) F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3)

조례제명	「F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조항	제8조제2항제1호,제3호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함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F시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상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조례에서는 주민협의회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위원장을 시행령에 따라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위원들(조례에 따르면 위원에는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한 자 이외의 자도 포함됨)중에서 서로 뽑는다고 규정하여 자율관리협정 체결

	자들이 주민협의회 대표를 선임할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을 선출할 때에는 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는 것으로 개정

52) F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F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5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F시장이 이를 따로 정함 [상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런데, 조례에서 대강이라도 정하지 않고, 시장이 정하도록 포괄 위임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어긋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환기간과 이율의 범위를 정함

53) F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조례제명	「F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조항	제11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함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을 이 조례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함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54) F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조례제명	「F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조항	제21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다음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2월말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에 제출하여야 함 [상위법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근거 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해당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이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출시기가 상위법령과 다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률에 맞게 수정

55) F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제명	「F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항	제26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F시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의 기준을 상실한 경우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8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8항에서는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인데, 조례에서 상인회의 지위를 박탈하는 등록취소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상 불비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해당 규정 삭제

56) F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F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30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상인회는 F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1.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 법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

	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6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6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르면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인데, 이 조례에서는 상인회에게 시장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상인회가 포함됨)가 이 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소기업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지원여부를 고려함이 없이 모든 상인회에게 자료제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도 10일 이내로 하여 상위 법령과 다르며, 대상 자료도 상위 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검토

57) F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F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33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F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만,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4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4항에서는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조례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지정취소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상 불비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토 필요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검토

58) F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

조례제명	「F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
조항	제26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상인회 등록취소에 관하여 규정함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8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8항에서는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인데, 조례에서 상인회의 지위를 박탈하는 등록취소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상 불비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59) F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F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5조제3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탁기간은 협약 일부터 3년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재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하되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과 다르게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수정

60) F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F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10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음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계약의 자유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 검토

61) F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F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4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상담복지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함. 다만,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상위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4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4항에서는 시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조례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기만 하면 청소년 관련 단체가 아니라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이는 상위법령에 위배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비영리법인 부분 삭제

62) F시 하수도 사용 조례

조례제명	「F시 하수도 사용 조례」
조항	제5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법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상위법령] 「하수도법」 제27조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하수도법」 제27조에서는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배수설비의 사용 및 공공하수도의 사용만으로 신고의무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법령에 없는 의무사항을 신설하였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5조 삭제

63) F시 하수도 사용 조례 (1)

조례제명	「F시 하수도 사용 조례」
조항	제8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상위법령] 「하수도법」 제24조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

	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인데, 조례에서는 법령의 위임 없이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8조제1항 삭제

64) F시 하수도 사용 조례 (2)

조례제명	「F시 하수도 사용 조례」
조항	제32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 [상위법령] 「하수도법」 제73조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하수도법」 제73조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체납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상 실체적인 사항을 준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대판 82누120, 법제처 의견제시 제12-0271 등), 가산금은 금전납무의무를 지체한 경우에 이를 강제징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하수도법」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32조제1항 삭제

65) F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F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12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 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상위법령]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에서는 사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고, 그 밖에 임원의 연임에 관한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조례에서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임면권자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 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부분 삭제검토

66) F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제명	「F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항	제7조제3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고,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고 규정함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관련단체의 대표자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 지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 지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7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들 중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

67) F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제명	「F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항	제4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촉직위원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⑤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가 포괄적이므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위원의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68) F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제명	「F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항	제2조제1호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외국인주민"이란 F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국적법」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한국인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는 「국적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인 주민'에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의 기준이 모호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한국인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삭제하고,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69) F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제명	「F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항	제3조제7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단서에서,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함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1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자동차에게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행정편의주의적인 측면이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노상주차장 이용자의 주차 시간이 어느 정도되는지를 알 수 없는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시키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개정 검토

70) F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조례제명	「F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조항	제11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대표협의체 위촉직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함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임에 관한 규정은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대표협의체 위촉직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7. G 시

1) G시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G시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조항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조례내용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7조 규정의 가산금 산정을 준용하도록 함
상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서는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가산금은금전납무의무를지체한경우에이를강제징수하기위한 수단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함. 또한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징수 하는 것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할 수 없을 것인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9조 규정의 가산금 산정을 준용한다

2) G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G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항	제2조제3호, 제3조, 제5조
조례내용	규정 없음
상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항에서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함을 2014.12.30.에 개정하였으나 조례에서는 "시설물의 지붕"에 관한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에 대한 내용 추가 필요

3) G시 건축 조례 (1)

조례제명	「G시 건축 조례」
조항	제4조
조례내용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상위법령	「건축법」 제6조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u>로 정하는 바에 따라</u>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건축법」 제6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음. 즉, 상위법령에서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로 일정한 경우 '건축허가'를 할 수 있을 뿐인데, 조례에서는 '건축허가' 뿐만아니라 '용도변경허가'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바, 이는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G시 건축 조례」 제4조 본문의 '용도변경을 허가' 부분 삭제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삭제) 신고수리 할 수 있다.

4) G시 건축 조례 (2)

조례제명	「G시 건축 조례」
조항	제5조 제1항 제2호
조례내용	제5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위원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에 따라 G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한다.
상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5항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

	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5항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례로 이와 다르게 규정하면 법령에서 시장에게 부여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명권한 또는 위촉권한을 침해할 소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

5) G시 건축 조례 (3)

조례제명	「G시 건축 조례」
조항	제40조 제2항 제3호
조례내용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②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영 제15조제10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면적을 산출할 수 없는 공작물은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3으로 한다. 4.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상위법령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③ 제14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건축법」 제83조제3항은 옹벽등 공작물에 대하여 준용되는 규정을

검토의견	열거하고 있는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80조는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옹벽 등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데 조례에서는 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40조제2항제3호 삭제

6) G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G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2조 제1항
조례내용	제2조(위원회 정수) ①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시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영 제83조제1항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위원 정수에 대해 영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길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수를 정해야 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위원 정수를 조례에 정확히 규정

7) G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G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7조 제2항
조례내용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G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

	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134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대한 특례이므로 법률에 정해야 할 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검사위원의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에 결산 검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8) G시 경관조례

조례제명	「G시 경관조례」
조항	제25조 제1항 본문
조례내용	제25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경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경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나, 조례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규정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함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바, 단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의 상한선을 70명으로 수정

9) G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G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2조 제2항
조례내용	제2조(위원회 구성) ② 위원장은 고용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고로 수정

10) G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G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

	위 등에 관한 조례」
조 항	제12조 제1항 후단
조 례 내 용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 ①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다만, 감리자가 선정되어 있는 공사는 제외한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상 위 법 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 제 유 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 제 점 및 검 토 의 견	상위법령에서 주민감독 대상 공사를 규정하고 있고, 조례로 공사의 종류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필요도 없고, 설령 조례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상위법령과 같게 규정해야지 일부만 규정하던가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 선 방 안 (정 비 방 안)	□ 조례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9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검토하거나 또는 해당 조문을 삭제

11) G시 공공디자인 조례 (1)

조 례 제 명	「G시 공공디자인 조례」
조 항	규정없음
조 례 내 용	규정 없음

상위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조례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함

12) G시 공공디자인 조례 (2)

조례제명	「G시 공공디자인 조례」
조항	규정없음
조례내용	규정 없음
상위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조례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지역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함

13) G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G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7조 제3호 및 제4호
조례내용	제7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박차 시키는 행위 2. 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한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조례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는 각각의 근거 법령에서 금지되는 것으로, 조례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님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3호 및 제4호 삭제

14) G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1)

조례제명	「G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5조
조례내용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

	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조례에서 대강의 사항도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에 위배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공유재산 대장의 서식을 조례에서 정해야 함

15) G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조례제명	「G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31조
조례내용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을 인용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을 인용하여야 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감액의 요건이 변경되었는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대부료의 감면 사유

	및 감면율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16) G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3)

조례제명	「G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34조 제2항
조례내용	제34조(사용・대부료 등의 납기)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100만원 초과 시 년 4회 이내 분납할 수 있으며, 이자는 년 4 퍼센트로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u>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u>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이자의 계산방법이 변경되었으므로 조례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34조(사용・대부료 등의 납기)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100만원 초과 시 년 4회 이내 분납 할 수 있으며, 이자는 <u>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u>

17) G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4)

조례제명	「G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37조 제1항
조례내용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따라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사유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매각대금 분납에 따른 이자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사유 및 이자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8) G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5)

조례제명	「G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62조 제1항
조례내용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100만원 초과시 년 4회 이내 분납 할 수 있으며, 이자는 년 4퍼센트로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

	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변상금의 분할납부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이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이도록 이자 계산 방법이 변경됨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상위 법령의 내용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100만원 초과시 년 4회 이내 분납 할 수 있으며,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로 한다.**

19) G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6)

조례제명	「G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62조의 2
조례내용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연 4퍼센트로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말한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의 반환시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붙이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이도록 이자계산 방법이 변경됨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상위 법령의 내용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로 한다.**

20) G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7)

조례제명	「G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63조 제2항
조례내용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단서로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은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단서로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례에서는 면적과 관계 없이 먼저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함으로써 상위 법령에 위반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에 맞게 면적이 다른 경우에 대하여 단서로 규정하거나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 삭제

21) G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G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항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 4호
조례내용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6조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서류에 대한 제출의무를 각급학교의 장에게 부과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1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삭제 검토

22) G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G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5조 전단
조례내용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상위법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 ②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된다.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위촉직 위원: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삭제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근거 법령인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4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3) G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제명	「G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항	제6조
조례내용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99. 2. 26〉 1. 기금운용계획안(계획변경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안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증진대책을 위한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은 조례 제6조 각 호에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맞게 수정

24) G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G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2조 제2항
조례내용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상위법령	「도로법 시행령」 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②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의 상임이사 중 한국도로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일반국도: 지방국토관리청장 3.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4. 시도·군도·구도: 해당 특별자치시·시·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서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도로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제4호에서 시도·군도·구도: 해당 특별자

	치시·시·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례에서는 부위원장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관리자의 임명권한을 침해할 소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 검토

25) G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G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조항	제16조 제1항
조례내용	제1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ㆍ관리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6〉 1.「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상위법령	「도로명주소법」 제13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①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1.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지점번호 검증자) 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 조례에서는 위탁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및.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만을 규정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에는 위탁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조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영 제17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로 수정 검토

26) G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G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조항	제20조 제1항
조례내용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 ⑦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언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인지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고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고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맞게 개정 □ 조례개정(안)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7) G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3)

조례제명	「G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조항	제20조 제3항
조례내용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시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광고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의무부과 조항인 제13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위탁계약에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28) G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조례제명	「G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 조례」
조항	제7조, 별표2
조례내용	제7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변상금 조정의경 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령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서는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에서 이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면서 점용료 조정산식을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제7조를 수정하고, 별표 2 삭제

29) G시 도시계획 조례 (1)

조례제명	「G시 도시계획 조례」
조항	제48조 제2항
조례내용	제48조(구성 및 운영)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상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30인까지로 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에서는 위원장과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였는데, 조례에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규정한 것은 시장의 임명·위촉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30) G시 도시계획 조례 (2)

조례제명	「G시 도시계획 조례」
조항	제48조 제4항 전단
조례내용	제48조(구성 및 운영)④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회 2년씩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상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②시·군·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시행령 제112조제4항에서는 제111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1조제4항에서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연임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연임제한 부분 삭제

31) G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G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7조제6호
조례내용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수탁자는 센터의 선량한 관리 의무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을 수탁 받은 때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수탁자가 센터의 수탁기간 동안 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6.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

	여서는 아니 된다. 7. 수탁자는 센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집기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G시에 소유권이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소유권 침해 소지가 있어 보임. 조례로 권리의 침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수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하거나 소유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개정 검토

32) G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G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7조
조례내용	제7조(위탁계약 및 기간)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한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두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의 규정만 보면 마치 제한없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것 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 조례개정(안)

(정비방안)	위탁의 형식이 수의계약이라면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하도록 하고, 일반입찰이라면 1회에 한하여서만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거나 해당 조항 삭제 검토

33) G시 물품관리 조례

조례제명	「G시 물품관리 조례」
조항	제27조제1항
조례내용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관서포함)이,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0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법 제90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여 검사자 지명을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검사를 물품관리관이 하도록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맞게 물품관리 검사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

34) G시 보육 조례 (1)

조례제명	「G시 보육 조례」
조항	제4조
조례내용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사업 기본방향 및 정책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및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이용자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 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시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교육훈련시설 지정 및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상위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각 호(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상위법령과 다르게 정하고 있음. ②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삭제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선방안	□ 조례개정(안)

(정비방안)	상위 법령의 재기재에 해당하므로 삭제하거나, 상위 법령의 내용과 같게 수정

35) G시 보육 조례 (2)

조례제명	「G시 보육 조례」
조항	제30조
조례내용	제30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시설운영이 정지, 폐쇄 또는 취소된 때 5. 제25조 위탁의 취소에 해당한 경우
상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8.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8.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런데, 이 조례에 규정된 보조금의 반환 사유는「영유아보육법 」 제40조의 보조금 반환명령 사유와 일치하지 아니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맞게 수정

36) G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제명	「G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항	제6조
조례내용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13조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조례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시장에게 일정사항을 보고 하도록 하는 채권자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

37) G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제명	「G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조항	제2조제3항

조례내용	제2조(구성) 1.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담당 국장 2. 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3. 감정평가사 4. 공인회계사, 세무사 5. 부동산중개업자 6. 그 밖에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
상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4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이 경우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2명 이상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 3항에 따르면,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이 그에 해당함 조례에서는법령과상이하게규정하고있는바가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조례에서는 법령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가 있음.

38) G시 수도급수 조례 (1)

조례제명	「G시 수도급수 조례」
조항	제18조
조례내용	제18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6.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상위법령	「수도법」에 수도사용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인 「수도법」에 수도사용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로 법률의 위임없는 신고의무를 규정할 수는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18조 삭제 검토

39) G시 수도급수 조례 (2)

조례제명	「G시 수도급수 조례」
조항	제23조제2항
조례내용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미고지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①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제4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한 지방자치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주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수도법」 제38조 등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연대책임에 관련하여는 법률에 근거없이 조례로서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항 삭제 검토

40) G시 시세 기본 조례 (1)

조례제명	「G시 시세 기본 조례」
조항	제13조제1항
조례내용	제13조(미납세 등의 열람) ① 미납세(체납세 포함)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64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세기본법」 제64조제1항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의 규정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미납세를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임차인의 가족에 대하여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조례규정에서 상위법규정에 대한 언급없이 임차인의 미납세 열람에 관하여 정하고 있어서 조례 내용의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를 밝혀줄 필요가 있어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단서 조항은 삭제하고, 관련 법규정인 법 제64조제1항을 언급해 주는 것이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41) G시 시세 기본 조례 (2)

조례제명	「G시 시세 기본 조례」
조항	제17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변경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시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제2호에서는 "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와는 달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조례에 따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거나, 존치한다면 "압류한다"로 수정

42) G시 시세 기본 조례 (3)

조례제명	「G시 시세 기본 조례」
조항	제23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	[조례의 내용]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시세

령	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4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세기본법」 제84조에서는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는 재량을 준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조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도 아니함 그런데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반드시 한꺼번에 징수하도록 의무규정을 둔 것은 상위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재량권 박탈이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과 같이 재량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43) G시 시세 조례 (4)

조례제명	「G시 시세 조례」
조항	제17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는 84조에서는 "다만, 해

검토의견	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는 재량을 준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조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도 않은데,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반드시 한꺼번에 징수하도록 의무규정을 둔 것은 상위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한 것은 재량권 박탈이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과 같이 재량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44) G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조례제명	「G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조항	제6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서는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와 다르게 정함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서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최소인원인 5명 이상이 규정되어야 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조례를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할 필요 있음

45) G시 O서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G시 오리서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5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수탁자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수탁자가 귀책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수탁자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될 수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수탁자가 귀책사유 있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등 책임을 부담하거나 □ 조례개정(안)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탁자의 책임범위를 규정하는 것 검토

46) G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1)

조례제명	「G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조항	제2조제1항제2호제3호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하거나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 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제3호에서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 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를 규정함

	[상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7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법령명 개정 동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광고물은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신고서에 제1항 제3호부터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는 첨부하도록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서류 첨부를 제외한 사항을 조례가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고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상위법에도 맞지 아니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 검토, 법령명 개정 반영

47) G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2)

조례제명	「G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조항	제4조제3호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의 하나로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함 [상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단서에

	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즉, 신고만 하거나 신고도 없이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광고내용"에만 한정하는 것이고, 그 밖의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는 그 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그런데 이 조례 제4조제3호는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바, 굳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음. 더불어, 이 조례 제4조제3호를 규정하게 되면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광고내용을 변경은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왜냐하면 이 조례 제4조에서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신고하여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광고내용의 변경은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바, 그렇다면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 검토

48) G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3)

조례제명	「G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조항	제8조제2항제1호가목내지다목제3호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1호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함 가. 당해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당해 지역의 시의회 의원 제3호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례에서는 주민협의회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위원장을 시행령에 따라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위원들(조례에 따르면 위원에는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한 자 이외의 자도 포함됨)이 호선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여 자율관리협정 체결자들이 주민협의회 대표를 선임할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을 선출할 때에는 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는 것으로 개정 검토

49) G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G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12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명 이상의 연서로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37조제1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유통산업발전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50명 이상의 연서"라는 제한이 없어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50명 이상의 연서로"라는 제한을 삭제 검토

50) G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1)

조례제명	「G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항	제3조 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인으로 한다. 1.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2.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3. 임대주택관련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G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4. 소속 공무원 중 당해 업무를 관할하는 국장 [상위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제44조 제1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제44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이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함을 규정함 1. 법학,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이상 2.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1명 이상 3. 「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1명 이상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이상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

	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1명 이상 그러나 이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 상위법령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법령을 재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나, 재기재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해야 함.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제44조 제1항에 맞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51) G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조례제명	「G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항	제3조 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3조(구성)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관할 국장으로 한다. [상위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제44조 제2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부위원장은 업무관할 국장으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법령을 재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나, 재기재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해야 함. 따라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제44조 제2항에 맞게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정함

52) G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3)

조례제명	「G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항	제3조 제3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3조(구성)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상위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제44조 제3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제44조 제3항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례에서는 위원별로 임기가 상이하며, 조례 제3조 제1항 3호의 위원의 경우 3년으로 임기를 정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법령을 재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나, 재기재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해야 함.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제44조 제3항에 맞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

53) G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4)

조례제명	「G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항	제4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4조(기능) 위원회는 분쟁의 당사자간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1. 임대주택의 관리규약에 대한 제정 및 개정과 관련한 분쟁 2. 관리비 운영 및 징수와 관련한 분쟁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분쟁 4.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 5.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분쟁 6.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분쟁 7. 시장이 임대주택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상위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각 호에서 위원회 분쟁조정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동 위원회 분쟁조정 사항을 누락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법령을 재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나, 재기재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해야 함.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에 맞게 개정 검토

54) G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조례제명	「G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조항	제16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1항에서는"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의 경우는 사용기간을 10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고 규정 2항에서는 "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이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기간 만료 후 시장이 유골을 임의처리 할 수 있다"고 규정

	[상위법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근거법령인「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이 개정되어, 분묘의 설치기간이 15년에서 30년으로 변경되었고, 연장부분도 수정되었으므로, 공설장사시설 중 묘지에 관한 부분은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항에 맞게 수정필요

55) G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1)

조례제명	「G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항	제21조제3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8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8항에 따르면,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바, 상위법령에 위임없이 조례에서 상인회에게 변경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56) G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

조례제명	「G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항	제22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이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8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8항에서는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인데, 조례에서 상인회의 지위를 박탈하는 등록취소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상 불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57) G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3)

조례제명	「G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항	제27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市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6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6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상인회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조례에서

	는 상위 법령과 다르게 사전적, 정기적으로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58) G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제명	「G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항	제25조제3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교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함 [상위법령]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로 가산금을 신설할 수 없음. 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그 절차를 따른 다는 의미이지 가산금과 같은 실체적 규정까지 따르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가□ 조례개정(안) 산금 규정 삭제

59) G시 주택 조례

조례제명	「G시 주택 조례」
조항	제18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함

	[상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주택지원 업무 담당국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2항과 같이 규정하고, 위원회의 위원으로 주택지원 업무 담당국장이 포함되어야 함

60) G시 지역정보화 조례

조례제명	「G시 지역정보화 조례」
조항	제8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정보화책임관은 시민안전국장이 된다고 규정 [상위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제1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정보화책임관을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소속 과장이 된다고 규정하여, 구청장의 정보화책임관 임명권한을 침해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재기재에 해당하므로 삭제하거나, 상위 법령의 내용과 같게 수정

61) G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G시지적재조사에 관한 조례」

조 항	제7조제4항
조 례 내 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됨. 다만, 제3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음.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한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G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상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4항
문 제 유 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 제 점 및 검 토 의 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4항에서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을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개 선 방 안	□ 조례개정(안)

(정비방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

62) G시하수도사용조례

조례제명	「G시하수도사용조례」
조항	제6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상위법령] 「하수도법」 제24조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인데, 조례에서는 법령의 위임 없이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검토

63) G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조례제명	「G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
조항	제8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 등 변경이 있을 때, 관리자를 지정·해임하거나 변경한 때, 문화유산이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 향토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문화재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향토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하여 소유자 등의 신고 의무를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위반 소지가 있음 * 「문화재보호법」 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으나, 시군구의 장이 관련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발견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또는 권고사항으로 변경 검토

64) G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G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항	제1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이 조례는 G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G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차량중심의 교통환경에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해당 조례는 2004 . 11. 02. 시행된 조례로서, 이와 관련한 상위법령이 없었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2. 2. 22.에 제정되었음. 이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및 조성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

	었고, 각종 범죄 및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공사 등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할 경우 보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안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조례 제1조(목적)에「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함을 규정하고, 조례 전체 내용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도록 조례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65) G시 시세 감면 조례

조례제명	「G시 시세 감면 조례」
조항	제13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직접사용이란 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조례 제11조에서는 "직접사용의 의미"라는 제명하에 직접사용의 범위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조례에서 이미 상위법령에서 정의한 용어에 대해 다른 의미로 정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조례의 해당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해석규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에 대하여 조례에서 다시 그 용어를 해석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

66) G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조례제명	「G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조항	제17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 [상위법령]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는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의 표시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8호에서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 조례에서 시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규칙 또는 훈령, 예규, 고시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

67) G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조례제명	「G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조항	제23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자연 및 인적재난 상황보고 보고방법에서 재난 상황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전언 통신문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자연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자연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제2호에 따르면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으로, "전언통신문"은 "전화"로 변경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으로, "전언통신문"은 "전화"로 변경

68) G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제명	「G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항	제6조,제8조,제9조,제10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인정시장의 기준,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취소에 관하여 규정함.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12.12.11.)되어,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이 없어지고 전통시장이라는 개념만 남아 있는데, 조례에서는 여전히 인정시장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법률의 위임 없이 인정시장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인정시장이라는 용어를 전통시장으로 변경하고 상위변경에 맞게 전면 수정

69) G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제명	「G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조항	제17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 1.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자유발명의 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4. 시유특허권의 관리·처분 및 지급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상위법령] 「발명진흥법」 제2조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발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개인발명"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더 적절함. 개정 전 법률에서는 자유발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인정시장이라는 개인발명으로 개정

70) G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G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항	제5조제4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에서는 위원장은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인정시장이라는 임명직 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장 모두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 검토

8. H 시

1) H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H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항	제24조제2항
조례내용	제24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②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있다. 이경우 「국세징수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가산금 선정에 이를 준용한다.
상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등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가산금은 금전납무의무를 지체한 경우에 이를 강제징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인정시장이라는 해당 조문 삭제

2) H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H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항	제24조제3항

조례내용	시장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징수 하는 것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할 수 없을 것인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인정시장이라는 해당 조문 삭제

3) H시 건축 조례 (1)

조례제명	「H시 건축 조례」
조항	제7조의4제2항
조례내용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한 사항과 조례에서 생략하도록 한 사항이 상이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인정시장이라는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4) H시 건축 조례 (2)

조례제명	「H시 건축 조례」
조항	제30조
조례내용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2개 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②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의 반대쪽에 공원, 하천, 시설녹지, 유수지, 공공공지 등 이와 유사한 건축이 금지되는 공지가 있는 경우 도로의 너비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포함한다
상위법령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삭제 <2015.5.18.>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도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하도록 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전면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허용용적률로 개발이 어렵고 건축물의 외관이 계단(사선)형으로 건축되어 도시미관에 저해됨에 따라, 「건축법」 제60조제3항이 삭제되고, 「건축법」 의 개정(법률 제13325호, 2015.5.18. 공포, 시행)되었으므로, 조례에서도 개정 법률의 취치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검토

5) H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H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항	제3조
조례내용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①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①항에서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함을 2014.12.30.에 개정하였으나 조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에 맞게 수정

6) H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H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2조
조례내용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한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영 제83조제1항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위원 정수에 대해 영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길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수를 정해야 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위원 정수를 조례에 정확히 규정

7) H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H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7조제2항
조례내용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134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대한 특례이므로 법률에 정해야 할 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검사위원의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에 결산 검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 검토

8) H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1)

조례제명	「H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
조항	제3조 제2항
조례내용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보한다

상위법령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에서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부시장을 관리자로 정하는 것은 시장의 임명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 검토

9) H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2)

조례제명	「H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
조항	제13조
조례내용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하여야 한다 1. 해당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상위법령	「지방공기업법」 제27조(수입금 마련 지출)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27조에서는 수입금 마련 지출은 선지출 후 보고로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과 맞지 않음 또한, 법 제27조에서는 수입금 마련 지출의 요건으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이보

	다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 검토

10) H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1)

조례제명	「H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6조
조례내용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대강의 사항도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공유재산 대장의 서식에 대한 대강의 사항은 조례에서 정해야 함

11) H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조례제명	「H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32조 제1항
조례내용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감액의 요건이 변경되었는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대부료의 감면 사유 및 감면율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12) H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3)

조례제명	「H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35조 제2항
조례내용	제34조(사용・대부료 등의 납기)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100만원 초과 시 년 4회 이내 분납할 수 있으며, 이자는 년 4 퍼센트로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

	부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이자의 계산방법이 변경되었으므로 조례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맞추어 이자율 수정 필요

13) H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4)

조례제명	「H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38조 제1항
조례내용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따라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

	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사유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매각대금 분납에 따른 이자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사유 및 이자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14) H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4)

조례제명	「H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61조제1항
조례내용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100만원 초과시 년 4회 이내 분납 할 수

	있으며, 이자는 년 4퍼센트로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변상금의 분할납부 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이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이도록 이자계산 방법이 변경됨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상위 법령의 내용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15) H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5)

조례제명	「H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61조의2
조례내용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연 4퍼센트로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말한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의 반환시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붙이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이도록 이자계산 방법이 변경됨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상위 법령의 내용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맞추어 이자율 수정 필요

16) H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6)

조례제명	「H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62조 제2항
조례내용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단서로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은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단서로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례에서는 면적과 관계 없이 먼저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함으로써 상위 법령에 위반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에 맞게 면적이 다른 경우에 대하여 단서로 규정하거나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 삭제

17) H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제명	「H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항	제2조
조례내용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상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공중화장실등"의 범위에 "간이화장실"도 포함되나 이 조례에는 빠져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법령을 재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나, 재기재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해야 함. 따라서 기존 내용을 다음과 같

	이 수정: 이 조례에서“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18) H시 H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H시 H미래비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3조 제1항
조례내용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性)이 100분의 60이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바, 단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법령 내용의 재기재이므로 삭제하거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수정

19) H시 H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제명	「H시 H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 항	제7조
조 례 내 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 위 법 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문 제 유 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 제 점 및 검 토 의 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바, 단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 선 방 안 (정 비 방 안)	□ 조례개정(안) 법령 내용의 재기재이므로 삭제하거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수정

20) H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 례 제 명	「H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 항	제5조
조 례 내 용	보조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1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신설 2008.5.30) 2.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3.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4. 학교교육 정보화 사업 5. 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7. 유치원 관련 지원사업 (신설 2015.11.13.) 8.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상 위 법 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특별시·광

	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 규정된 보조사업의 범위가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과 같은 내용을 조례에서 중복기재할 필요가 없으나 기재하는 경우에는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하여야 하므로 상위법령에 맞춰 수정

21) H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H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항	제6조
조례내용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은 사업실적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하되,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

	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하되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도 상위법령과 마찬가지로 재위탁시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또한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심의를 거쳐 재위탁여부를 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위탁기간 수정

22) H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H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3조 제2항
조례내용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상위법령	「도로법 시행령」 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②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의 상임이사 중 한국도로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일반국도: 지방국토관리청장 3.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4. 시도·군도·구도: 해당 특별자치시·시·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도로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서는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부위원장을 건설과장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관리자의 임명권한을 침해할 소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 검토

23) H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H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3조 제3항
조례내용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을 포함한다)은 담당직위 또는 직책명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도로굴착사업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3. 도로 및 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상위법령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도로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서는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 직원 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관리심의회의 위원으로 하고, 이 중 3.~5.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데, 상위법

	령과 일치하지 아니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도로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맞게 규정함

24) H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제명	「H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항	제7조, 별표 제2호 서식
조례내용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상위법령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서는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제7조를 수정하고, 별표 2 삭제

25) H시 도시계획 조례

조례제명	「H시 도시계획 조례」
조항	제62조 제2항
조례내용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다
상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30인까지로 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에서는 위원장과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였는데, 조례에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규정한 것은 시장의 임명·위촉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26) H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H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조항	제17조 제4항
조례내용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어느 한 성(性)의 비율이 7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령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바, 단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7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를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수정

27) H시 물품관리 조례 (1)

조례제명	「H시 물품관리 조례」
조항	제17조제4항
조례내용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감정평가사에 대한 부분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 수정

28) H시 물품관리 조례 (2)

조례제명	「H시 물품관리 조례」
조항	제27조제1항
조례내용	영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청·포함)이 그 밖에 청·소의 경우에는 청·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법 제90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여 검사자 지명을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검사를 물품관리관이나 청·소의 장이 하도록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맞게 물품관리 검사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

29) H시 보육 조례 (1)

조례제명	「H시 보육 조례」
조항	제3조제1항
조례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련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 관련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 관련 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 관련 사항 5.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상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1항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두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구체적으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49조의3 및 이 영 제25조의7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동 위원회 심의사항을 누락하거나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동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위원회 기능을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던가, 아니면 상위법령의 재기재이므로 삭제 검토

30) H시 보육 조례 (2)

조례제명	「H시 보육 조례」
조항	제17조 제4항
조례내용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어느 한 성(性)의 비율이 7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령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바, 단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7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를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수정

31) H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제명	「H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조항	제6조
조례내용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13조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조례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시장에게 일정사항을 보고 하도록 하는 채권자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

32) H시 상수도 급수 조례 (1)

조례제명	「H시 상수도 급수 조례」
조항	제18조
조례내용	급수사용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시설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7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상위법령	**「수도법」**에 수도사용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인 「수도법」에 수도사용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바, 조례로 법률의 위임없는 신고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33) H시 상수도 급수 조례 (2)

조례제명	「H시 상수도 급수 조례」
조항	제23조제2항
조례내용	급수사용자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상위법령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수도법」 제38조 등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연대책임에 관련하여는 법률에 근거없이 조례로서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34) H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제명	「H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항	제5조
조례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 3.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의2. 4. 주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8.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에서 정한 사업 9.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필요경비 10.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상위법령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식품진흥기금의 용도 및 사업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조례에서 추가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용도를 벗어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는데 이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거나, 상위법령에 있는 규정이므로 삭제 검토

35) H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조례제명	「H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조항	제4조제3호
조례내용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상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 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즉, 신고만 하거나 신고도 없이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광고내용"에만 한정하는 것이고, 그 밖의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는 그 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그런데 이 조례 제4조제3호는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바, 굳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음. 더불어, 이 조례 제4조제3호를 규정하게 되면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광고내용을 변경은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왜냐하면 이 조례 제4조에서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신고하여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광고내용의 변경은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바, 그렇다면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4조제3하 삭제

36) H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조례제명	「H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조항	제13조제1항
조례내용	지역자율방재단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법률의 근거 없이 단장, 임원 및 단원에 교육 수강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단원 등에게 교육을 들을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37) H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1)

조례제명	「H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항	제3조제1항
조례내용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상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례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정한 내용과 다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맞게 수정

38) H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조례제명	「H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항	제3조제3항
조례내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시 장애인 관련 업무 과장 3. 시 의회 추천 시의원 4. 장애인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상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는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맞게 수정

39) H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조례제명	「H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조항	조례전체
조례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을 '인적재난'으로 정의, 다수 규정에서 인적재난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상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이 개정되면서 해당 재난을 '사회재난'이라고 하면서 종전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을 사회재난에 포함시키고 있음 이러한 상위법령의 정의규정 개정에 맞추어서 조례상의 용어도 전체적으로 개정해 주어야 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인적재난 을 '사회재난'으로 수정

40) H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H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6조제5항
조례내용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상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5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

	자의 남은 임기로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41) H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H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13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등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장에게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조례에서 제출시한을 상위법령과 달 "영업시작하기 30일 전"으로 규정하여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42) H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1)

조례제명	「H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항	제2조제3호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

	으로 점포의 밀집 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1. '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규정됨 2.「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제5조에 따르면, '가로 또는 지하도의 너비'가2 천㎡이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건축물의 점유토지면적합계'가 2천㎡로 규정되어 있는바,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의할 필요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인용조문 수정 및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 수정

43) H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

조례제명	「H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항	제11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상인회 등록사항 중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의 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에 제출하여야 함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8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8항에 따르면,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바, 상위법령에 위임없이 조례에서 상인회에게 변경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44) H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3)

조례제명	「H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항	제12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상인회의 등록취소에 대해 규정함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8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등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장에게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조례에서 제출시한을 상위법령과 달리 "영업시작하기 30일 전"으로 규정하여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45) H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4)

조례제명	「H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항	제14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 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인회에 대한 서류 비치, 관리 의무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새로운 의무로 볼 소지가 있고, 특히 총회 회의록 및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10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장기로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인회에 대한 서류 비치, 관리 의무 부과를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 필요

46) H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5)

조례제명	「H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항	제16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상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6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6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르면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인데, 이 조례에서는 상인회에게 시장에 대한 정기적, 사전적인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47) H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6)

조례제명	「H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항	제16조제2항
조례내용	[조례의 내용]

및 상위법령	상인회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1. 법 제11조 내지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 내지 제29조에 따른 보조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상인회가 포함됨)가 이 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소기업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지원여부를 고려함이 없이 모든 상인회에게 자료제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도 10일 이내로 하여 상위 법령과 다르며, 대상 자료도 상위 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

48) H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7)

조례제명	「H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항	제18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4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4항에서는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인데, 조례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지정취소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상 불비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49) H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H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항	제10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민법」 제750조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비록 수탁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에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모든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 수탁자에게만 책임지도록 규정하는 것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칙을 조례로 두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검토

50) H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제명	「H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항	제2조ㄴ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H시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와 경기도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 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6. 주차 목적의 도로 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7.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8. 불법 주·정차 및 버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9.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10. 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 11. 이행강제금 12. 그 밖의 잡수입 [상위법령]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으로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한다) 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과 다르게 세입을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춰 수정

51) H시 주택 조례

조례제명	「H시 주택 조례」
조항	제16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에서는 위원장을 직접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원장 지명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

52) H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제명	「H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항	제2조제3항제3호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원으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규정함 [상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에 따르면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르면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 법령에서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는 대상을 정해 놓았는데 조례에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 검토

53) H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제명	「H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항	제20조제2항전단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해야 하는 사유로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에서는 규정 제2호와 제3호의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1호의 "임신, 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을 재직기간 산입 사유에서 누락하여, 임신, 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해 휴직한 공무원은 휴직기간만큼 연가일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바, 규정 제1호 사유를 추가하여 해당 내용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규정해야 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조례 제2항 전단에 "임신, 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을 추가하여 휴직자의 연가일수 계산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정 검토

54) H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

조례제명	「H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항	제4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지방보조금 대상 사업으로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를 규정하고 있음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조례는 대상사업으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각호를 그대로 규정하였으나 제3호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가 누락되어 있는바, 법령의 사유와 조례의 사유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상위법령에 반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대상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를 추가 검토

55) H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조례제명	「H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항	제21조제4항
조례내용	[조례의 내용]

및 상위법령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H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는 법령이 정한 사유를 벗어난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 검토

56) H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3)

조례제명	「H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항	제29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1.「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에서는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시장이 의무적으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상위법령이 인정한 시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음 2. 조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결정취소의 사유 외에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 교부결정이 취소된 사유도 보조금 교부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서, 상위법령보다 주민의 권리를 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1. 상위법령에 맞게 보조금 교부 제한 결정에 시장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2.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례의 보조금 교부 제한 사유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

57) H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제명	「H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항	제8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름 [상위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장에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관련 규정을 이미 규정하고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다른 내용이 조례에 규정되고 있는 부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반영할 필요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검토

58) H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조례제명	「H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
조항	제8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과장이 된다고 규정 [상위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제1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정보화책임관을 정보화부서의 과장이 된다고 규정하여, 시장의 정보화책임관 임명권한을 침해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시장이 임명하도록 수정

59) H시 하수도 사용 조례 (1)

조례제명	「H시 하수도 사용 조례」
조항	제6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상위법령] 「하수도법」 제24조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인데, 조례에서는 법령의 위임 없이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 검토

60) H시 하수도 사용 조례 (2)

조례제명	「H시 하수도 사용 조례」
조항	제27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 [상위법령] 「하수도법」 제73조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하수도법」 제73조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이는 체납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보아야지 「지방세기본법」 상 실체적인 사항을 준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대판 82누120, 법제처 의견제시 제12-0271 등), 가산금은 금전납무의무를 지체한 경우에 이를 강제징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하수도법」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61) H시 물품관리 조례

조례제명	「H시 물품관리 조례」
조항	제28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8조제3항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8조제3항에서는 물품 취득 시 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하도록 규정하여, 검수자 지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조례에서 물품출납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조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8조제3항에 맞게 물품취득 시의 검수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명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

62) H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제명	「H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조항	제7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대면회의(화상회의 포함)를 특성으로 하는 위원회제도에 있어서 서면회의는 예외적인 경우로 하는 것이 타당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등을 참고하여 서면회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

63) H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H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항	제11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육성계획에 따라 H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및 제5조의2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장이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으로 수정

64) H시 에너지 기본 조례

조례제명	「H시 에너지 기본 조례」
조항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제2항제3호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조례에서 '신·재생에너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상위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개정(2013. 7. 30)으로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분리하여 정의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수정

65) H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제명	「H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항	제4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2007. 5. 17)에 따라 "본적"이 "등록기준지"로 개정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수정

66) H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1)

조례제명	「H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 항	제2조
조 례 내 용 및 상 위 법 령	[조례의 내용] 주민의 정의에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포함시킴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12조
문 제 유 형	⑤ 기타
문 제 점 및 검 토 의 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주민에 대해 상위법령과 다른 별도 정의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아니하고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개 선 방 안 (정 비 방 안)	□ 조례개정(안) 조례에서 주민의 정의를 두지 않도록 함. 다만, 개별 조항에서 예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가능할 것임

67) H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2)

조 례 제 명	「H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 항	제19조제1호
조 례 내 용 및 상 위 법 령	[조례의 내용]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위촉위원의 위촉을 해제하도록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문 제 유 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위촉위원은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2. 동별 지역회의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주민 3. 시장이 추천하는 시정관련 전문가 4.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드시 H시 주민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타 지역으로 주소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를 해촉사유에서 삭제하거나 제10조제2항의 위원 요건 규정에서 H시 주민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도록 함

68) H시 주민투표 조례

조례제명	「H시 주민투표 조례」
조항	제10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주민투표법」 제12조제3항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주민투표법」 제12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청구서 등이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 등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열람기간은 7일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 시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님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법률에 따라 열람기간을 7일로 규정

69) H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제명	「H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항	제9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운영세칙)에는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배치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에 맞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수정 검토

70) H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제명	「H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항	제2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H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은 H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에서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에서 두도록 한 위원회는 그 명칭과 역할을 조례로 변경하거나 통합할 수 없음(법제처 해석례 09-0395 참조) 따라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각각

	설치, 운영하여야 함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일정한 경우 조례로 다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회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경우는 그런 문구가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분리하여 각각 두는 것 검토

9. I 시

1) I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제명	「I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항	제14조제3항
조례내용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징수 하는 것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할 수 없을 것인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2) I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I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항	제9조제1항
조례내용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상위법령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6.7.>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각 호에서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추어 수정

3) I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I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항	제3조
조례내용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

	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항에서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함을 2014.12.30.에 개정하였으나 조례에서는 "시설물의 지붕"에 관한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에 대한 내용 추가

4) I시 건축조례 (1)

조례제명	「I시 건축조례」
조항	제6조제1항
조례내용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7.31., 2016. 7. 13.>
상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19.>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3항에 따르면,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동 위원회 위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동 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상위법령에 따르면 지차단체장은 최대 150명의 위원으로 동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조례에서 위원의 상한을 상위법령보다 낮게 규정하여 결국 시장은 동 위원회 위원을 최대 50명으로만 구성할 수 밖에 없는바, 이는 법령에서 부여된 시장의 위원회 구성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의 상한선을 150명으로 수정

5) I시 건축조례 (2)

조례제명	「I시 건축조례」
조항	제6조제2항
조례내용	제6조(위원회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위원은 어느 한쪽 성(性)이 전체위원 구성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5항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반할 뿐 아니라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5항에 맞게 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

6) I시 건축조례 (3)

조례제명	「I시 건축조례」

조 항	제22조제2항제2호
조 례 내 용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대행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 한다.<개정 2016. 7. 13.> 2. 제1항제4호에 따른 업무대행은 해당 공사의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I시 관내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로 한다.<개정 2016. 7. 13.>
상 위 법 령	「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문 제 유 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 제 점 및 검 토 의 견	「건축법」 제27조에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할 수 있는 건축사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현장조사 등을 대행할 수 있는 건축사의 요건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한데, 조례에서는 대행할 수 있는 건축사의 요건으로 I시 관내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할 수있는 건축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반할 소지가 있음
개 선 방 안 (정 비 방 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7) I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조 례 제 명	「I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 항	제2조

조례내용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한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이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하)하고 있을 뿐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검사위원의 구체적인 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검사위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함

8) I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I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7조제2항
조례내용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134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대한 특례이므로 법률에 정해야 할 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검사위원의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에 결산 검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9) I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I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3조제3항
조례내용	제3조(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I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동장
상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⑤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5항에에 따르면,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위원을 규정하고 있음 1 해당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재기재에 해당하므로 삭제하거나, 상위 법령의 내용과 같게 수정

10) I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I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4조
조례내용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상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⑥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그 밖에 시·군·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6항에 따르면,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르면, 그 밖에 시·군·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시항은 조례로 정하는바, 상위법에서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이와 달리 규정할 수 없는데도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이는 상위법령에 위반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연임 관련 부분 삭제)

11) I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I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4조제1항
조례내용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을 말하며,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13.>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의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법 제32조제1항제3호가 누락되었고, 상위법령과도 상이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3호 추가하거나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재기재에 불과하므로 삭제 검토

12) I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1)

조례제명	「I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조항	제26조 제1항
조례내용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

	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 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 삭제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법률에서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의적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나 해당 조례에서는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따라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

13) I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2)

조례제명	「I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조항	제32조

조례내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감액의 요건이 변경되었는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대부료의 감면 사유 및 감면율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14) I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3)

조례제명	「I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조항	제35조제2항
조례내용	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4.12.29.> 2.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나누어 납부 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나누어 납부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이자의 계산방법이 변경되었으므로 조례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15) I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4)

조례제명	「I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조항	제38조제1항
조례내용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 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

	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사유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매각대금 분납에 따른 이자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사유 및 이자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16) I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5)

조례제명	「I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조항	제62조제1항
조례내용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연 4퍼센트

	의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100만원초과:1년4회이내분납 3.200만원초과:2년8회이내분납 4.300만원초과:3년12회이내분납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변상금의 분할납부 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이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이도록 이자계산 방법이 변경됨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상위 법령의 내용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17) I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6)

조례제명	「I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조항	제63조
조례내용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 4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말한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의 반환시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붙이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이도록 이자계산 방법이 변경됨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상위 법령의 내용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18) I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7)

조례제명	「I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조항	제64조제2항
조례내용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② 보상금은 은닉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단서로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은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례에서는 면적과 관계 없이 먼저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함으로써 상위 법령에 위반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에 맞게 신고면적이 다른 경우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단서로 규정하든지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이 조례에서는 삭제 검토

19) I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I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항	제3조
조례내용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⑥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고,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보조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도 없는데, 이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 규정된 보조사업의 범위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하거나 상위법령의 재기재에 해당하므로 해당 규정 삭제 검토

20) I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I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5조
조례내용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상위법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 ②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된다.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위촉직 위원: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삭제 <2015.1.6>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근거 법령인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에서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임에 대한 제

	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

21) I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 I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항	제13조제2항
조례내용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때에 명예수당을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징수 하는 것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할 수 없을 것인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항 삭제 검토

22) I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제명	「I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조항	제4조제1항본문
조례내용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 한다
상위법령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하거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내용과 같이 "60퍼센트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수정 검토

23) I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

조례제명	「I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11조제5호
조례내용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수탁자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으로 시의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부가적 수익금과 후원금품 등의 재산을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개축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한다. 6.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3호), 기부자가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 곤란, 불필요 및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도록 요건을 정하고 있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 이처럼 기부채납은 기부하는 자의 기부의사와 기부받는 자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임에도 이 조례에서는 기부받는 자가 오히려 기부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이며, 이는 법령의 근거 없는 의무부과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기부채납을 강제하지 않도록 삭제 또는 수정 검토

24) I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조례제명	「I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12조
조례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운영을 정지 또는 해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피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수탁자가 제4조제3항에 따른 목적·기준 및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수탁자가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에 문제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8.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사유(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일치하지 아니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원칙적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은 조례에 다시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례에서 취소사유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재할 경우에는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 검토

25) I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I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조항	제16조제1항각호
조례내용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법에 의하여 설치 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지방공기업법상의지방공사·공단 2.최근3년이내공공기관에서발주한도로명주소시설의설치또는유지관리 실적이있는업체
상위법령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7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1.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지점번호 검증자) 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 조례에서는 위탁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및.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만을 규정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에는 위탁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조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영 제17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로 수정 검토

26) I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I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조항	제20조제1항
조례내용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고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고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는 이와 다르게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

27) I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3)

조례제명	「I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조항	제20조제3항
조례내용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시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법률의 근거 없이 광고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부당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하거나 행정 실제에서 시안 작성 후 시장과 협의 확정할 정책적 필요가 있으면 이를 의무화 하기 보다는 권고하는 방향으로 개정 검토

28) I시 도로점용 및 점용료 징수조례

조례제명	「I시 도로점용 및 점용료 징수조례」
조항	제5조
조례내용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별표 2의 점용료조성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상위법령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이 개정되어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고 정액으로 규정함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의 개정 전 규정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이며 개정에 따라 별표 4가 삭제되었으므로 개정 전 규정에 맞추어 규정한 조례 제5조를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수정하고 별표 2는 삭제하여야 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내용 수정하고 별표 2 삭제

29) I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I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조 항	제6조제3항
조 례 내 용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재해보험 등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상 위 법 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 제 유 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 제 점 및 검 토 의 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나, 동 내용은 법률의 위임이 없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임
개 선 방 안 (정 비 방 안)	□ 조례개정(안) 삭제 검토

30) I시 물품관리조례

조 례 제 명	「I시 물품관리조례」
조 항	제14조제4항
조 례 내 용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영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상 위 법 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문 제 유 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 제 점 및 검 토 의 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2015. 2. 16>으로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법인을 포함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으므로,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볼때 불일치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 수정

31) I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제명	「I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항	제6조
조례내용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경과 후 1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법률에서는 시장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자에게 시장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검토

32) I시 수도 급수조례 (1)

조례제명	「I시 수도 급수조례 」
조항	제20조제1항
조례내용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경우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경우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경우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6. 수도사용자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7.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었을 경우 8. 제30조제3항에 따른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인 「수도법」에 수도사용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로 법률의 위임없는 신고의무를 규정할 수는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 검토

33) I시 수도 급수조례 (2)

조례제명	「I시 수도 급수조례 」
조항	제26조제2항
조례내용	제26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이하“수도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상위법령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수도법」 제38조 등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연대책임에 관련하여는 법률에 근거없이 조례로서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 검토

34) I시 시세 기본 조례 (1)

조례제명	「I시 시세 기본 조례」
조항	제7조제1항
조례내용	납세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기한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에 맞게 원칙적으로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예외적으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례 수정

35) I시 시세 기본 조례 (2)

조례제명	「I시 시세 기본 조례」
조항	제13조제1항 단서
조례내용	법 제64조에 따른 미납시세(체납세 포함)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64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해당 조례의 규정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미납세를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임차인의 가족에 대하여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단서 삭제

36) I시 시세 기본 조례 (3)

조례제명	「I시 시세 기본 조례」
조항	제17조
조례내용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변경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시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91조 ① 2.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조례에서는 이와는 달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법에 있는 내용이므로 조례에 따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거나, 존치한다면 "압류한다"로 수정

37) I시 시세 기본 조례 (4)

조례제명	「I시 시세 기본 조례」
조항	제23조
조례내용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시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4조 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세기본법」 제84조에서는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는 재량을 준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조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도 아니함 그런데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반드시 한꺼번에 징수하도록 의무규정을 둔 것은 상위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굳이 조례에 중복하지 않았도 되나, 존치한다면 "압류한다"로 수정

38) I시 영유아 보육 조례 (1)

조례제명	「I시 영유아 보육 조례」
조항	제4조
조례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13.> 2. 시립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13.> 3. 삭제 <2016. 7. 13.> 4. 삭제 <2016. 7. 13.>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와 필요경비 등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6. 7. 13.> 7. 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 또는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상위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12.6.29.>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9.15.> 8. 삭제 <2012.6.29.>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11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에서 심의사항으로 정하여 놓은 사항 중 일부가 조례에 누락되어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거나, 상위 법령의 재기재에 해당하므로 삭제 검토

39) I시 영유아 보육 조례 (2)

조례제명	「I시 영유아 보육 조례」
조항	제14조제1항
조례내용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뿐만아니라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해야 하는 지역으로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뿐만아니라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2013. 8. 13. 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

40) I시 영유아 보육 조례 (4)

조례제명	「I시 영유아 보육 조례」
조항	제16조제1항 단서
조례내용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개인에게 위탁하여는 경우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거나 조례로 제한에 관하여 위임하고 있지 않은데, 조례에서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장이 되어 직접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단서 삭제

41) I시 영유아 보육 조례 (5)

조례제명	「I시 영유아 보육 조례」
조항	제21조제4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	[조례의 내용]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

령	조에 해당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 받았을 때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제18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상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4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4항에서는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 취소사유와 다른 취소사유를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어린이집 위탁취소사유를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호의 사유와 같도록 규정 같도록 규정하거나 상위 법령의 재기재에 해당하므로 삭제 검토

42) I시 영유아 보육 조례 (6)

조례제명	「I시 영유아 보육 조례」
조항	제26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 1. 보육소관 장관이 정한 사업비 및 도지사가 정한 사업비 <개정 2012.8.10.> 2. 삭제 <2016. 7. 13.> 3. 삭제 <2016. 7. 13.> 4. 특수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 <개정 2012.8.10.> 5. 삭제 <2016. 7. 13.> 6.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개정 2012.8.10.> 7. 평가인증시설지원 8.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 9. 기타 시가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상위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는 어린이집 등에 보조하는 비용으로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조례에서는 상위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보조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조례에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개선방안	□ 조례개정(안)

(정비방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

43) I시 영유아 보육 조례 (7)

조례제명	「I시 영유아 보육 조례」
조항	제29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 1. 사업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상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8.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런데, 이 조례에 규정된 보조금의 반환 사유는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보조금 반환명령 사유와 일치하지 아니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

44) I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1)

조례제명	「I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조항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 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 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상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다만,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서는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시행령 제7조제1항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 대상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제출을 면제하도록 규정할 수 있지만, "신고" 대상은 조례로 제출서류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 없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례의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광고물은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으로서, 서류나 도서 일부의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는 이를 서류제출이 면제되는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45) I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2)

조례제명	「I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조항	제4조제3호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 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상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토의견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즉, 신고만 하거나 신고도 없이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광고내용"에만 한정하는 것이고, 그 밖의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는 그 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그런데 이 조례 제4조제3호는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바, 굳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음. 이 조례 제4조제3호를 규정하게 되면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광고내용을 변경은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46) I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3)

조례제명	「I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조항	제8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 [상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

	하는 자"는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조례에서는 주민협의회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위원장을 시행령에 따라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위원들(조례에 따르면 위원에는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한 자 이외의 자도 포함됨)이 호선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여 자율관리협정 체결자들이 주민협의회 대표를 선임할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주□ **조례개정(안)** 민협의회의 위원장을 선출할 때에는 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는 것으로 개정

47) I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제명	「I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항	제16조의2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5년 단위로 3회만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근거법령인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개정되어, 설치기간이 15년에서 30년으로 변경되었고,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도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도록 바뀌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맞게 수정 필요

48) I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1)

조례제명	「I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조 항	제18조
조 례 내 용 및 상 위 법 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 <개정 2016.4.11.>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개정 2016.4.11.> 2. 임시시장 개설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개정 2016.4.11.>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3항
문 제 유 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 제 점 및 검 토 의 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서는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인데, 조례에서 취소와 같은 불이익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상 불비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음
개 선 방 안 (정 비 방 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49) I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2)

조 례 제 명	「I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조 항	제26조제1항
조 례 내 용 및 상 위 법 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8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8항에서는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인데, 조례에서 상인회의 지위를 박탈하는 등록취소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상 불비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50) I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3)

조례제명	「I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조항	제30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6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6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상인회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과 다르게 사전적, 정기적으로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51) I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4)

조례제명	「I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조항	제30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상인회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1. 법 제11조 내지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 내지 제29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상인회가 포함됨)가 이 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소기업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지원여부를 고려함이 없이 모든 상인회에게 자료제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도 10일 이내로 하여 상위 법령과 다르며, 대상 자료도 상위 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이 내용에 맞게 수정

52) I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5)

조례제명	「I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조 항	제33조
조 례 내 용 및 상 위 법 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만,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4항
문 제 유 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 제 점 및 검 토 의 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4항에서는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인데, 조례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지정취소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상 불비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음
개 선 방 안 (정 비 방 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53) I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조 례 제 명	「I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조 항	제17조제2항
조 례 내 용 및 상 위 법 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2월말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s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근거 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해당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이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출시기가 상위법령과 다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근거 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맞게 수정

54) I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제명	「I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항	제21조제4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르면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수 있고,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이 조례 제26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미제출"은 동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반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55) I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I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4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I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례 제4조제2항은 상위법령과 달리 단장의 선출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맞게 단장은 단원이 호선하도록 규정

56) I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I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하고(제2항),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법률의 근거 없이 단장, 임원 및 단원에 교육 수강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항 삭제 검토

57) I시 하수도 사용조례 (1)

조례제명	「I시 하수도 사용조례」
조항	제5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상위법령] 「하수도법」 제27조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하수도법」 제27조에서는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배수설비의 설치 및 공공하수도의 사용만으로 신고의무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법령에 없는 의무사항을 신설하였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항 삭제 검토

58) I시 하수도 사용조례 (2)

조례제명	「I시 하수도 사용조례」
조항	제8조 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상위법령] 「하수도법」 제24조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인데, 조례에서는 법령의 위임 없이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59) I시 하수도 사용조례 (3)

조례제명	「I시 하수도 사용조례」
조항	제27조 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함 [상위법령] 「하수도법」 제73조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하수도법」 제73조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검토의견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체납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보아야지 「지방세기본법」 상 실체적인 사항을 준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대판 82누120, 법제처 의견제시 제12-0271 등), 가산금은 금전납무의무를 지체한 경우에 이를 강제징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하수도법」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60) I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조례제명	「I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조항	제2조 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업무 주관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의 장·사업소장은 이를 시장의 명의로 입법예고 하여야 하며,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의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위법령]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입법예고는 법상 의무사항이고, 그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서 이와 달리 규정할 수는 없음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하거나 상위법령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

61) I시주택조례

조례제명	「I시주택조례」
조항	제16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고 규정 1.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4.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5.I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6.기타 시장이 주택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상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1. 해당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위원회 위원을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

62) I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I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4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원회가 자문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자문에 대한 내용은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자문을 '심의'로 수정

63) I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I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6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자문에 대한 내용은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자문에 관한 내용 삭제

64) I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I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2조제4호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흡연장소”란 도시공원 등 광범위한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로 별도의 담배연기 배출시설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아동복지법」 제6조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동 조례 제6조제3항이 "흡연장소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장소도 흡연장소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흡연장소의 정의규정에서 담배연기 배출시설을 갖출 것을 전제하고 있어 상호간 모순될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흡연장소에 대한 정의 검토 요망

65) I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제명	「I시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항	제1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담당할 I시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상위법령] 「아동복지법」 제6조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아동복지법」 제6조 는 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간에 대한 규정이고, 동법 제12조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조례 전체에서 "아동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수정 검토

66) I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제명	「I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항	제6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I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I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함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I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1안)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기금전문가를 1/3 이상 포함하도록 함 2안) 다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함 3안) 이 조례에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둠

67) I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제명	「I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항	제9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복지관을 운영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하되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과 다르게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두 번 이상 갱신할 때에는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함

68) I시 지역정보화조례 (1)

조례제명	「I시 지역정보화조례」
조항	제18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정보화 관련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소관부처가 변경되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에 관한 표준을 관보에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 표준"이라는 문구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웹 표준"으로 변경해야 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

69) I시 지역정보화조례 (2)

조례제명	「I시 지역정보화조례」

조 항	제24조
조 례 내 용 및 상 위 법 령	[조례의 내용]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규정함 [상위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문 제 유 형	⑤ 기타
문 제 점 및 검 토 의 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는 2012. 4.26 폐지되었음
개 선 방 안 (정 비 방 안)	□ 조례개정(안)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준용부분 삭제

70) I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조 례 제 명	「I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 항	제8조 제1항
조 례 내 용 및 상 위 법 령	[조례의 내용]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계약을 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이상인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함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
문 제 유 형	⑤ 기타
문 제 점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으로 기

검토의견	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사용수익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조례의 내용은 상위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수정

10. J 시

1) J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J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
조항	제2조제6호, 제3조 등
조례내용	제3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 또는 대책에 적극 협조하거나 스스로 참여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항에서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함을 2014.12.30.에 개정하였으나 조례에서는 "시설물의 지붕"에 관한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에 대한 내용 추가 필요

2) J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1)

조례제명	「J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조항	제32조제1항
조례내용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감액의 요건이 변경되었는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대부료의 감면 사유 및 감면율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3) J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2)

조례제명	「J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조항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조례내용	제34조(사용・대부료 등의 납기)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100만원 초과 시 년 4회 이내 분납할 수 있으며, 이자는 년 4 퍼센트로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이자의 계산방법이 변경되었으므로 조례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4) J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3)

조례제명	「J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조항	제38조
조례내용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따라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6.7.12.>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사유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매각대금 분납에 따른 이자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사유 및 이자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5) J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4)

조례제명	「J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조항	제63조

조례내용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100만원 초과시 년 4회 이내 분납 할 수 있으며, 이자는 년 4퍼센트로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변상금의 분할납부 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이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이도록 이자계산 방법이 변경됨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상위 법령의 내용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6) J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5)

조례제명	「J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조항	제63조의2
조례내용	제62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연 4퍼센트로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말한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의 반환시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붙이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이도록 이자계산 방법이 변경됨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상위 법령의 내용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7) J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6)

조례제명	「J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조항	제66조
조례내용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⑥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2015. 2. 16>으로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법인을 포함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음 아울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분법되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 수정

8) J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제명	「J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조항	제5조제1항
조례내용	시장은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제1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상위법령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이 개정되어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고 정액으로 규정함 "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의 개정 전 규정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이며 개정에 따라 별표 4가 삭제되었으므로 개정 전 규정에 맞추어 규정한 조례 제5조를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수정하고 별표 2는 삭제하여야 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내용 수정하고 별표 2 삭제

9) J시 건축 조례 (1)

조례제명	「J시 건축 조례」

조 항	제4조
조 례 내 용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과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상 위 법 령	「건축법」 제6조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문 제 유 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 제 점 및 검 토 의 견	「건축법」 제6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음. 즉 상위법령에서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로 일정한 경우 '건축허가'를 할 수 있을 뿐인데, 조례에서는 '건축허가' 뿐만아니라 '용도변경허가'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바, 이는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
개 선 방 안 (정 비 방 안)	□ 조례개정(안) '용도변경을 허가' 부분 삭제

10) J시 건축 조례 (2)

조 례 제 명	「J시 건축 조례」
조 항	제4조제7호
조 례 내 용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과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7.기존한옥을개축또는대수선
상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②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여 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조례 제4조제7호의 '대수선하는 경우'는 동 시행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7호 중 '대수선하는'을 삭제

11) J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1)

조례제명	「J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조항	제25조제1항
조례내용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5조제1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5조제1항제2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의적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나 해당 조례에서는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게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

12) J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2)

조례제명	「J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조항	제64조제2항
조례내용	보상금은 은닉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단서로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은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례에서는 면적과 관계 없이 먼저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함으로써 상위 법령에 위반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상위 법령에 맞게 신고면적이 다른 경우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단서로 규정하든지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이 조례에서는 삭제 검토

13) J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조례제명	「J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조항	제2조제1항
조례내용	도로관리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상위법령	「도로법 시행령」 제6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②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의 상임이사 중 한국도로공사의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일반국도: 지방국토관리청장 3.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4. 시도·군도·구도: 해당 특별자치시·시·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도로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같은 영 제67조에 따르면,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동 위원회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바가 없는데, 이 조례에서는 상위법령과 다르게 동 위원회 위원의 상한선을 12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게 30인 이내로 수정

14) J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J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조항	제8조제1항제1호제2호
조례내용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지방공기업법」상의지방공사및지방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상위법령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7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1.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지점번호 검증자) 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 조례에서는 위탁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및.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만을 규정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에는 위탁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조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영 제17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로 수정 검토

15) J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J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조항	제13조제1항
조례내용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 등) ⑦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고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고 다르게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

16) J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J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24조제2항
조례내용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상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되,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바, 조례에서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하거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내용과 같이 "하여야 한다"고 수정 검토

17) J시 물품관리 조례

조례제명	「J시 물품관리 조례」
조항	제17조제4항본문단서
조례내용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따라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되,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따르면,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되,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불용품 매각가격은 시가 참작을 원칙으로 하되, 취득가격이 천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만 법인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상위법령의 규정과 불일치함 2. 또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개정<2015. 2. 16>으로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을 포함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으므로, 상위법령의 규정과 불일치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1.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거나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재기재에 해당하게 되므로 삭제 검토 2. "법인 감정평가액"을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변경

18) J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1)

조례제명	「J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항	제2조
조례내용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한다 1. J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토지 및 주택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토지 및 주택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6. J시 의회가 추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상위법령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74조제3항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의 내용고 다르게 위원을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

19) J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2)

조례제명	「J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항	제4조
조례내용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5. 영 제22조제2항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상위법령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서는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이와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20) J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제명	「J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항	제14조제3항
조례내용	수탁자는 복지관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제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사회복지사업법령에서는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기부채납을 임의에 맡기고 있는바, 기부채납을 의무화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기부채납을 강제하지 않도록 규정

21) J시 수도급수 조례

조례제명	「J시 수도급수 조례」
조항	제18조
조례내용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 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12·6·11>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삭제 <84·2·4> 7. 그 밖의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2012·6·11> ②전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인 「수도법」에 수도사용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로 법률의 위임없는 신고의무를 규정할 수는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18조 삭제 검토

22) J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제명	「J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항	제2조
조례내용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돗물 수질 및 수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상위법령	「수도법」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업무는「수도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와 다른 기능을 규정하여 상위법령과 달리 이해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원칙적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은 조례에 다시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할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내용이 이루어 져야 함.

23) J시 시세 기본 조례 (1)

조례제명	「J시 시세 기본 조례」
조항	제13조
조례내용	미납 시세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한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열람할 수 있다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64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세기본법」 제64조제1항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의 규정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미납세를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임차인의 가족에 대하여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조례규정에서 상위법규정에 대한 언급없이 임차인의 미납세 열람에 관하여 정하고 있어서 조례 내용의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를 밝혀줄 필요가 있어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단서 조항은 삭제하고, 관련 법규정인 법 제64조제1항을 언급해 주는 것이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24) J시 시세 기본 조례 (2)

조례제명	「J시 시세 기본 조례」
조항	제17조
조례내용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변경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상위법령	제91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제2호에서는 "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와는 달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법에 있는 내용이므로 조례에 따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거나, 존치한다면 "압류한다"로 수정

25) J시 시세 기본 조례 (3)

조례제명	「J시 시세 기본 조례」
조항	제23조
조례내용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시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4조(징수유예등의 취소) ①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2. 담보의 변경요구, 그 밖에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 3.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세기본법」 제84조에서는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는 재량을 준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조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도 아니함 그런데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반드시 한꺼번에 징수하도록 의무규정을 둔 것은 상위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재량권 박탈이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과 같이 재량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26) J시 시세 기본 조례 (4)

조례제명	「J시 시세 기본 조례」
조항	제24조 제1항 전단
조례내용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2.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하는 경우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으로 시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행령 제8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한 경우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2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서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 법 제26조제2항 단서 및 영 제8조제2항에는 담보제공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도 않은데, 조례의 예외사유는 위 법령의 규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더불어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지도 아니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1.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재량권 박탈이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과 같이 재량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 2. 담보 제공 예외사유도 법령에 맞게 규정 3. 담보 제공 예외사유는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담보의 제고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됨을 명시

27) J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J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3조 제3항
조례내용	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J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관서에서 추천한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 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상위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③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이 되며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이외의 항목을 추가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상위법령 재기재의 경우, 법령을 재기재하

	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나, 재기재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8) J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1)

조례제명	「J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조항	제16조
조례내용	공립어린이집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검토·감안하여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해야 하는 지역으로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뿐만아니라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2013. 8. 13. 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는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상위 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

29) J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2)

조례제명	「J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조항	제10조
조례내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수탁자가 관계법규 또는 제9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하였을때

	2.시장이공익상필요에의하여약정을해지하고자할때
상위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이 내용과 다르게 위탁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

30) J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3)

조례제명	「J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조항	제11조의2
조례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보육관련 행사 및 보육교직원 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4.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5.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상위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는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 항목이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상위 법령에서는 '보조한다'고 규정하여 비용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장에게 보조 여부에 대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보조금 지원 대상 항목을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비용을 '보조한다'고 수정

31) J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4)

조례제명	「J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조항	제11조의3
조례내용	제11조의3(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어린이집및단체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미교부한비용과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의반환을명할수있다 1.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8.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조례에 규정된 보조금의 반환 사유는 「영유아보육법」제40조의 보조금 반환명령 사유와 일치하지 아니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나, 재기재하는 경우 상위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32) J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1)

조례제명	「J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조항	제4조
조례내용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상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7.6.> 1. 광고물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신고만 하거나 신고도 없이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광고내용"에만 한정하는 것이고, 그 밖의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는 그 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그런데 이 조례 제4조제3호는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바, 굳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음. 이 조례 제4조제3호를 규정하게 되면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광고내용을 변경은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왜냐하면 이 조례 제4조에서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신고하여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광고내용의 변경은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바, 그렇다면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3호 삭제 검토

33) J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2)

조례제명	「J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조항	제8조 제2항 제3호
조례내용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상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 2.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조례에서는 주민협의회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위원장을 시행령과 같이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위원들(조례에 따르면 위원에는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한 자 이외의 자도 포함됨)이 호선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여 자율관리협정 체결자들이 주민협의회 대표를 선임할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을 선출할 때에는 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는 것으로 개정

34) J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3)

조례제명	「J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조항	제14조 제3호
조례내용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상위법령	「자격기본법」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은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4.5.> 1.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운영하는 자격 2.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격 3.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격 ③민간자격의 공인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에 관한 근거규정은 「자격기본법」 제17조가 아닌 「자격기본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 자격"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 자격(「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수정

35) J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J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2조 제1항
조례내용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바, 단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법령 내용의 재기재이므로 삭제하거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수정

36) J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J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항	제11조 제4항
조례내용	위원 중 1/3이상은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에 맞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맞게 수정

37) J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J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항	제17조
조례내용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상위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 조례개정(안)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이동보관이 가능한데, 통행방해 여부와 무관하게 이동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법령상 요건과 동일하도록 개정

38) J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J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3조제1항
조례내용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상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례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정한 내용과 다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맞게 수정

39) J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1)

조례제명	「J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항	제21조
조례내용	정부와 시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시장(市長)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목적과 관계없이 상인회를 설립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조례는 상인회를 설립하였으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석오인의 여지가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문구 삭제

40) J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ㅠ

조례제명	「J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항	제26조제2항
조례내용	상인회는 시장(市長)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②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소기업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법 제25조 내지 제30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3. 법 제55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원자금 사용내역

	4. 법 제65조제7항 및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상인회가 포함됨)가 이 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소기업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자료제출 기간을 10일 이내로규정 하여 상위법령과 다르며, 대상 자료도 상위 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

41) J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제명	「J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항	제7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함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 조례 제7조제1항제2, 6호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2호, 제6호 삭제

42) J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1)

조례제명	「J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조항	제2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며, 시장이 위촉한다. 단,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주택건설 사업자의 임직원은 제외한다고 규정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2명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2명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한자(「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5.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 [상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1. 해당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

	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위촉·임명 대상 위원을 규정하고 있고,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

43) J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2)

조례제명	「J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
조항	제2조제4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고 규정 [상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서는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수정

44) J시도시계획조례

조례제명	「J시도시계획조례」

조항	제11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따로 정함 [상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조례에 위임하였는데, 개략적인 사항도 정하지 않고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반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개략적인 사항을 조례에서 정할 필요

45) J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1)

조례제명	「J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항	제23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 [상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가산금은 금전납무의무를 지체한 경우에 이를 강제징수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령에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46) J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2)

조례제명	「J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항	제23조제3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징수 하는 것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할 수 없을 것인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47) J시 건축 조례

조례제명	「J시 건축 조례」
조항	제22조제2항제1호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고 규

	정 1. 시장이 J지역건축사협회에 등록한 건축사를 직접 선정하되 해당 건축물의 설계건축사 및 감리건축사가 아닌 제3자의 건축사로 지정한다. 2. 제1호에 따라 시장이 업무대행 건축사를 지정하고자 할 때 J지역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지정 및 선정 절차를 따로 둘 수 있다. [상위법령] 「건축법」 제27조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건축법」 제27조에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할 수 있는 건축사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현장조사 등을 대행할 수 있는 건축사의 요건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한데, 조례에서는 대행할 수 있는 건축사의 요건으로 J지역건축사협회에 등록한 건축사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할 수있는 건축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반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J지역건축사협회에 등록한 건축사 부분 삭제

48) J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J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항	제6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4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각 호의 사람은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긴급한 경우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신청을 보완 할 수 있다고 규정 [상위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1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긴급 여부에 관계 없이 구두로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바, 조례에서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긴급한 경우에만 구두로 지원을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청인에게 긴급상황에 대한 입증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서면으로 신청을 보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내용을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같은 조 단서는 삭제

49) J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J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조항	제13조제3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시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법률의 근거 없이 광고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하거나 행정 실제에서 시안 작성 후 시장과 협의 확정할 정책적

	필요가 있으면 이를 의무화 하기 보다는 권고하는 방향으로 개정 검토

50) J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제명	「J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항	제6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조례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시장에게 일정사항을 보고 하도록 하는 채권자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개선방안(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

51) J시 수도급수 조례 (1)

조례제명	「J시 수도급수 조례」
조항	제25조 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짐 [상위법령] 「수도법」 제38조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수도법」 제38조 등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연대책임에 관련하여는 법률에 근거없이 조례로서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항 삭제 검토

52) J시 수도급수 조례 (2)

조례제명	「J시 수도급수 조례」
조항	제43조 제3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1·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 장치는 시에 귀속함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급수설비는 불법으로 설치하였더라도 개인의 사유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법령의 근거없이 시에 귀속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 검토

53) J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1)

조례제명	「J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항	제22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市長)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8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8항에서는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인데, 조례에서 상인회의 지위를 박탈하는 등록취소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상 불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54) J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

조례제명	「J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항	제26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市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6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6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르면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인데, 이 조례에서는 상인회에게 시장에 대한 정기적, 사전적인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55) J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3)

조례제명	「J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항	제28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市長)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 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4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4항에서는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인데, 조례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지정취소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상 불비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56) J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제명	「J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 항	제22조제4항
조 례 내 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및 지방보조금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
문 제 유 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 제 점 및 검 토 의 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르면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수 있고,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이 조례 제26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미제출""은 동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반할 소지가 있음"
개 선 방 안 (정 비 방 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57) J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조 례 제 명	「J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조 항	제11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임원 및 단원에 대하여는 연 2회 8시간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하고,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법률의 근거 없이 단장, 임원 및 단원에 교육 수강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58) J시 하수도사용 조례 (1)

조례제명	「J시 하수도사용 조례」
조항	제5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상위법령] 「하수도법」 제27조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하수도법」 제27조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배수설비의 설치 및 공공하수도의 사용만으로 신고의무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법령에 없는 의무사항을 신설하였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항 삭제

59) J시 하수도사용 조례 (2)

조례제명	「J시 하수도사용 조례」
조항	제8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상위법령] 「하수도법」 제24조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인데, 조례에서는 법령의 위임 없이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60) J시 하수도사용 조례 (3)

조례제명	「J시 하수도사용 조례」
조항	제27조제1항
조례내용	[조례의 내용]

및 상위법령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공공하수도 점용료를 납부 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 [상위법령] 「하수도법」 제73조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하수도법」 제73조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이는 체납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상 실체적인 사항을 준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대판 82누120, 법제처 의견제시 제12-0271 등), 가산금은 금전납무의무를 지체한 경우에 이를 강제징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하수도법」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개선방안(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61) J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J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4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함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심의사항과 일치하지 않고, 심의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지도 않았으므로 상위법령과 맞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검토

62) J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조례제명	「J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조항	제46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5조제1항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5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청사부지 크기는 광역과 기초, 인구수에 따라서 그 상한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가 청사부지의 크기를 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또한, 청사의 부지라는 이유로「건축법」상의 건폐율에 대한 예외를 법령이 아니라 조례에서 허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63) J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J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15조제3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위임 없이 위탁기간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위탁기간을 5년으로 수정 검토

64) J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J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항	제10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은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특별시장등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례에서는 부위원장을 신설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부위원장의 직위를 삭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시장이 지명한다고 수정 검토

65) J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제명	「J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항	제9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 또는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징수 하는 것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할 수 없을 것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환수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분 삭제

66) J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제명	「J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항	제5조 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음

	[상위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음 따라서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는 구상할 수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초과액을 무조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고의 도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만 변상하도록 함

67) J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례제명	「J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항	제11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함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상위법령과 조례의 규정사항이 다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의 심의사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개정 검토

68) J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제명	「J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항	제4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함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상위법령] 「주차장법」 제17조제2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주차장법」에 따른 3가지 주차장(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중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근거)가 법률에 규정된 것은 노외주차장(의 관리자) 뿐이고, 이 경우에도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용을 거절할 수 있을 뿐임(「주차장법」 제17조제2항). 조례 제4조는 법률상 근거나 위임 없이 주차장 거절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노외주차장 외의 주차장에 대하여도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노외주차장관리자만 주차거부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고, 법률에 없는 거부사유를 규정한 각 호의 사유는 삭제

69) J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J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4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센터는 J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청소년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4항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4항에서는 시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조례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기만 하면 청소년 관련 단체가 아니라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이는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비영리법인 부분 삭제

70) J시도시계획조례

조례제명	「J시도시계획조례」
조항	제71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은 폐지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임기제공무원으로 개정함

11. K 시

1) K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K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항	제2조 등
조례내용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상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항에서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함을 2014.12.30.에 개정하였으나 조례에서는 "시설물의 지붕"에 관한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음
개선방안	□ 조례개정(안)

(정비방안)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에 대한 내용 추가 필요

2) K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1)

조례제명	「K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31조제1항
조례내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감액의 요건이 변경되었는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대부료의 감면 사유 및 감면율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3) K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조례제명	「K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조례내용	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4.12.29.>

	2.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나누어 납부 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나누어 납부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이자의 계산방법이 변경되었으므로 조례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4) K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3)

조례제명	「K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37조
조례내용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7.28., 2013.4.17.>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 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4.12.29.>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6.7.12.>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사유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매각대금 분납에 따른 이자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 7.12.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사유 및 이자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 조례개정(안)

(정비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5) K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4)

조례제명	「K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37조의2
조례내용	① 영 제11조의3제1항 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환차금을 납부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2. 교환차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3.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요건 및 이자율 산정 방식이 변경되었는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6) K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5)

조례제명	「K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61조의3
조례내용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삭제 2014.12.29.>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변상금의 분할납부 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이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이도록 이자계산 방법이 변경됨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상위 법령의 내용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 조례개정(안)

(정비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7) K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6)

조례제명	「K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61조의3
조례내용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 4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말한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의 반환시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붙이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이도록 이자계산 방법이 변경됨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상위법령의 내용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맞추어 이자율 수정 필요

8) K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제명	「 K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항	제4조 및 별표 2
조례내용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연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

	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상위법령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이 개정되어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고 정액으로 규정함 "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의 개정 전 규정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이며 개정에 따라 별표 4가 삭제되었으므로 개정 전 규정에 맞추어 규정한 조례 제5조를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수정하고 별표 2는 삭제하여야 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제4조를 수정하고, 별표 2는 삭제

9) K시 물품관리조례

조례제명	「K시 물품관리조례 」
조항	제18조제4항
조례내용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되,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

	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2015. 2. 16)으로 매각・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법인을 포함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으므로,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볼때 불일치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평가 의뢰할 수 있도록 수정

10) K시 건축조례 (1)

조례제명	「K시 건축조례」
조항	제4조
조례내용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 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상위법령	「건축법」 제6조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건축법」 제6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음.

	즉 상위법령에서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로 일정한 경우 '건축허가'를 할 수 있을 뿐인데, 조례에서는 '건축허가' 뿐만아니라 '용도변경허가'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바, 이는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용도변경을 허가' 부분 삭제

11) K시 건축조례 (2)

조례제명	「K시 건축조례」
조항	제4조제2호, 제7호
조례내용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 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5월 29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제33조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경우 6.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제33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재축, 개축, 용도변경하거나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7.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상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②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여 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조례 제4조제2호 및 같은 조 제7호의 '대수선하는 경우'는 동 시행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2호를 삭제하고, 제7호 중 '대수선하는'을 삭제

12) K시 건축조례 (3)

조례제명	「K시 건축조례」
조항	제5조제2항
조례내용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 할 수 있다
상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3항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3항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

	치단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상위법령에 따르면 지차단체장은 최대 100명의 위원으로 동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조례에서 위원의 상한을 상위법령보다 낮게 규정하여 결국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최대 30명으로만 구성할 수 밖에 없는바, 이는 법령에서 부여된 시장의 위원회 구성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의 상한선을 150명으로 수정

13) K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K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7조제2항
조례내용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이를 갈음한다
상위법령	「지방공기업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대한 예외를 하위법인 조례가 인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음.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검사위원의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에 결산 검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직영기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도록 하는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반된 조례이므로 제하는 것이 타당

14) K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조례제명	「K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조항	제3조제2항
조례내용	관리자는 기업유치추진단장으로 보한다
상위법령	「지방공기업법」 제7조②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에서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기업유치추진당장을 관리자로 정하는 것은 시장의 임명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 검토

15) K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1)

조례제명	「K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16조
조례내용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기간의 기산일을 허가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고, 조례로 달리 위임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조례에서 그 기산점을 달리 정할 수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검토

16) K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조례제명	「K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62조제2항
조례내용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단서로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은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례에서는 면적과 관계 없이 먼저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함으로써 상위 법령에 위반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에 맞게 신고면적이 다른 경우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단서로 규정하든지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이 조례에서는 삭제 검토

17) K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K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 항	제4조제3항제4호,제6호
조 례 내 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K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K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5. 지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K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상 위 법 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2.4.16.>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문 제 유 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 제 점 및 검 토 의 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르면,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고 하면서, 각 호의 내용으로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

	를 대표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근거에 따라 설치되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면서 상위법령에서 위원자격을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의 위원자격과 다르게 위원 자격을 추가(제4호 및 제6호)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18) K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K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항	제5조제2항
조례내용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상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또는특별자치도:25명이상30명이내 2.「지방자치법」제175조에따른서울특별시와광역시및특별자치시를제외한인구50만이상의대도시:20명이상25명이내 3.제2호에따른대도시를제외한시·군또는구:15명이상25명이내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제1항제제3호에 따르면, 시·군 또는 구 지방도시재생위원회는15명 이상 25명 이내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있는데,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과 다르게 위원 숫자를 규정하고 있음 *K시 통계에 따르면, K시 인구는 약 15만명이므로,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도시가 아니므로 20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없고, 설령 대도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례에서는 그 상한을 23명으로 설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

19) K시 도시계획 조례

조례제명	「K시 도시계획 조례」
조항	제4조
조례내용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전라남도 또는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와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상위법령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광역도시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추가적으로 공보 등을 통해 알린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일간신문을 통해 공고한다는 내용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일간신문을 통해 공고한다는 내용도 추가.

20) K시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조례제명	「K시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조항	제2조
조례내용	부동평가위원회가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 및 제29조에 따른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 및 표준주택조사평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에 관한 사항 4. 영 제22조 및 제37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K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상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심의사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심의사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음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

21) K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K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항	제7조제5항
조례내용	시장은 협의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 남녀의 비율을 어느 한쪽이 7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바, 상위법령의 직접 근거없이 설치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의 경우에도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7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부분을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는 것을 검토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70퍼센트를 60퍼센트로 수정

22) K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K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3조제1항제2항
조례내용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상위법령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 수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의하면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가 상위 법령보다 제한적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

23) K시 시세 기본 조례 (1)

조례제명	「K시 시세 기본 조례」
조항	제7조제1항
조례내용	납세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① 기한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부합하지 아니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에 맞게 원칙적으로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예외적으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례 수정

24) K시 시세 기본 조례 (2)

조례제명	「K시 시세 기본 조례」
조항	제13조제1항
조례내용	미납세(체납세 포함)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64조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세기본법」 제64조제1항에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의 규정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미납세를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임차인의 가족에 대하여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례규정에서 상위법규정에 대한 언급없이 임차인의 미납세 열람에 관하여 정하고 있어서 조례 내용의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를 밝혀줄 필요가 있어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단서 조항은 삭제하고, 관련 법규정인 법 제64조제1항을 언급하는 것 검토

25) K시 시세 기본 조례 (3)

조례제명	「K시 시세 기본 조례」
조항	제17조
조례내용	「지방세기본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변경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시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91조 ① 2.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제2호에서는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와는 달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함
개선방안	□ 조례개정(안)

(정비방안)	법에 있는 내용이므로 조례에 따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거나, 존치한다면 "압류한다"로 수정

26) K시 시세 기본 조례 (4)

조례제명	「K시 시세 기본 조례」
조항	제19조제1항
조례내용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 납부일은 충당 한 날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제76조제4항은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그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세기본법」제76조제4항은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그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부간주일이 상위법과 일치하지 아니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에 맞게 "충당청구를 한 날"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수정 검토

27) K시 시세 기본 조례 (5)

조례제명	「K시 시세 기본 조례」
조항	제23조
조례내용	「지방세기본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시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일시에 부과 및 징수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4조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세기본법」 제8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는 재량을 준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조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아니한바,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반드시 한꺼번에 징수하도록 의무규정을 둔 것은 상위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과 같이 재량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28) K시 시세 기본 조례 (6)

조례제명	「K시 시세 기본 조례」
조항	제30조
조례내용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징수의무자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열거하는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한 자 또는 이러한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의 자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는바, 조례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 규정된 것보다 대상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에 맞게 대상을 수정

29) K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K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항	제3조제2항후문
조례내용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바,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거나 삭제

30) K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조례제명	「K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조 항	제4조제1호내지제6호
조 례 내 용	기금의 용도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 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 및 활동지원 3.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4. 모범음식업소에 대한 지원 5.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지역여건 조성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상 위 법 령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문 제 유 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 제 점 및 검 토 의 견	식품진흥기금의 용도 및 사업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조례에서 추가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용도를 벗어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는 없는데 이 조례에서는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부분이 있음
개 선 방 안	□ 조례개정(안)

(정비방안)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거나, 상위법령에 있는 규정이므로 삭제 검토

31) K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K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항	제2조제1항 후문
조례내용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바,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거나 삭제

32) K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K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항	제4조제1항전문
조례내용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임기 2년의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상위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서는 연임에 대한 제한은 없는 바, 이 조례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 삭제

33) K시 영유아 보육 조례 (1)

조례제명	「K시 영유아 보육 조례」
조항	제4조
조례내용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6.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상위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12.6.29.>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9.15.> 8. 삭제 <2012.6.29.>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2호),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9제3호),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제4호),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제5호),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제6호),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제9호),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10호)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34) K시 영유아 보육 조례 (2)

조례제명	「K시 영유아 보육 조례」
조항	제15조 제1항
조례내용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자가 허위의 내용으로 위탁 신청하여 위탁 받았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수탁자가 제14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6. 법 제20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7.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야기 등의 사유로 시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위탁기간 중 재위반 하였을 경우
상위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4항에서는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는 시장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 취소사유와 다른 취소사유를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어린이집 위탁취소사유를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호의 사유와 같도록 규정 같도록 규정하거나 삭제 검토 (해당 조례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조례로 정할수는 없으나, 시행규칙 제25조제6호에 따라 해당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계약내용으로 포함시킬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가 아닌 위탁계약서에 취소사유로 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35) K시 영유아 보육 조례 (3)

조례제명	「K시 영유아 보육 조례」
조항	제27조 제1항제4호
조례내용	어린이집 및 단체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비용 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보조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도·점검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상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8.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8.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런데, 이 조례에 규정된 보조금의 반환 사유는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보조금 반환명령 사유와 일치하지 않고, 특히 「영유아보육법」(2011.8. 4. 일부개정)의 개정으로 제40조제4호(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가 삭제되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제4호 내용 삭제하고, 제 4호에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삽입

36) K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1)

조례제명	「K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조항	제2조제1항
조례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 또는 설치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한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으로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한 높이 4미터 미만의 애드벌룬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K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K시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정하는 광고물 등
상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7.6.>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

	서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다만,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시행령 제7조제1항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 대상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제출을 면제하도록 규정할 수 있지만, "신고" 대상은 조례로 제출서류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 없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조례의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광고물은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으로서, 서류나 도서 일부의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는 이를 서류제출이 면제되는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규정삭제

37) K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2)

조례제명	「K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조항	제4조제3호
조례내용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상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7.6.> 1. 광고물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신고만 하거나 신고도 없이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광고내용"에만 한정하는 것이고, 그 밖의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는 그 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그런데 이 조례 제4조제3호는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바, 굳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3호 삭제

38) K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3)

조례제명	「K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조항	제9조제2항 제3호
조례내용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상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 2.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조례에서는 주민협의회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위원장을 시행령에 따라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위원들이 호선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여 자율관리협정 체결자들이 주민협의회 대표를 선임할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을 선출할 때에는 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는 것으로 개정

39) K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제명	「K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항	제6조

조례내용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2호의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은 조례 제6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40) K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K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13조 제1항
조례내용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대규모점포의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도 전통상업보전구역에 개설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서 상위법령의 내용에 위반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조례를 개정하여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는 것인가를 불문하고 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

41) K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K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4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5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5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보궐위원의 임기를 이와 같이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면 법 제36조제5항에 단서로서 규정했을 것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42) K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K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5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K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음 1.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을 단순히 집행하기 위한 경우 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위법령]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입법예고는 법상 의무사항이고, 그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이와 달리 규정할 수는 없음 동법 제41조 제1항 각호는 다음과 같음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을 상위법령을 반영하도록 검토

43) K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K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조항	제12조 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함 5. K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장기 등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하여 K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지방의회 의장은 조직적, 의전적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고, 조례로써 이를 허용할 수도 없으므로, 의장 개인이 심의회 위원 일부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위법할 소지가 있음(대법원 1996.5.14.선고, 96추15판결 참조)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의장의 추천을 "의회의 추천"으로 수정

44) K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K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7조 제3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탁계약기간은 4년으로 하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4년간 연장 할 수 있음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로 하되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 법령과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위탁 갱신 부분을 수정

45) K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제명	「K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항	제29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 따르면, 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외이 사유(조례 제26조제2항제4호)를 보조금 교부의 제한사유로 추가하고 있고, 상위 법령에서는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 제한 여부에 대하여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교조금 교부 제한 사유에서 제4호를 삭제하고,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수정

46) K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조례제명	「K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조항	제3조 제4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공무원인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로 뽑도록 규정함 [상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례에서는 공무원인 위원장을 시장으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맞게 개정

47) K시 평생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K시 평생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조항	제7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당연직 위원은 시장, 전라남도K교육청 교육장, 시 평생학습 주무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K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평생학습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함 [상위법령] 「평생교육법」 제14조제3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평생교육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시·군·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조례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두어 시장의 위촉 권한을 침해하고 있고, 위촉 대상도 상위 법령의 규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거나, 상위 법령의 재기재에 해당하므로 삭제 검토

48) K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제명	「K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항	제20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가산금은 금전납무의무를 지체한 경우에 이를 강제징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령에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함.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징수 하는 것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할 수 없을 것인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49) K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K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7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이를 갈음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공기업법」 제2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대한 예외를 하위법인 조례가 인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음.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검사위원의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에 결산 검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개선방안	□ 조례개정(안)

(정비방안)	지방자치단체 직영기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도록 하는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반된 조례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

50) K시 OO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K시 OO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8조제4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수탁자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짐 [상위법령] 「민법」 제750조 등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비록 수탁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에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모든 책임을 수탁자에게만 지도록 규정하는 것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칙을 조례로 두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모든 책임을 수탁자가 지도록 하는 부분은 개정 검토

51) K시 수도급수 조례

조례제명	「K시 수도급수 조례 」
조항	제20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수도 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1. 급수중지된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적용을 받고자 할 때와 적용 가구수가 변동 되었을 때

	6.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급수설비의 개조공사를 하고자 할 때 [상위법령] 「수도법」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인 「수도법」에 수도사용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바, 조례로 법률의 위임없는 신고의무를 규정할 수는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52) K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제명	「K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조항	제19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징수 하는 것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할 수 없을 것인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53) K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조례제명	「K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조항	제9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한다고 규정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징수 하는 것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할 수 없을 것인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54) K시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제명	「K시 영유아 보육 조례」
조항	제12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K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가 어린이집의 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에게 위탁하여는 경우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거나 조례로 제한에 관하여 위임하고 있지 않은데, 이 조례에서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장이 되어 직접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단서 규정 삭제

55) K시 의로운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K시 의로운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항	제12조 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징수 하는 것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할 수 없을 것인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56) K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1)

조례제명	「K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항	제9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K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시시장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2. 임시시장을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3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서는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인데, 조례에서 취소와 같은 불이익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상 불비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57) K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

조례제명	「K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항	제16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K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8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8항에 따르면,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바, 상위법령에 위임없이 조례에서 상인회에게 변경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58) K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3)

조례제명	「K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항	제22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관리자의 취소에 대하여 규정함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4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4항에서는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인데, 조례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지정취소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상 불비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59) K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K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11조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지역자율방재단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함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법률의 근거 없

	이 단장, 임원 및 단원에 교육 수강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단원 등에게 교육을 들을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지역자율방재단 임원 및 단원에게 방재교육을 할 정책적 필요성을 검토하여 상위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이 조례 제13조제2항 삭제 검토

60) K시 하수도 사용 조례 (1)

조례제명	「K시 하수도 사용 조례 」
조항	제5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상위법령] 「하수도법」 제27조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하수도법」 제27조에서는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배수설비의 설치 및 공공하수도의 사용만으로 신고의무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법령에 없는 의무사항을 신설하였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 검토

61) K시 하수도 사용 조례 (2)

조례제명	「K시 하수도 사용 조례 」
조항	제8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함 [상위법령] 「하수도법」 제24조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인데, 조례에서는 법령의 위임 없이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62) K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K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8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강사가 적합한 강사를 활용한다고 규정하는 등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강사를 활용하는 주체를 수정하고, '적합한 강사'라는 불명확한 개념은 구체화

63) K시 건축조례

조례제명	「K시 건축조례」
조항	제5조제4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1호마목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궐위원의 임기도 3년이 되는 것임(보궐위원의 임기를 이와 같이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1호마목에 단서로서 규정했을 것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남은 임기로 하는 부분 삭제

64) K시 경관조례

조례제명	「K시 경관조례 」
조항	제26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	[조례의 내용]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령	제27조 제3항에서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제28조에서 공공디자인자문에 대해서 경관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함 [상위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위임조례'를 규정해야하며, 이는 별도의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것임 또한 같은 조례안에서 규정하더라도 경관위원회와 별도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자문기관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문기관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0. 2. 1. 회신 해석09-0395 참고), 법령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공공디자인에 대한 별도 조례를 마련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을 검토

65) K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K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항	조례전체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K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교통안전법」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2012. 6. 1. 「교통안전법」이 개정되어 제13조에서 교통안전정책

검토의견	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하였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조례의 존치 필요성 검토 후 폐지 등의 조치 필요

66) K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제명	「K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조항	조례전체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K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2008.3.28. 법률 제6252)되었고,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칙 제2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조례 폐지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1. 조례 폐지 검토 2. 아직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라고 특정할 필요)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 설치 검토"

67) K시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 회계 설치·운영조례

조례제명	「K시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 회계 설치·운영조례」

조 항	없음
조 례 내 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기금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음(이 조례는 시행일 2005.11.23 임)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문 제 유 형	⑤ 기타
문 제 점 및 검 토 의 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기금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함 법」이 제정된 2005. 8. 4. 이후에 설치된 기금이라면, 이 법 제4조에 따라 기금존속기한을 정할 필요가 있음.
개 선 방 안 (정 비 방 안)	□ 조례개정(안) 기금존속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68) K시 시세 기본 조례

조 례 제 명	「K시 시세 기본 조례」
조 항	제24조
조 례 내 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각 호 외 본문에서는 법 제26조제2항과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단서 및 각호에서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
문 제 유 형	⑤ 기타
문 제 점 및 검 토 의 견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서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 법 제26조제2항 단서 및 영 제8조제2항에서는 담보제공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예외사유는 위 법령의 규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재량권 박탈이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과 같이 재량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고, 예외사유도 법령에 맞게 규정하여야 함

69) K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조례제명	「K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조항	제5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인명 피해액 산정은 의료기관의 치료비로 하되, 실제 본인 부담액으로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3조 제3항의 경우,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피해액 산정은 의료기관의 치료비중 실제 본인 부담액으로만 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피해액의 산정기준으로 규정함

70) K시 주민투표 조례

조례제명	「K시 주민투표 조례」
조항	제14조 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상위법령] 「주민투표법」 제22조제2항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주민투표법」 제22조제2항에서는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 금지시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야간'이란 해가 진 뒤부터 동이 트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밤'과 동일한 개념인데, 조례로 정하고 있는 시간은 야간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게 야간투표운동 금지 시간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

12. L 시

1) L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L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항	제3조, 제5조
조례내용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2015. 12. 31부터 개정・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는 시설물의 지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법률의 규정에 맞추어 제3조에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에 대한 내용을 추가

2) L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L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2조 제2항 제4호
조례내용	위원장은 L시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L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로 한다.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

	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3.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1.15.>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제3호가 2015. 8. 19. 자로 개정됨에 따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에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상이 구체화되었는바, 조례에서는 이러한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3호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

3) L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L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12조
조례내용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2항이 2016. 9. 13. 개정되어 감독 대상 공사의 상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공사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면 주민참여 감독공사를 하도록 변경되었음에도 조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함 또한, 상위법령에서 주민감독 대상 공사를 규정하고 있고, 조례로 공사의 종류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필요도 없고, 설령 조례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상위법령과 같게 규정해야지 일부만 규정하던가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

4) L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1)

조례제명	「L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조항	제38조 제2항
조례내용	제38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날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삭제 <2012.11.30.> 2. 100만원 초과 : 6월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이내 4회 분납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이자의 계산방법이 변경되었으므로 조례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맞추어 이자율 수정 필요

5) L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2)

조례제명	「L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조항	제41조 제1항
조례내용	제4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01.08.>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

	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사유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매각대금 분납에 따른 이자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사유 및 이자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6) L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3)

조례제명	「L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조항	제41조의2
조례내용	제41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교환할 경우 발생하는 교환 차금은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45조제2항의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환차금을 납부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2. 교환차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3.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요건 및 이자율 산정 방식이 변경되었는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7) L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4)

조례제명	「L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조항	제66조 제1항
조례내용	제66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삭제 <2012.11.30.>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변상금의 분할납부 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이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이도록 이자계산 방법이 변경됨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상위 법령의 내용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8) L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5)

조례제명	「L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조항	제66조의2
조례내용	제66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로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말한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의 반환시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붙이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이도록 이자계산 방법이 변경됨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상위 법령의 내용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 조례개정(안)

(정비방안)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맞추어 이자율 수정 필요

9) L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6)

조례제명	「L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조항	제69조
조례내용	제69조(공유토지의 분필) 자치단체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⑥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2015. 2. 16>으로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법인을 포함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변경되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수정

10) L시 건축 조례 (1)

조례제명	「L시 건축 조례」
조항	제3조의2제1항
조례내용	영 제5조의5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

	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상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3항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3항에 따르면,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동 위원회 위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동 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상위법령에 따르면 지차단체장은 최대 150명의 위원으로 동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조례에서 위원의 상한을 상위법령보다 낮게 규정하여 결국 위원호는 위원을 최대 50명으로만 구성할 수 밖에 없는바, 이는 법령에서 부여된 시장의 위원회 구성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의 상한선을 150명으로 수정

11) L시 건축 조례 (2)

조례제명	「L시 건축 조례」
조항	제3조의 2 제2항
조례내용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상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5항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례로 이와 다르게 규정하면 법령에서 시장에게 부여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명권한 또는 위촉권한을 침해할 소지 있음.
개선방안	□ 조례개정(안)

(정비방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

12) L시 건축 조례 (3)

조례제명	「L시 건축 조례」
조항	제3조의6 제2항
조례내용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다
상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삭제 <2014.11.11.> 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마. 삭제 <2014.11.28.> 바.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릴 것 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것 아.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자.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 차.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바목에서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게 '10명 이상 위원의 출석'을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수정.

13) L시 건축 조례 (4)

조례제명	「L시 건축 조례」
조항	제5조제6호
조례내용	제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영 또는 건축 조례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3조 규정에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4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상위법령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6호에서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만 허용하고 있는바, 이 조례에서는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허용하고 있어 이는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한옥을 대수선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수정

14) L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L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 항	제7조 제2항
조 례 내 용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L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상 위 법 령	「지방공기업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문 제 유 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 제 점 및 검 토 의 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대한 특례이므로 법률에 정해야 할 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검사위원의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에 결산 검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 있음.
개 선 방 안 (정 비 방 안)	□ 조례개정(안) 삭제 검토

15) L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 례 제 명	「L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 항	제4조 제1항
조 례 내 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 위 법 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의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사항을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누락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3호을 이 조례에 규정

16) L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1)

조례제명	「L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조 항	제20조
조 례 내 용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 또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상 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문 제 유 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 제 점 및 검 토 의 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기간의 기산일을 허가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고, 조례로 달리 위임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조례에서 그 기산점을 달리 정할 수 없음
개 선 방 안 (정 비 방 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하거나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

17) L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2)

조 례 제 명	「L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조 항	제67조 제2항
조 례 내 용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상 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단서로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문 제 유 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 제 점 및 검 토 의 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은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

	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례에서는 면적과 관계 없이 먼저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함으로써 상위 법령에 위반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에 맞게 신고면적이 다른 경우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단서로 규정하든지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이 조례에서는 삭제 검토

18) L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L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항	제6조
조례내용	제3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신청을 보완할 수 있다
상위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1항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인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긴급 여부에 관계 없이 구두로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바, 조례에서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긴급한 경우에만 구두로 지원을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청인에게 긴급상황에 대한 입증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서면으로 신청을 보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6조 본문의 내용을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같은 조 단서는 삭제

19) L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L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3조 제1항
조례내용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상위법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과 맞지 아니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맞게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개정

20) L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L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9조
조례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한 경우 3. 위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한 날부터부터 3개월 이내에 복지관 및 복지센터를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8.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르면,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에 규정된 계약 해지 사유 외의 사유를 위탁 취소 사유로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위탁 취소 사유 수정

21) L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L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조항	제9조 제1항
조례내용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관련 시설의 설치 또

	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상위법령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7조(유지관리의 위탁 등)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 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 각 호의 자(1.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지점번호 검증자) 또는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 조례에서는 위탁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및.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만을 규정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에는 위탁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조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영 제17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로 수정 검토

22) L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제명	「L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항	제5조제1항
조례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상위법령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에 규정된 심의 사항의 일부를 누락하하거나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아니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거나, 조례의 내용은 상위 법령의 재기재에 불과하므로 삭제 검토

23) L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제명	「 L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조항	제13조
조례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사용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 신고를 하였을 때 3. 시장이 정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때 4. 시장이 영업상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시장의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가 있을 때 6. 상품 또는 영업행위가 시장을 훼손하거나 또는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 할 때 7.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시장번영에 지장을 줄 때(단, 특별한 사정이 있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사유는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인바,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사유를 누락하거나,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유를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사용·수익허가 취소 사유를 수정하거나, 상위 법령의 재기재에 해당하므로 해당 조문 삭제 검토

24) L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1)

조례제명	「L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조항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조례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 또는 설치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상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7.6.>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

	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다만,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시행령 제7조제1항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 대상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제출을 면제하도록 규정할 수 있지만, "신고" 대상은 조례로 제출서류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 없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조례의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 광고물은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으로서, 서류나 도서 일부의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는 이를 서류제출이 면제되는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25) L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2)

조례제명	「L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조항	제4조제3호
조례내용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

	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상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7.6.> 1. 광고물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신고만 하거나 신고도 없이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광고내용"에만 한정하는 것이고, 그 밖의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는 그 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그런데 이 조례 제4조제3호는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바, 굳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음. 더불어, 이 조례 제4조제3호를 규정하게 되면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광고내용을 변경은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왜냐하면 이 조례 제4조에서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신고하여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광고내용의 변경은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바, 그렇다면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3호 삭제

26) L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3)

조례제명	「L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조항	제9조제2항제3호
조례내용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상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조례에서는 주민협의회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위원장을 시행령에 따라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위원들이 호선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여 자율관리협정 체결자들이 주민협의회 대표를 선임할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을 선출할 때에는 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는 것으로 개정

27) L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L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5조
조례내용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상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조례에서 대강이라도 정하지 않고, 시장이 정하도록 포괄 위임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조례에서 상환기간과 이율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검토

28) L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

조례제명	「L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3조제1항
조례내용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상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위원회의 상한을 15명 이내로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위원회 위원의 상한을 30명으로 수정

29) L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조례제명	「L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조례내용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상위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서는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원 임명권을 침해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시장이 임명하도록 수정

30) L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

조례제명	「L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조례내용	L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촉위원 중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한다
상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위촉위원 중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한다고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수정

31) L시 정보공개 조례

조례제명	「L시 정보공개 조례」
조항	제10조제4항
조례내용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상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은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장의 지명권한을 침해할 수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에 맞게 수정 검토

32) L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L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17조
조례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때 3. 사용자가 당해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4. 당해시설을 사용허가와 다르게 사용하였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사유를 누락하거나,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유를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사용·수익허가 취소 사유를 수정하거나, 상위 법령의 재기재에 해당하므로 해당 조문 삭제 검토

33) L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제명	「L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항	제11조
조례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기금 관리·운용상필요하다고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 제6조에서 아래의 제2호를 누락한 것으로 보임. 2.제14조에따른기금운용의성과분석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재기재에 해당하므로 삭제하거나 상위법에 맞게 수정

34) L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L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조항	제2조
조례내용	「지방자치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L시장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때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상위법령	「주민투표법」 제9조 ②19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주민투표법」 제9조에서 정하는 범위에 부합하지 아니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인용조문 및 주민 범위 수정

35) L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L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17조제3항후문
조례내용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이 조례에 따르면 어느 한 성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60%를 초과할 수 있게 되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에 맞게 수정 검토

36) L시 주택 조례

조례제명	「L시 주택 조례」
조항	제11조제5항

조례내용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이 조례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의무를 부과한 상위법에 부합하지 아니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에 맞게 수정

37) L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제명	「L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항	제23조제2항
조례내용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이 개정(2014. 6. 30.)되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를 규정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 출산휴가 연장에 관한 부분을 반영할 필요 있음

38) L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1)

조례제명	「L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항	제6조제4항제1호
조례내용	1. 당연직 위원 :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3항에서는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조례에서 당연직위원을 명시한 것은 시장의 임명, 위촉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 검토

39) L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조례제명	「L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항	제21조제4항
조례내용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 7항에 따르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조례에서는 보조금 신청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도록 한 부분 삭제

40) L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3)

조례제명	「L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항	제29조
조례내용	시장은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1.「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에서는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시장이 의무적으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상위법령이 인정한 시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음 2. 조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결정취소의 사유 외에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 교부결정이 취소된 사유도 보조금 교부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서, 상위법령보다 주민의 권리를 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1. 상위법령에 맞게 보조금 교부 제한 결정에 시장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2.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례의 보조금 교부 제한 사유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

41) L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L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항	제3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에 따르면,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1항에 따르면,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조례에서는 각 협의체의 위원회 위원 상한선을 법령보다 높게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게"40명 이하"를 "30명 이하"로 수정

42) L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L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2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단장은 단원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례 제4조제2항은 상위법령과 달리 단장의 선출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맞게 단장은 단원이 호선하도록 규정

43) L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L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3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되,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의 국장이 된다. [상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4항 및제31조제3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4항 및제31조제3항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상위법령과 달리 소관업무 국장으로 규정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44) L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L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항	제8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표시기가 상위법령과 맞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춰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수정

45) L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제명	「L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항	제6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면,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L교육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학계,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서 평생교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평생교육법」 제14조제3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평생교육법」 제14조제3항에서는 시·군·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조례에서는 당연직 위원을 규정하여 시장의 위원 위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수정

46) L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제명	「L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항	제4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관리자는 건설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공기업법」 제7조제2항에서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바, 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위반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검토

47) L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L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7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 1. 보육시설의 매년 운영비 2. 기타 영유아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상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의 표현으로 볼 때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시장의 의무이지 재량사항이 아니므로 조례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상위 법령에 규정된 보조 대상을 일부 누락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보조한다'로 수정하고, 보조 대상을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

48) L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조례제명	「L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조항	제14조 제3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상위법령] 「민법」 제750조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농기계의 기계적 결함 등 다양한 사고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기계 출고후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 물적 재산 피해는 관리요원이 입고 확인 전에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라 가능하고 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경우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하고, 「민법」상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내용을 따르는 경우는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실익이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조례를 개정하여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

49) L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조례제명	「L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조항	제6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조례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시장에게 일정사항을 보고 하도록 하는 채권자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개선방안(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

50) L시 수도급수 조례 (1)

조례제명	「L시 수도급수 조례」
조항	제10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급수공사 대행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한다고 규정 [상위법령] 「수도법」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 법령인 「수도법」에서는 급수공사(수도공사)를 대행을 하려는 자에게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시장에게 급수공사대행업을 허가할 권한이 있지 아니한데,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급수공사대행업이라는 영업을 신설하여 급수공사를 대행하려는 자에게 대행업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 조례개정(안)

(정비방안)	해당 조문 삭제

51) L시 수도급수 조례 (2)

조례제명	「L시 수도급수 조례」
조항	제20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수도사용자의 이동이 있을 때 7.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상위법령] 「수도법」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인 「수도법」에 수도사용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바, 조례로 법률의 위임없는 신고의무를 규정할 수는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52) L시 수도급수 조례 (3)

조례제명	「L시 수도급수 조례」
조항	제27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 [상위법령] 「수도법」 제38조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수도법」 제38조 등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연대책임에 관련하여는 법률에 근거없이 조례로서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53) L시 수도급수 조례 (4)

조례제명	「L시 수도급수 조례」
조항	제35조 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수도 사용자 등이 제28조에 의한 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 [상위법령] 「수도법」 제68조제1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수도법」 제68조제1항는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체납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상 실체적인 사항을 준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대판 82누120, 법제처 의견제시 제12-0271 등), 가산금은 금전납무의무를 지체한 경우에 이를 강제징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수도법」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54) L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제명	「L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조항	제12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의 사용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및 선박(제1호),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제2호)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 의무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두고 있고, 사용·수익허가자(관리수탁자)에게는 보험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을 뿐, 수탁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항 삭제

55) L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제명	「L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조항	제8조제4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함 [상위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조례에서 자원봉사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는 자원봉사활동을 등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바, 조례에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검토

56) L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L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13조제4항후단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수탁자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및 선박(제1호),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제2호)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 의무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두고 있고, 사용·수익허가자(관리수탁자)에게는 보험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을 뿐, 수탁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 검토

57) L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L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22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징수 하는 것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할 수 없을 것인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 검토

58) L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L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11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법률의 근거 없이 단장에게 교육 수강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단원 등에게 교육을 들을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항 삭제 검토

59) L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1)

조례제명	「L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항	제3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L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L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상위법령] 「하수도법」 제27조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하수도법」 제27조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배수설비의 설치 및 공공하수도의 사용만으로 신고의무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법령에 없는 의무사항을 신설하였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60) L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2)

조례제명	「L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항	제6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상위법령] 「하수도법」 제24조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인데, 조례에서는 법령의 위임 없이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61) L시 하수도사용 조례

조례제명	「L시 하수도사용 조례」
조항	제29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 [상위법령] 「하수도법」 제73조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하수도법」 제73조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체납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보아야지 「지방세기본법」 상 실체적인 사항을 준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대판 82누120, 법제처 의견제시 제12-0271 등), 가산금은 금전납무의무를 지체한 경우에 이를 강제징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하수도법」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62) L시 건축 조례

조례제명	「L시 건축 조례」
조항	제17조 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함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1.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 보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 24조 제1항이 아닌 영 제 24조 제4항임. 2.「건축법 시행령」 재24조제4항에 따르면,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보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 이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모두 규칙으로 위임한바,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광명시 건축 조례」제26조제2항의 인용조문을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으로 수정하고,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보수 기준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하거나, 또는 그 대강을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규정.

63) L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L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항	제7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기관 등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1.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할 경우 3.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상위법령] 「담배사업법」 제13조(담배판매업의 등록) ①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담배도매업(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5조(담배판매업의 등록) ①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2.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담배의 보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자, 담배수입판매업자(이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다른 담배도매업자(이하 "도매업자"라 한다)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조례 제4조제1항에서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협약서에는 "협약의 해지"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제8조제1항에서는 협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을 조례가 직접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과 모순되는 규정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따라 체결해야 하는 협약 내용에 포함될 내용이므로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직접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64) L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제명	「L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조항	제12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1조의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은 의무부과와 강제처분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러한 규정을 둘 수 있음. 참고로, '지방보조금'인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

	으나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부조리신고'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 없이' 지급되는 '지방보조금'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환수방법과 관련된 부분 삭제 검토

65) L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L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3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주택법」 제73조제1항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주택법」 제7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임. 또 「주택법」 제7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률상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인바, 조례에서 다른 사업(농어촌주택사업)을 함께 수행하기 위하여 근거법률과는 그 명칭이 다른 특별회계를 두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특별회계의 명칭을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 하고, 다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명칭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66) L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제명	「L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 항	제20조제2항전단
조 례 내 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문 제 유 형	⑤ 기타
문 제 점 및 검 토 의 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해야 하는 사유로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에서는 규정 제2호와 제3호의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1호의 "임신, 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을 재직기간 산입 사유에서 누락하여, 임신, 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해 휴직한 공무원은 휴직기간만큼 연가일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바, 규정 제1호 사유를 추가하여 해당 내용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규정해야 함
개 선 방 안 (정 비 방 안)	□ 조례개정(안) "임신, 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을 추가하여 휴직자의 연가일수 계산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정 검토

67) L시 청소년지도 육성 조례

조 례 제 명	「L시 청소년지도 육성 조례」
조 항	제11조제1항
조 례 내 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지도위원 결격사유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자를 규정함

	[상위법령] 「민법」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민법이 개정되면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를 신설하였으므로 이에 맞추어서 조례도 개정해 주어야 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결격사유에서 삭제 필요. 다만, 바뀐제도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규정할 지 정책적으로 판단 필요해 보임. 더불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부칙에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법령 입안·심사 기준, 법제처, 181쪽 참고)

68) L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제명	「L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항	제6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실질적으로 시장의 인사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는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전속적 권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 검토

69) L시 하수도사용 조례

조례제명	「L시 하수도사용 조례」
조항	제8조,제9조,제10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중수도의 관리, 이용제한 등에 대해서 규정함 [상위법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 6. 8. 제정되어 이에 대한 조례의 규정이 필요함
개선방안	□ 조례개정(안)

(정비방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 규정 마련 검토

70) L시 환경기본 조례

조례제명	「L시 환경기본 조례」
조항	제9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 [상위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중기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에 따라 시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상위법령과 다르게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두 계획 간에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조례의 "환경기본계획"이 법령상의 "환정보전계획"이라면 용어를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수정을 하고, 서로 다른 계획이라면 조례에 법령상의 "환경보전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환경보전계획"과 조례상의 "환경기본계획" 간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함

13. M 시

1) M시 건축 조례

조례제명	「M시 건축 조례」
조항	제5조제5항
조례내용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상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삭제 <2014.11.11.> 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마. 삭제 <2014.11.28.> 바.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릴 것 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것

	아.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자.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 차.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1호마목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데 이 조례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상위법령보다 축소시켜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반됨 또한, 보궐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어 보궐위원의 임기도 당초 위원의 임기와 동일한데, 조례에서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상위법령에 맞게 3년으로 수정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부분 삭제

2) M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M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조례내용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인이내로 한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 제2조에서는 5인 이내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결산검사위원의 구체적인 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M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M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8조제2항
조례내용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M시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이를 갈음한다
상위법령	「지방공기업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대한 특례이므로 법률에 정해야 할 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검사위원의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에 결산 검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 검토

4) M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M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 항	제2조제2항각호
조 례 내 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15·11·20>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상 위 법 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1.15.>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따르면, 우원은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1.15.>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인데,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과 다르게 임명 또는 위촉 대상 위원을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5) M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M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3조제2항
조례내용	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보궐원의 임기도 당초 위원의 임기와 같이 2년인데, 조례에서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단서 삭제 검토

6) M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

조례제명	「M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3조
조례내용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20> 6. 기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M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상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군·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에서는 이중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제7호) 및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제8호)을 누락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

7) M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조례제명	「M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4조제2항
조례내용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상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서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직접 규정하여 시장의 위원 지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위원장을 시장이 지명하도록 수정

8) M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

조례제명	「8) M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조례내용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상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임기 수정

9) M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4)

조례제명	「M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16조
조례내용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써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상위법령	「공동주택괸리법」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①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제41조(위원의 제척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73조제5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르면, 위원의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음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제척 사유 수정

10) M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5)

조례제명	「M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 항	제17조
조 례 내 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의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때
상 위 법 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 제1항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제7항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문 제 유 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 제 점 및 검 토 의 견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 제3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40조제7항에 따르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법 제40조제7항제3호에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해촉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해촉 사유 수정

11) M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제명	「M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조항	제13조
조례내용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 ,해지,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한 때 2.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 보고를 한 때 3. M시장이 정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4. M시장이 영업상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때 5.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M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때 6. 상품 또는 영업내용이 공익상 해가 되거나, 위생·환경에 유해하다고 인정한 때 7. 시설현대화사업(시설개선사업,시장환경개선사업,공설시장현대화사업)이 필요한 때 8. 사용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9. 허가 없이 계속하여 1월 이상 휴업한 때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설시장에 대한 사용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해당하므로, 조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취소사유 외에 것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을 삭제하거나 상위법령상의 사유에 맞게 규정

12) M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1)

조례제명	「M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17조
조례내용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기산일은 기부채납 일을 기준으로 하며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시작 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영 제17조는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의 위임조항으로 부적절하고, 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을 검토하여 수정 (영 제 17조를 법 제21조 제1항으로)

13) M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조례제명	「M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25조제1항
조례내용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의적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나 해당 조례에서는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게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

14) M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3)

조례제명	「M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64조제2항
조례내용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단서로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은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례에서는 면적과 관계 없이 먼저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함으로써 상위 법령에 위반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에 맞게 신고면적이 다른 경우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단서로 규정하든지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이 조례에서는 삭제 검토

15) M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M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조항	제11조제2항
조례내용	제11조(보조사업의 변경·취소)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후에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5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서는 일정한 사항의 위반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조례 제11조제2항에서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2항 삭제검토

16) M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

조례제명	「M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3조 제1항
조례내용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상위법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서는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과 맞지 아니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맞게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개정

17) M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조례제명	「M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3조제3항
조례내용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남녀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남녀시민을 대표하는 자 5. 시의회의원 1인 6. 시 노사업무 담당 국장 7.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상위법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르면,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고 하면서, 각 호의 내용으로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

	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근거에 따라 설치되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면서 상위법령에서 위원자격을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의 위원자격과 다르게 위원 자격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18) M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조례제명	「M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조항	제9조제4항
조례내용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연장시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 후 연장할 수 있다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하되,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과 다르게 위탁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계약기간 및 조건 수정

19) M시 OO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조례제명	「M시 OO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조항	제12조
조례내용	제12조(변상책임)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물, 선박 등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 해당 보험료 등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조례와 같이 수탁자에게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보험이나 공제에는 지자체 장이 가입하고 그 보험료나 공제료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삭제검토

20) M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M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조항	제20조제1항
조례내용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 ⑦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고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

21) M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제명	「M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항	제3조제1항
조례내용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상위법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 ⑦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므로, 상위법령과 일치시킬 필요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2) M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1)

조례제명	「M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조항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조례내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7.6.>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상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7.6.>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다만,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시행령 제7조제1항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 대상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제출을 면제하도록 규정할 수 있지만, "신고" 대상은 조례로 제출서류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 없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조례의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광고물은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으로서, 서류나 도서 일부의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는 이를 서류제출이 면제되는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23) M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2)

조례제명	「M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조항	제4조제3호
조례내용	광고물등의 표시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상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 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7.6.> 1. 광고물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신고만 하거나 신고도 없이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광고내용"에만 한정하는 것이고, 그 밖의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는 그 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그런데 이 조례 제4조제3호는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바, 굳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24) M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3)

조례제명	「M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조항	제9조제2항제3호

조례내용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상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조례에서는 주민협의회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위원장을 시행령에 따라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여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을 선출할 때에는 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는 것으로 개정

25) M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M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17조제3항
조례내용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상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3항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수정

26) M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조례제명	「M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조항	제11조제3항
조례내용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수 있다
상위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u>3년부터 5년</u>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수 있다

27) M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M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항	제5조
조례내용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예상할 수 없는 돌발사태 기타 특별한 사정의 발생으로 긴급을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사유로 입법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4.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위법령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입법예고는 법상 의무사항이고, 그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이와 달리 규정할 수는 없음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

28) M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

조례제명	「M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5조제3항
조례내용	복지관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하되,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과 다르게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복지관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9) M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조례제명	「M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13조제1항
조례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삭제 <2016·2·19>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8.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르면,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위탁 취소 사유로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원칙적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은 조례에 다시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례에서 취소사유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할 경우에는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야 함 □ 조례개정(안)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0) M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1)

조례제명	「M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항	제20조제1항
조례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시장(市長)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④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에 따르면,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바, 시장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목적과 관계없이 상인회를 설립하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조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해석오인의 여지가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문구 삭제 □ 조례개정(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삭제) 제18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시장(市長)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1) M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

조례제명	「M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항	제26조제2항
조례내용	상인회는 시장(市長)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②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소기업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법 제25조 내지 제30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3. 법 제55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원자금 사용내역 4. 법 제65조제7항 및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상인회가 포함됨)가 이 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소기업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그 기간을 10일 이내로 하여 상위 법령과 다르며, 대상 자료도 상위 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

32) M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M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9조제2항
조례내용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상위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제1호다목에서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제1호다목에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위탁기간 수정

33) M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M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10조
조례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한 때 3.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4.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상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4항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4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는 구청장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 취소사유와 다르게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어린이집 위탁취소사유를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호의 사유와 같도록 규정하거나 상위 법령의 재기재에 불과하므로 삭제 검토

34) M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M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2조
조례내용	위원은 시 소속 재산세과세표준업무 및 토지거래허가·신고업무 담당공무원 세무서평가담당공무원·한국감정원산하직원·감정평가사·부동산중개업자·농협임직원 등 당해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상위법령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과 다르게 위촉 대상 위원을 규정하고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거나, 조례의 내용은 상위 법령의 재기재에 불과하므로 삭제 검토

35) M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M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4조
조례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상위법령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에 규정된 심의 사항의 일부를 누락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거나, 조례의 내용은 상위 법령의 재기재에 불과하므로 삭제 검토

36) M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M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9조제1항
조례내용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할 자가 독촉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징수 하는 것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할 수 없을 것인

	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 검토

37) M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M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5조제2항
조례내용	M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 검토

38) M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제명	「M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조항	제12조
조례내용	M시장은 보험금 수취인을 M시장으로 하는 화재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및 선박(제1호),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제2호)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 의무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두고 있고, 사용·수익허가자(관리수탁자)에게는 보험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을 뿐, 수탁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39) M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제명	「M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항	제6조
조례내용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13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조례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시장에게 일정사항을 보고 하도록 하는 채권자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

40) M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1)

조례제명	「M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항	제11조
조례내용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고 규정 1. 삭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및 토목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단, 상수도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특정 영업에 대하여 인가, 허가 등을 받도록 하려면, 상위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급수공사 대행업 및 그 허가제도는 「수도법」 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조례에서 급수공사를 대행하려고 하는 자가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지정서 교부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41) M시 수도급수 조례

조례제명	「M시 수도급수 조례」
조항	제21조 제1항

조 례 내 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수도사용자 등의 명의가 변경될 때 [상위법령] 「수도법」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인 「수도법」에 수도사용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로 법률의 위임없는 신고의무를 규정할 수는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18조 삭제 검토

42) M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2)

조례제명	「M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항	제29조제2항
조 례 내 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 [상위법령] 「수도법」 제38조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수도법」 제38조 등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연대책임에 관련하여는 법률에 근거없이 조례로서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43) M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M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항	제12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부정한 사유로 지급된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 위로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그 기한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징수 하는 것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할 수 없을 것인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항 삭제

44) M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제명	「M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항	제18조제3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징수 하는 것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할 수 없을 것인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항 삭제

45) M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1)

조례제명	「M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항	제10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市長)은 영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음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곳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전통시장의 인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인정의 취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입법상 불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례에서 인정의 취소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46) M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

조례제명	「M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항	제17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市長)은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취소할 수 있음.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 신고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이 지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3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서는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인데, 조례에서 등록취소와 같은 불익익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상 불비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47) M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3)

조례제명	「M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항	제21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상인회 등록취소에 관하여 규정함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8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8항에서는 '상

검토의견	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인데, 조례에서 상인회의 지위를 박탈하는 등록취소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상 불비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음 또한 '3.「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하거나,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를 취소요건으로 들고 있는데, '인정시장'개념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2. 12. 11. 개정하면서 시장을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앴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48) M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4)

조례제명	「M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항	제26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市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6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6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상인회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과 다르게 사전적, 정기적으로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개선방안	□ 조례개정(안)

(정비방안)	해당 조문 삭제 검토

49) M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5)

조례제명	「M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항	제28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관리자 지정취소에 관하여 규정함 [상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4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4항에서는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인데, 조례에서 시장관리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지정취소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상 불비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50) M시 주차장 조례

조례제명	「M시 주차장 조례 」
조항	제21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함 [상위법령] 주차장법 제24조의2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로 가산금을 신설할 수 없음. 주차장법 제24조의2 제2항에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그 절차를 따른 다는 의미이지 가산금과 같은 실체적 규정까지 따르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가산금 규정 삭제

51) M시 하수도 사용 조례 (1)

조례제명	「M시 하수도 사용 조례」
조항	제3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M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M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상위법령] 「하수도법」 제27조에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하수도법」 제27조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배수설비의 설치 및 공공하수도의 사용만으로 신고의무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법령에 없는 의무사항을 신설하였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52) M시 하수도 사용 조례 (2)

조례제명	「M시 하수도 사용 조례」
조항	제6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상위법령] 「하수도법」 제24조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인데, 조례에서는 법령의 위임 없이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상위 법령에 근거 없이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53) M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M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11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임원 및 단원은 연 1회 4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검토의견	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법률의 근거 없이 단장, 임원 및 단원에 교육 수강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단원 등에게 교육을 들을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검토

54) M시 건축 조례

조례제명	「M시 건축 조례」
조항	제25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건축법 」제60조제3항을 인용하여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상위법령] 「건축법」 제60조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도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하도록 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전면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허용용적률로 개발이 어렵고 건축물의 외관이 계단(사선)형으로 건축되어 도시미관에 저해됨에 따라, 「건축법」 제60조제3항이 삭제「건축법」 의 개정(법률 제13325호, 2015.5.18. 공포, 시행)되었으므로, 조례에서도 개정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검토

55) M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M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조항	제3조 등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 [상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함을 2014.12.30.에 개정하였으나 조례에서는 "시설물의 지붕"에 관한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에 관한 내용 추가 필요

56) M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M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ㄴ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고 규정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2항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종전의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의 추정가격 상한을 조례로 정한다는 부분이 개정으로 인해 삭제되면서 현행 영 제60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공사 금액의 상한을 삭제

57) M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1)

조례제명	「M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35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함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4조(대부료의 조정)ㄴ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이자의 계산방법이 변경되었으므로 조례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맞추어 이자율 수정 필요

58) M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조례제명	「M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38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와 이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사유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매각대금 분납에 따른 이자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사유 및 이자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59) M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3)

조례제명	「M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38조의2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시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이도록 규정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요건 및 이자율 산정 방식이 변경되었는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맞추어 이자율 수정 필요

60) M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4)

조례제명	「M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63조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변상금의 분할납부 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이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이도록 이자계산 방법이 변경됨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상위 법령의 내용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맞추어 이자율 수정 필요

61) M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5)

조례제명	「M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63조의2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로 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의 반환시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붙이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이도록 이자계산 방법이 변경됨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상위 법령의 내용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맞추어 이자율 수정 필요

62) M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6)

조례제명	「M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66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6항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2015. 2. 16>으로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법인을 포함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으므로,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볼때 불일치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평가 의뢰할 수 있도록 수정

63) M시 물품관리 조례

조례제명	「M시 물품관리 조례」
조항	제18조 제4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불량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함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2015. 2. 16)으로 매각·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법인을 포함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으므로,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볼때 불일치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 수정 검토

64) M시 경관 조례

조례제명	「M시 경관 조례」
조항	제29조제3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소위원회 의결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경관법 시행령」 제26조제9항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경관법 시행령」 제26조제9항에서 조례로 소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의결 간주에 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한편, 소위원회설치의 입법목적이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전체 위원회의 심의로 보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며,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도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음. 이런 견해에서도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모두 다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일정한 경우에 제한적으로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하거나 소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 의결이 간주되는 사항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 검토

65) M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M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5조제3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제5항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위원의 심의 배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제5항 및 제92조의7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척, 기피, 회피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바, 법령의 근거 없이 위원장이 이해관계에 따라 참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 검토

66) M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제명	「M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조항	제14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장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에서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사용권의 상속 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서 예외적으로 행정재산을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을 반영

67) M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M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3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협의회 위원은 1. 관련분야 공무원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 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는 내수면어업인의 대표와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 이 조례 제3조제1호 는 상위법령에서 동 위원회 구성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람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규정삭제

68) M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제명	「M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항	제15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 [상위법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호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호에서는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가 면제되는바,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규정한 것을 조례로 정한 것이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즉 녹색제품 구매 불가의 경우는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지 녹색제품 구매 불가 사유를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는 않았으므로 조례로 이에 대하여 규정할 것은 아님)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조문 삭제검토

69) M시 OO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조례제명	「 M시 OO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조항	제12조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규정함 [상위법령] 「민법」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사고 책임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과실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관리자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조례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어서 해당 규정의 실익이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70) M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조례제명	「M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조항	제3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함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시장이 지역보장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1항
문제유형	⑤ 기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의 심의사항과 조례의 심의 사항이 다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각 호의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14. N 시

1) N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1)

조례제명	「N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항	제3조 제2항 전단
조례내용	제3조(가로수의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 사정 등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상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②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림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상위법령의 내용과 동일하게 계획의 수립・시행 기간을 변경 □ 조례개정(안) 제3조(가로수의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은 <u>10년마다</u>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 사정 등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N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2)

조례제명	「N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항	제15조 제3항
조례내용	제15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③ 시장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상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부담금 의무불이행시에 지방세체납에 대한 근거가 규정되지 않음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세 체납처분은 반환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력적이고 강제적인 징수절차로서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의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나, 본 조례에서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검토

3) N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N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항	규정없음
조례내용	가축사육 제한지역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규정이 없음
상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해제에 관한 사항은 필수조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향후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이나 해제를 위해서는 이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가축사육 제한지역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규정 신설 검토 □ 조례개정(안) 제0조(가축사육 제한지역 조정 등) ①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매년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하며 변경되거나 해제된 지역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 N시 건축 조례 (1)

조례제명	「N시 건축 조례」
조항	제4조 제2항
조례내용	제4조(구성 등)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안전지역개발국장으로 한 다.
상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5항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여 시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로 이를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검토

5) N시 건축 조례 (2)

조례제명	「N시 건축 조례」
조항	제7조 제2항
조례내용	제7조(건축심의) ② 시장은 건축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제3항 심의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제3항에서는 심의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7조(건축심의) ② 시장은 건축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N시 건축 조례 (3)

조례제명	「N시 건축 조례」
조항	제30조
조례내용	제30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2. 공개공지의 면적 :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로 확보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퍼센트 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7퍼센트 다. 연면적의 합계가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퍼센트 ② 영 제27조의2에 따라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는 일반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는 조경·긴의자·파고라·시계탑·분수·미술장식품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 제27조의2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율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를 적용한다.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를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으며, 옥내의 공개공지(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면적은 2분의 1을 산입한다. ④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일반인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삭제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서는 공개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긴의자나 파고라 등)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공개공지에 설치해서는 안되는 시설, 공개공지의 면적 이나 설치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사항까지 규정하여 건축주 등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조례를 개정하여 「건축법시행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공개공지에 설치제한 시설, 공개공지의 면적기준 등에 관한 규제를 삭제

7) N시 경관 조례

조례제명	「N시 경관 조례」
조항	제6조 제1항
조례내용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상위법령	「경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경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경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법령에서 제출의무를 규정한 경관계획수립제안서뿐 아니라 경관현황분석도, 경관기본구상도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조례에서는 세부절차만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해당 조항 삭제

8) N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N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2조 제2항
조례내용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② 위원장은 시본청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자로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상위법에서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토의견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② 위원장은 <u>위원중에서 호선하며</u>,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자로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9) N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N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4조 제2항
조례내용	제4조(기능)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자문에 대한 내용은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자문에 관한 내용은 삭제

10) N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3)

조례제명	「N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12조 전단

조례내용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한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상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사 추정가격의 상한선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공사 추정가격의 상한선을 이 조례에 규정하도록 개정 □ 조례개정(안)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u>3천만원 이상 00만원 이하</u>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한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11) N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4)

조례제명	「N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 항	제12조 후단
조 례 내 용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한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상 위 법 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문 제 유 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 제 점 및 검 토 의 견	상위법령에서 주민감독 대상 공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상위법령과 같게 규정해야지 일부만 규정하던가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검토하거나 또는 해당 조문을 삭제 □ 조례개정(안)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한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신설) 10. 공원 공사 (신설)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12) N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1)

조례제명	「N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31조 제1항
조례내용	제31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8항 및 영 제17조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감액의 요건이 변경되었는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대부료의 감면 사유 및 감면율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 조례개정(안) 제31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8항 및 영 제17조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13) N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조례제명	「N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34조 제2항
조례내용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10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이자의 계산방법이 변경되었으므로 조례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u>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u>

14) N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3)

조례제명	「N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37조 제1항
조례내용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나머지 금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사유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매각대금 분납에 따른 이자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사유 및 이자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 조례개정(안)**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5) N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4)

조례제명	「N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44조
조례내용	제44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과 동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청사부지 크기는 광역과 기초, 인구수에 따라서 그 상한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가 청사부지의 크기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또한,청사의부지라는이유로「건축법」상의건폐율에대한예외를법령이 아니라조례에서허용할수는없을것으로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검토

16) N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5)

조례제명	「N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	제60조의1
조례내용	제60조의1(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로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말한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공포・시행)으로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의 반환시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붙이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이도록 이자계산 방법이 변경됨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상위 법령의 내용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맞추어 이자율 수정 필요 □ 조례개정(안)

	제60조의1(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로 한다.**

17) N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1)

조례제명	「N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항	제4조
조례내용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5. 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하는 교수, 변호사 등 법조인 6. 분쟁 발생 지역의 시의회 의원 7. 공동주택관리업무 과장 및 시 소속공무원
상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해당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서 지방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이 상이하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 맞게 규정함 □ 조례개정(안) 제4조(구성) ①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해당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18) N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2)

조례제명	「N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항	제4조 제2항
조례내용	제4조(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제3호부터 제7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상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에 의하면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례에서는 일부 위원중에 지명하도록 위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내용과 불일치하여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에 맞게 개정함 □ 조례개정(안) 제4조(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삭제)제1항 제3호부터 제7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19) N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제명	「N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항	제3조 제2항
조례내용	제3조(적용의 범위) ② 법 제3조제2호에서“『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상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관광지・관광단지・지원시설의 "규모"를 정하라는 것이지 이 조례 제3조제2항처럼 규정하라는 취지가 아님
개선방안 (정비방안)	조례에서는 관광지・관광단지・지원시설의"규모"를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여야 함. □ 조례개정(안) 제3조(적용의 범위) ② 법 제3조제2호에서“『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신설)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에서 관련 사업을 영유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신설)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등을 위한 시설 3. (신설) 관광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4. (신설)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관광시설 5. (신설) 관광종사자 및 관광개궁ㄹ 위한 상업용시설

	*00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3조(적용의 범위) ③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20) N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1)

조례제명	「N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조항	제2조 제2항
조례내용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위원은 N시의회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 또는 소속직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N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상위법령	「공직자윤리법」 제9조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조례와 같이 시의회의원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에 그 직접적인 근거는

	없으나, 같은 법 제9조제4항제6호에서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다만 그 위원 구성 중 일부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고 일방의 고유권한을 타방이 행사하게 하거나 사전적·적극적으로 그 권한에 개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참조)**, N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의원을 시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집행기능적 업무성격 등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배분 및 분리 원칙의 한계를 넘어설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의견제시 12-0001 참조)
개선방안 (정비방안)	2명의 위원을 모두 N시 소속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하도록 개정 검토 **□ 조례개정(안)**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위원은 **(삭제)N시의회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 또는**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21) N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2)

조례제명	「N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조항	제5조 제2항
조례내용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상위법령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직자윤리법」 제24조의2 및 제28조의2는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규정으로서 주식백지신탁 대상은 공개대상자이므로 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에 해당하지 아니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는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 □ 조례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법 <u>제24조(재산등록 거부의 죄), 제24조의2(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제25조(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제26조(출석거부의 죄), 제27조(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제28조(비밀누설의 죄), 제28조의2(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u>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22) N시 교통안전 조례

조례제명	「N시 교통안전 조례」
조항	조례 전체
조례내용	이 조례는 N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조직 운영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함
상위법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지방교통위원회) ① 지방자체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2012. 6. 1. 「교통안전법」이 개정되어 제13조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하였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조례의 존치 필요성 검토 후 폐지 등의 조치 필요

23) N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조례제명	「N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조항	제5조 제2항
조례내용	제5조(위탁운영) ②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의 경우 3년이내로 정하고 있어 그 상한에 있어 상위법령에서 정한 내용보다 범위를 축소하고 있음.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한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두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만 보면 마치 제한없이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것 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5조(위탁운영) ② 위탁운영 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삭제)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번만 갱신할 수 있고, 두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한다.**

24) N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제명	「N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항	조례 전체
조례내용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위법령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2008.3.28. 법률 제6252)되었고,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칙 제2조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조례 폐지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1. 조례 폐지 검토 2. 아직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라고 특정할 필요)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 설치 검토

25) N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N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항	제3조 제1항
조례내용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상위법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26) N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제명	「N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금 징수 조례」
조항	제25조 제2항
조례내용	제25조(가산금 및 중가산금)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서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의 합계액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위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강제징수) ① 시행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한국환경공단등"이라 한다)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한국환경공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담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등은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O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제1항 후단에서는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중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없음. O「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금액을 징수한다"는 것은 체납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독촉·압류·매각·청산 등 일련의"징수절차"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는 뜻이지, 그 밖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다른 조항 일체를 적용하여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17898 판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4639판결, 법제처 2011. 12. 15. 회신 11-0637 해석례 참조), 조례에서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중가산금"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 □ 조례개정(안) 제25조(가산금) ② (삭제)

27) N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조례제명	「N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조항	제5조의2
조례내용	제5조의2(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여성농업인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전단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의 범위보다 상한을 더 낮게 규정하고 있어 이는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5조의2(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설치)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28) N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N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조항	제20조 제1항
조례내용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 ⑦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언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인지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고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9) N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N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조항	제20조 제3항
조례내용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표지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시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광고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의무부과 조항인 제13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위탁계약에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30) N시 도시계획 조례

조례제명	「N시 도시계획 조례」
조항	제73조 제2항
조례내용	제73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법령의 위임 없이 관계인(특히, 민간인)에게 자료제출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위원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반드시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조례가 아닌 법률에 규정해야 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검토

31) N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조례제명	「N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조항	제6조 제1항

조례내용	제6조(녹지점용 허가기준) ① 영 제43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적합한 가설건축물일 것 2. 제4조 제2항에 적합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일 것 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 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2조 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를 할 것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도로 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마목의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 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사.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철도청장과 사전에 협의할 것 아. 산업단지별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 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 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할 것 4.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상태의 녹지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때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② 제1항의 점용허가는 제4조 제3항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녹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하며, 녹지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서는 조례로 점용허가 대상 녹지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고, 녹지점용허가의 세부기준에 대해서도 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외에 별도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법령을 따르면 되고 별도로 조례로 규정할 필요 없음
개선방안	□ 조례개정(안)

(정비방안)	해당 조항 삭제 검토

32) N시 물품 관리 조례

조례제명	「N시 물품 관리 조례」
조항	제18조 제4항 후단
조례내용	제18조(불용품의 매각)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0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되,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2015. 2. 16)으로 매각·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법인을 포함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으므로,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볼때 불일치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영 제96조제2항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33) N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제명	「N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항	제6조
조례내용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13조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조례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시장에게 일정사항을 보고 하도록 하는 채권자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

34) N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N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10조
조례내용	제10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훈회관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서는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법 제20조제3항 본문에서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10조(양도금지) 수탁자는 <u>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삭제)</u> 보훈회관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35) N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조례제명	「N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1조
조례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N시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위법령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74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이 경우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2명 이상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 되었고, 개정 전 법률에서 규정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그리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개정되면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용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대한 법률」로 분리되어 개정됨

36) N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조례제명	「N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2조 제1항
조례내용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상위법령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74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이 경우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2명 이상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서는 위원 수에 대해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구체적인 위원 수를 정해야 하는 것이고, 시행령과 똑같이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7) N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N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항	제6조 제1항
조례내용	제6조(시설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지의 사용·수익허가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조례로서 유•무상 임대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국유재산은 국가가 관리·처분하는 것이므로 국유재산은 지자체장이 관리.처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시장이 임대 등을 할 수 없을 것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규정 삭제 검토

38) N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N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3조 제1항
조례내용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性)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위원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상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바, 단지 어느 한 성(性)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쪽 성(性)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 N시 상수도 급수 조례 (1)

조례제명	「N시 상수도 급수 조례」
조항	제20조 제1항

조례내용	제20조(신고) ① 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수도사용자의 명의 또는 가구수가 변경된 때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령인 「수도법」에 수도사용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바, 조례로 법률의 위임없는 신고의무를 규정할 수는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40) N시 상수도 급수 조례 (2)

조례제명	「N시 상수도 급수 조례」
조항	제27조 제2항
조례내용	제27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상위법령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수도법」 제38조 등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연대책임에 관련하여는 법률에 근거없이 조례로서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41) N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1)

조례제명	「N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항	제18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령] 「지방공기업법」 제40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공기업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함

42) N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2)

조례제명	「N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항	제22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위원장, 위원의 구성 및 위원회의 운영(회의의 소집권자,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내용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 외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법제처 2014. 11. 13. 회신 의견 14-0200 참조)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중요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거나 자문기관을 두고 있지 않다면 해당 규정 삭제 검토

43) N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1)

조례제명	「N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조항	제3조 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상위법령]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의하면 수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의하면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가 상위 법령보다 제한적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 □ 조례개정(안)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u>15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44) N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2)

조례제명	「N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조항	제3조 제3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3조(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시민생활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단체장 3. 상수도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상위법령]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항에서는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항에서는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을 규정하는데 규정된 내용 또한 상위법령과 다르게 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3조제3항 중 위원의 위촉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45) N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3)

조례제명	「N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4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50조는 세출예산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과 계속비의 경우에만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을 할 수 있다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지방재정법」 제50조는 세출예산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검토의견	경우,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과 계속비의 경우에만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세출예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월 사용하도록 규정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맞게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을 세출예산의 이월사유로 명시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

46) N시 시세 기본 조례 (1)

조례제명	「N시 시세 기본 조례」
조항	제7조 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7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 법령에 맞게 원칙적으로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예외적으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례 수정

47) N시 시세 기본 조례 (2)

조례제명	「N시 시세 기본 조례」
조항	제17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17조(납기 전 징수와 압류)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변경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시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제2호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제2호에서는 "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와는 달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함
개선방안(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법에 있는 내용이므로 조례에 따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거나, 존치한다면 "압류한다"로 수정

48) N시 시세 기본 조례 (3)

조례제명	「N시 시세 기본 조례」
조항	제23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23조(징수유예 등의 취소)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시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4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세기본법」 제84조에서는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한

	꺼번에 징수할 수 있는 재량을 준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조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도 아니함 그런데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반드시 한꺼번에 징수하도록 의무규정을 둔 것은 상위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재량권 박탈이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과 같이 재량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49) N시 시세 기본 조례 (4)

조례제명	「N시 시세 기본 조례」
조항	제24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서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 법 제26조제2항 단서 및 영 제8조제2항에는 담보제공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도 않은데, 조례의 예외사유는 위 법령의 규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더불어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따라담보의제공을요구할수있는경우에는그에관한예외사유를정하고있지도아니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1.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재량권 박탈이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과 같이 재량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개정 2. 담보 제공 예외사유도 법령에 맞게 규정 3. 담보 제공 예외사유는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담보의 제고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됨을 명시

50) N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조례제명	「N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조항	제5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5조(피해액 산정) 피해액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비(본인 부담액)와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상위법령]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3조 제3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3조 제3항의 경우,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피해액 산정은 의료기관의 치료비중 실제 본인 부담액으로만 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피해액의 산정기준으로 규정함

51) N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조례제명	「N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조항	제8조 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8조(위탁운영)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8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야 갱신가능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맞게 개정

52) N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1)

조례제명	「N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조항	제8조 제2항 제3호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상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례에서는 주민협의회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위원장을 시행령과 같이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위원들(조례에 따르면 위원에는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한 자 이외의 자도 포함됨)이 호선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여 자율관리

	협정 체결자들이 주민협의회 대표를 선임할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을 선출할 때에는 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는 것으로 개정

53) N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2)

조례제명	「N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조항	제10조 제1호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10조(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소요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 [상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3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3항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규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거나, 혹은 법에 따라 집행이 가능하므로 조례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3항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규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거나, 혹은 법에 따라 집행이 가능하므로 조례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54) N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N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13조 제5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N시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등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등록 제한 및 조건의 세부 사항"인데, 이 조례 제13조제5항에서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더불어, 등록 제한은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으면 가능한 것이지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은 아님)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조문 삭제

55) N시 00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분양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N시 00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분양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	제8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	[조례의 내용] 제8조(분양가격)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

령	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한다. 1. 토지매입비 2. 지장물 및 그 밖의 보상비 3.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공사비 및 부대시설비 4. 그 밖의 투자비용 [상위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구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감정평가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 되었으므로 인용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개정된 것을 반영

56) N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조례제명	「N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조항	제16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때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그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그 위탁관계는 계약관계로서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계약조건을 정하면 되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조례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한 것은 사적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임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해당 부분 삭제

57) N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N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5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5조(도시계획시설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상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그런데, 조례에서 대강이라도 정하지 않고, 시장이 정하도록 포괄 위임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어긋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령에 맞게 이 조례나 「N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상환기간의 이율에 대해서 규정하도록 함

58) N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N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 항	제7조 제5항
조 례 내 용 및 상 위 법 령	[조례의 내용]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계약갱신 신청에 의하여 계속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갱신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문 제 유 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 제 점 및 검 토 의 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하되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과 다르게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개 선 방 안 (정 비 방 안)	□ 조례개정(안)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u>5년 이내</u>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계약갱신 신청에 의하여 계속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갱신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59) N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 례 제 명	「N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 항	제16조 제3항
조 례 내 용 및 상 위 법 령	[조례의 내용] 제16조(구성 등)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 여성위원의 참여를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개정 검토.
개선방안 (정비방안)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 조례개정(안) 제16조(구성 등)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0) N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제명	「N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제17조 제4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17조(위원장의 직무등)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차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 조례개정(안)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바, 이 조례 제18조제3항에서는 법률의 근거 없이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에게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 하는 것으로 생각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 할 정책적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뒤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이 조례 제18조제3항 삭제 검토

61) N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제명	「N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항	제2조 제2호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12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주민에 대해 상위법령과 다른 별도 정의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아니하고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조례에서 주민의 정의를 두지 않도록 함. 다만, 개별 조항에서 예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가능할 것임

62) N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제명	「N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항	제9조
조례내용	[조례의 내용]

및 상위법령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운영세칙)에는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배치됨
개선방안(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상위법에 맞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수정 검토

63) N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제명	「N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항	제23조 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23조(특별휴가)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이 개정(2014. 6. 30.)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음.
개선방안(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 출산휴가 연장에 관한 부분을 반영할 필요 있음

64) N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제명	「N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항	제4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제 33조 제 10항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 33조 제 10항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동법 제 60조 제 3항에 따라 운영되며, 상위법령에서 두도록 한 위원회는 조례로써 상위법령에서 두도록 한 위원회는 그 명칭과 역할을 조례로 변경하거나 통합할 수 없음(법제처 해석례 09-0395 참조)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분리하여 (두 개의 조례 또는 하나의 조례) 각각 규정

65) N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제명	「N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항	제13조 제2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13조(교육)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법률의 근거 없이

	단장, 임원 및 단원에 교육 수강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단원 등에게 교육을 들을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됨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지역자율방재단 임원 및 단원에게 방재교육을 할 정책적 필요성을 검토하여 상위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이 조례 제13조제2항 삭제 검토

66) N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조례제명	「N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조항	제1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N시청소년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위법령] 「청소년 기본법」
문제유형	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문제점 및 검토의견	「청소년 기본법」이 전문개정(2004.2.9 법률 제7162호)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에 맞게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청소년상담실의 명칭을 법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도록 함(제1조 내지 제8조, 제10조 내지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8조) - 청소년상담실 → 청소년상담센터 - 청소년상담실장 → 청소년상담센터소장
개선방안 (정비방안)	상위법령에 개정에 맞추어 조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례개정(안) 00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원 조례(예시) 제0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1명과 상담지원·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1, 별표2와 같다. ③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2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센터장은 전문성 향상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근해야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업실적 평가에 따라 연임하게 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67) N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조례제명	「N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조항	제23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23조(가산금 및 강제징수) ①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시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여 체납액을 정산한다.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가산금은 연체금과 달리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함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중가산금을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부합하지 않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삭제검토

68) N시 하수도 사용 조례

조례제명	「N시 하수도 사용 조례」
조항	제31조 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31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상위법령] 「하수도법」 제73조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하수도법」 제73조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체납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보아야지 「지방세기본법」 상 실체적인 사항을 준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대판 82누120, 법제처 의견제시 제12-0271 등), 가산금은 금전납무의무를 지체한 경우에 이를 강제징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하수도법」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제31조제1항 삭제

69) N시 환경 기본 조례

조례제명	「N시 환경 기본 조례」

조항	제21조 제1항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21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등) ① 시장은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오염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시민, 민간단체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상위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제1항
문제유형	③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 신설
문제점 및 검토의견	「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진동·악취의 발생, 폐기물의 처리, 일조의 침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국가에게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조항을 두고 있는데, 지방자체단체에 대하여는 조례의 규정처럼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일반적 근거에 관한 조항이 없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시장이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일반적 근거조항이 없다면, 조례의 규정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일반적 권리규제에 관한 근거 조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

70) N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제명	「N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항	제4조
조례내용 및 상위법령	[조례의 내용]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 [상위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

문제유형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소지
문제점 및 검토의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고, 그 한도도 상위법령 보다 적음
개선방안 (정비방안)	□ 조례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 또는 훈령·예규·고시로 정하고, 그 한도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제4장 결론

▢ 지방규제 개선과정에서의 품질제고를 위하여, 세부적으로 규범적 측면, 절차적 측면, 내용적 측면의 관점에서 적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 규범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법률우위원칙, 법률유보원칙, 규율대상에 대한 부분의 검토가 중요함
- 조례안의 입안, 심의, 의결, 공포를 넘어서서 자치법규 제정이후의 집행, 집행결과의 환류 차원까지 포괄하는 자치법규의 생애주기적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음
- 효율성, 집행가능성, 실효성과 자율성, 특수성, 재원의 고려등이 자치법규 규정에서 고려되어야 함. 그리고 조례의 성과관리와 입법계획과 입법영향평가제도 등의 보다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각 부처간의 기능적 역할분담이 강조되어야 하며, 지방 차원의 전문 법제인력의 충원, 법제·법무전담조직의 구조 개편과 기능 활성화, 법제담당 직원·정책담당자·지방의원 등의 법 전문성 함양방안 등도 선제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지방자치와 국가경쟁력에 대한 필수적 요소임

▢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법치주의의 강화와 지방차원의 전체법질서에의 타당성 제고를 도모함

- 상위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규범형식과 체계에도 흠결이 없고 내용적으로도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규율요소들을 모두 갖추며, 시간적으로도 필요 적시에 입법되어 시행되어야 함

▢ 특히 지방규제의 개선의 관점에서는 행정의 상대방인 기업이나 주민의 입장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

- 지역현실을 반영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일괄적이고 통일적인 감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상황에 부합하는 규제 및 제도개선의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편익 및 기업활동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국획일적인 규제를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

□ 전체 국가법체계와의 규범정합성 확보와 자치법규의 위법 리스크 감소를 위해서도 자치입법능력 향상을 위한 상시 지원시스템이 필요함

- 간섭・통제수단일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전문가그룹과의 협업도 중요함
-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 필요한 자치법규를 적시에 적절히 정비하거나 완비할 수 있는 자치입법능력을 갖추게 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적인 자치입법시스템과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자치법규지원체제가 구축·운영되도록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치법규의 생애주기적 제도적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좋은 정책과 제도를 실현하려면 좋은 입법이 있어야 하며 그 중 조례는 풀뿌리 입법으로서 매우 중요함

-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지식・경험・노하우를 담아 축적하여 검색・재활용하는 융복합 법률콘텐츠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며, 관련 선행연구를 요함
- 지방규제 개선 기준의 타당성・유용성을 검증보완하기 위하여 분야별 개별조례를 지방자치단체간 비교검토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상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한 조례의 개선기준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는 과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추출된 DATA를 SoXJI을 통한 검색방법 등의 개발 및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단계적 사업을 제안함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체 지방규제 수준을 측정・비교하고 개선시켜 가기 위하여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분야별, 유형별 등 기준을 마련하여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가야 함